

월간  
**재정포럼**

2022. May\_Vol.311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05

**권두칼럼**

인구절벽과 대응방식 | 이삼식

**현안분석**

재정사업 원가산정체계 현황과 유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양은주  
근로·자녀장려금 형평성 효과 | 전병목

**정책연구**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 방향 외

**정책토론포트**

2022년도 PEMNA 예산분과 웨비나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비거주 외국인의 이연보상에 관한 사례집 발표 외



## 쓸수록 줄어듭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일회용 종이컵,  
쓸수록 북극곰들의 집은 줄어듭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 CONTENTS

### 권두칼럼

인구절벽과 대응방식 | 이삼식 02

### 현안분석

재정사업 원가산정체계 현황과 유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양은주 08

근로·자녀장려금 형평성 효과 | 전병목 34

### 정책연구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 방향 62

| 김현아·전병목·윤성주·오종현·송경호

사회보험료 통합 부과·징수 방안에 관한 연구 65

| 최인혁·정다운·김진수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68

| 장우현·김지운

최저임금이 기업행태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77

일자리 재정정책에의 함의

| 이환웅·송경호

임금 상승이 노인의 노동시장과 공적연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 80

| 조희평·고창수

### 정책토론포트

2022년도 PEMNA 예산분과 웨비나 86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비거주 외국인의 이연보상에 관한 사례집 발표 외 92



## 인구절벽과 대응방식



**이삼식**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교수

그간 고출산 시기에 태어난 산업화세대(1940~1954년 출생코호트)와 베이비붐세대(1955~1974년 출생코호트)는 한국사회에 풍부한 인구배당금(demographic dividend)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된 결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9년부터, 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인구보너스(population bonus) 시기가 막을 내리고, 그동안 국가성장을 주도하였던 세대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가는 인구오너스(population onus)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 인구절벽 심화가 불러올 재정부담 증가

최근까지는 노인인구뿐만 아니라 총인구도 계속 증가하여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되었다. 지금부터는 총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역방향 변화로, 고령화가 전 세계 어느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인구절벽의 본격화는 한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여기에는 학교 붕괴, 병력자원 부족, 노동력 부족, 사회보장 부담 증가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인구절벽 문제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의 생활과 건강·돌봄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이다. 실제로 인구절벽이 심화될수록 국민연금, 지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보장 등에서 누적 재정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제도 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 가지 예로 공적연금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수급연령 상향 조정, 급여수준 축소(예로 기대여명 변동에 따른 급여수

준 자동 조정), 지급범위 축소(기초연금) 등을 들 수 있다. 건강보험이나 장기 요양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인상과 의료비 지출통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재정방식을 통한 인구절벽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 특히 후기고령층의 증가가 지속되는 한, 재정 수입과 지출 간 괴리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인상하더라도 연기금 소진 시기는 수년 늦출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재정방식은 인구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부담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구절벽 대응에 한계가 있다. 게다가 보장성이 지나치게 약화되면 사회 보장제도로서 역할이 소멸될 수 있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도 없다.

• • • • •  
**재정방식을 통한  
 인구절벽 대응은  
 인구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부담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하는 생산가능인구 확보 전략

결국 인구절벽 문제는 적정규모의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는 방법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다. 잠재인력으로서 노인인구를 노동시장에 가급적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방법은 인구구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생산가능인구를 65세 이상으로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아예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 등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전통적인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65~69세 인구의 비율이 2020년 7.1%에서 2050년 15.3%로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미래에는 고령층의 건강이나 직업력 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노인연령 기준 상향조정은 단순히 통계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규모를 늘리는 데 불과하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감소가 시작되었으나 노동력 부족은 1차와 2차 베이비붐세대(1955~1974년 출생코호트) 대부분이 정년퇴직하는 2030년대 전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년연장과 그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정년을 일시에 5세씩 높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잠재인력으로서 여성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토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스웨덴이 1960년대에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채택한 전략으로서 노동시장과 가족생활에서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이 보장되어야 가능하다.

.....

**우리나라도  
미래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하여 필요 인력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고려하는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 미래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한 인력정책 필요

인구절벽 해소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력을 수입하자는 주장은 여러 측면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경제성장기에 많은 유럽 국가들은 당시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중동 등에서 근로자를 수입하였다. 그러나 송금(remittance)으로 인한 국부 유출, 테러나 범죄, 인종 갈등 등 각종 사회문제가 증가하는 데다가,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 기반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수입을 중단하였다. 대신 첨단기술 등을 갖춘 우수인력만을 수용하는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다. 실제로 많은 외국학자들은 이민자 유입이 초기에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들 역시 고령화된다는 점에서 인구절벽 해소에 효과가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도 미래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하여 필요 인력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고려하는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일정 규모의 생산가능인구는 유지해야

한편 미래에는 4차 산업혁명 등을 통한 기술 발전이 많은 업종에서 노동력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인구절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적지 않다. 역사적으로 보면 1차 산업혁명(1760~1820년) 당시 석탄을 이용한 증기에너지는 기술 발전을 선도하여 대량생산을 가능케 하였으며, 그로 인해 잉여 노동력이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맬서스(Malthus, 1766~1834년)는 1798년에 펴낸 그의 저서 『인구론』에서 이성과 자연법칙에 의한 인구증가 억제를 주장하고, 이어서 신맬서스주의자(neo-Malthusianist)들이 등장하여 산아제한(수태조절)을 통한 인구 억제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인구는 계속 증가하였으나 그로 인해 잉여 노동력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즉 늘어나는 생산가능인구는 새로운 노동력 수요와 균형을 유지하였다. 이는 전기의 힘으로 기계를 가동하여 대량생산을 가능케 한 2차 산업혁명(1865~1900년) 시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요컨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노

동력 수요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일정 규모의 생산가능인구는 필수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인구절벽 문제의 근본적 해소는 출산율 회복

이와 같이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법들은 인구절벽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지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이며 더욱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를 가진다. 결국 우리는 인구절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회복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19세기 말엽 프랑스에서 인구주의(Populationism)가 등장한 이래 서유럽과 북유럽 및 중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20세기 중엽부터 워라밸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평등 등을 기치로 인구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 결과 이들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1.5명에서 2.1명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회복 노력은 2006년부터 본격화되어 2022년 현재 17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0명대에서 더욱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정책 틀(frame)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환언하면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의 정책은 주로 합계출산율이 1.5명 이상인 상황에서 작동하였고, 양성이 평등한 사회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한국사회에서 성공을 담보할 수 없었다. 더욱이 이들 정책마저 사각지대가 크고(예로 육아휴직 등), 영세하기까지 하여(예로 각종 급여 수준의 비현실성 등) 국민의 요구와는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미시적인 접근들이 고용, 교육, 주택, 문화 등의 영역에서 거시적인 접근들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결함이다. 요컨대 지금까지의 저출산대책 프레임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인구 추세는 쉽게 변경되지 않는다는 ‘인구 관성의 법칙’ 때문에 단기간의 정책으로는 출산율 상승이라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결국 5년 단임제를 초월하여 모든 정부가 일관성 있게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저출산대책 프레임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 | 현안분석 |

## ■ 재정사업 원가산정체계 현황과 유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양은주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초빙연구위원

## ■ 근로·자녀장려금 형평성 효과

전병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재정사업 원가산정체계 현황과 유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양은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초빙연구위원  
(eyang@kipf.re.kr)

## I. 서론

국가회계에서 원가는 “국가가 프로그램(사업 또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로 정의한다. 정부 재정사업의 원가는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에게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원가정보는 사업관리자에게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원가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또한, 예산배분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자에게는 유사한 여러 정책사업 간의 우선순위 결정에 도움을 주며, 사후적으로는 사업수행 성과와 비교함으로써 책임자에 대한 올바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차기년도 예산편성 시 환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전환하였는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통한 원가 산출은 이러한 프로그램 예산제도하에서 사업별로 직접비, 간접비 및 공통비, 그리고 발생주의 항목을 포괄하는 소위 총원가(full cost)를 산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별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인건비, 이자 지출 등 현금지출을 수반하는 경비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등 발생주의 비용도 포함하여 계상되기 때문에 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투입원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발생주의 도입 이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잘 정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Moretti, 2016) 초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재무제표 작성이라는 재무회계 중심의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발생주의 정보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 예산과의 연계 미흡 등의 사유로 인해 정책결정에서의 활용이라는 확대된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원가정보는 재정운영표 작성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결정 및 성과평가를 위한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지난 10년간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재정사업의 원가산정체계를 분석하고 현행 체계에서 유용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향후 원가정보의 활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II. 재정사업 원가산정체계 개요

### 1.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에서의 원가산정체계 비교

원가회계란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된 경제가치(원가)를 집계하여 상세히 기록 및 보고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원가회계정보는 원가의 구성요소나 제품별로 원가를 파악하여 재고자산과 기간손익을 산출함으로써 정확한 재무회계정보의 기초정보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의사결정, 경영계획의 수립 및 통제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국가회계에서도 재정운영표 작성에 필수적인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성과평가 단계에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유용한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고자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재정사업의 원가를 산출하고 있다.

기업회계의 경우 해당 정보의 활용 목적에 따라 원가 집계 대상을 제품(서비스), 활동, 부문, 공정 등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국가회계에서는 「원가계산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원가정보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결정 및 성과평가를  
위한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에서의 원가산정체계는 보고목적 및 계산방식 등의 측면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으나, 국가회계에서 원가집계 대상을 프로그램이라는 사업단위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표 1>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에서의 원가산정체계 비교

구분	국가회계	기업회계
보고대상	예산 및 정책결정자, 일반 국민	내부 경영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보고목적	재정운영표 작성 및 공시, 예산결정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제공, 원가 통제 및 성과평가	제품원가계산, 경영계획 수립, 원가통제 및 성과평가
집계대상	재정사업단위(프로그램)	제품, 활동, 부문, 공정 등
구성요소	프로그램 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출처: 저자 작성

준칙」 제6조에 따라 원가 집계 대상을 사업예산의 편성단위에서 통제나 의사결정이 필요하여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설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체계에서는 프로그램을 원가 집계 단위로 설정하여 프로그램 별 원가를 산정하여 재정운영표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국가회계에서 원가는 발생 행태에 따라 크게 프로그램 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으로 분류하여 측정하며, 이는 기업회계에서 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분류하여 인식·측정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처럼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에서의 원가산정체계는 주요 보고목적 및 계산방식 등의 측면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으나, 국가회계에서 원가 집계 대상을 프로그램이라는 사업단위로 설정함에 따라 해당 원가를 프로그램 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으로 분류하여 인식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2. 현금주의 지출과 발생주의 비용 산정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프로그램 예산제도하에서 프로그램에 투입된 자원(예산)은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방식으로 인식되는 반면, 국가결산서상의 프로그램의 비용(프로그램원가)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방식으로 산출된다(허웅·윤성식 2014). 따라서 국가회계에서의 원가는 발생주의에 기반한 감가상각비 등의 발생

주의 비용과 간접원가를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실제 예산상의 지출과는 차이가 있다.

현금주의 회계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거래만을 인식하여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해가 쉽고, 확실한 측정이 가능하며, 현금흐름에 대한 통제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의 변동이 아닌 경제적 실질이 변동하는 시점을 거래로 인식함으로써 현금주의 회계에 비해 복잡하지만 정보이용자들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정확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통해 현금주의로 산정된 과대/과소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하여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자산취득으로 발생한 지출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과 같이 20X1년도에 100억원을 지출하여 국립박물관을 건설하고 20X2년도에 운영비 2억원을 지출한 경우 세출규모로만 비교하면 20X1년도에 비해 20X2년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였다는 왜곡된 분석이 나올 수 있으나, 발생주의에 기반한 순원가를 산출하는 경우 건설비 100억원을 해당 시설의 사용기간 전체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인식함으로써 X1년도에 비해 X2년도에는 운영비 추가 발생분 만큼의 지원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발생주의로 산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의 변동이 아닌 경제적 실질의 변동 시점을 거래로 인식함으로써 현금주의 회계에 비해 복잡하지만 정보이용자들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정확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 현금주의 세출 결산과 발생주의 원가 비교 예시: 국립박물관 건설



출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알기 쉬운 국가회계 2020』, 2020. 10.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의해 산정되는 정보의 차이가 큰 예로 용자사업을 들 수 있다. 용자사업을 세출규모만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규모가 과대계상되어 인식될 수 있으며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한 원가정보는 세출 결산정보에 비해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 간 비교 분석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의해 산정되는 정보의 차이가 큰 사업의 예시로 용자사업을 들 수 있다. 용자사업은 정부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현금주의 세입·세출 결산에서는 용자금 전액을 해당 정책에 대한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용자금 원금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미래에 국가에 상환되어야 하므로 해당 금액을 용자사업의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발생주의 관점에서는 원금과 용자보조비용을 분리하여 용자금에 대한 정책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의 차이에 기인하는 차액 부분만을 용자보조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용자사업을 세출규모만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규모가 과대계상되어 인식될 수 있으며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2]와 같이 용자금 1,000억원, 용자보조비용 5억원인 용자사업 A와 용자금 500억원, 용자보조비용 10억원인 용자사업 B의 정책사업 효과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세출규모로만 볼 때에는 용자사업 B가 A에 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발생주의로 산정한 실제 비용은 A보다 B가 더 크게 나타나므로 용자사업 A가 더 효율적인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현금주의 세출 결산과 발생주의 원가 비교 예시: 용자사업



출처: 저자 작성

이처럼 발생주의로 원가정보를 산출하면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사업 간 원가의 비교·분석이 가능해져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3.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원가계산지침

앞서 예시를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발생주의로 원가정보를 산출하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로 정책사업의 원가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해져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는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당 사업의 예산을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용된 재정지출(원가)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발생한 비용과 수익에 대한 일관성 있는 구분 및 관련 사업으로의 명확한 배부가 요구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에서 원가를 정의하고 세부회계처리지침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회계에 규모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에서는 비용과 수익에 대한 정확한 집계와 구분, 관련 사업으로의 배부 등 원가계산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 가. 원가계산 절차 개요

원가계산의 일반원칙에 따라 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원가 집계 대상별로 분리가능한 원가는 직접 부과하고, 분리가능하지 않은 원가는 원가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배부하며 채택한 원가계산 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원가계산과정은 원가 집계 대상의 설정, 비용과 수익의 집계,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의 구분, 행정운영성 경비 구분, 간접원가 배부를 통해 재정운영 순원가를 산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 1) 원가 집계 대상 설정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에 따라 원가 집계 대상은 사업예산의 편성단위에서 통

**국가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용된  
재정지출(원가)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발생한 비용과  
수익에 대한  
일관성 있는 구분 및  
관련 사업으로의  
명확한 배부가 요구된다.**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로 발생하는 거래(예산거래)에 대하여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대응을 통해 발생주의에 따른 자산, 부채, 수익, 비용항목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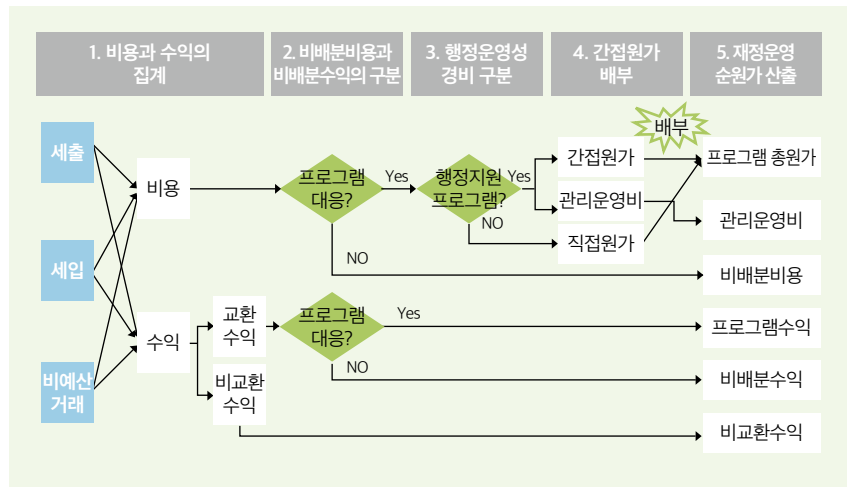
제나 의사결정이 필요하여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운영표상 작성단위인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원가 집계 대상을 설정하고 있으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상에서는 직접원가에 한하여 단위사업 수준까지 세분화하여 원가를 산출하고 있다.

2) 비용과 수익의 집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로 발생하는 거래(예산거래)에 대하여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대응을 통해 발생주의에 따른 자산, 부채, 수익, 비용항목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때 수익·비용으로 집계된 항목이 원가계산의 대상이 된다. 다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재원이 이전되는 무상이전지출, 기타재원이전, 재원의 조달 및 이전, 비교환수익의 경우에는 원가계산에서 제외되고, 특히 비교환수익의 경우, 행정형 회계의 비교환수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으로 표시되고, 사업형 회계의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으로 표시된다.

또한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비예산거래의 경우에도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그림 3] 원가계산 절차



출처: 기획재정부(2020), 『국가회계편람』, '18.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실무해설 4, p. 487

세출예산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발생주의상 비용에 해당되므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응되도록 해야 한다.

### 3)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의 구분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익 중에서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은 수익과 비용은 각각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이처럼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은 국가 재정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전출금, 예탁금, 예수원금상환, 예수이자상환 등 내부거래지출과 여유자금 운용, 차입금원금상환 등의 보전지출은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재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므로 프로그램원가가 아닌 비배분비용으로 구분된다.

### 4) 행정운영성 경비 구분

프로그램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지만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건비·운영비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비는 일반적으로 행정지원 프로그램으로 별도 편성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집계된 비용을 ‘행정운영성 경비’라 한다.

위와 같이 집계된 행정운영성 경비는 ‘관리운영비’로 처리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나 행정운영성 경비로 일괄적으로 집계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프로그램의 수행과 관련된 경우에는 간접원가로 구분하고,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해당 간접원가만을 프로그램원가에 포함시킨다.

### 5) 간접원가 배부

간접원가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었으나 특정 사업에 직접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인건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의 원가를 말하며, 이를 배부하기 위해서는 원가 집계 대상과의 인과관계 등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따른다. 예컨대 ① 인원 수 또는 인건비, ② 원가대상의 직접원가, ③ 사용면적 또는 자산 금액, ④ 생산품의 수량 등의 배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익 중에서 국가 재정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은 각각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국가회계실체는  
행정형 회계가  
사업형 회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회계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몇 가지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형 회계의 원가 계산과정 예외사항

앞서 설명한 원가계산 절차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가계산의 절차이다. 하지만 국가회계실체는 행정형 회계에 대하여 사업형 회계보다 단순화된 원가계산을 수행하도록 몇 가지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형 회계의 경우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독립적인 수익 창출 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로 정확한 프로그램별 총원가 산출을 위해 세부적인 원가계산이 필요한 반면, 행정형 회계는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 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로 사업형 회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회계실체별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행정형 회계에서의 주요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수익 집계 시 수입대체경비만 구분

행정형 회계의 경우 ‘수입대체경비수입’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하도록 하여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한다. 그리고 현재 일반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수입경비대체경비수입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은 프로그램별로 대응이 어려우므로 프로그램수익의 별도 표시를 유예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사업과 관련이 있는 원가라 하더라도 비배분수익으로 집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2) 간접원가 배부 예외

행정형 회계에서는 행정운영성 경비를 전액 관리운영비로 구분한다. 사업형 회계는 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나 행정운영성 경비로 일괄적으로 집계되는 원가를 간접원가와 관리운영비로 구분한 후 간접원가만을 프로그램에 배부한다.

〈표 2〉 행정형 회계와 사업형 회계의 행정운영성 경비 배분 비교

〈행정형 회계〉	〈사업형 회계〉
행정운영성 경비 → 관리운영비	행정운영성 경비 [ 관리운영비 간접원가

출처: 기획재정부(2020), 『국가회계편람』, '18.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실무해설 12, p. 49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Ⅲ. 프로그램 원가정보 현황 분석

본 장에서는 제Ⅱ장에서 설명한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을 바탕으로 산출된 지난 10년간의 정부 재정사업의 원가정보를 분석하여 해당 정보가 가지고 있는 유용성과 현행 체계에서의 미비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우선, 현금주의로 산정된 총지출과 발생주의로 산정된 총비용의 차이를 살펴 보고자 한다.

발생주의로 산정한 총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현금주의로 산정한 총지출은 결산서상의 지출액으로 산정하여 비교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발생주의로 산정한 비용이 지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지출을 현금주의로 산정한 규모보다 실제로 투입된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적으로 51.9조원 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그림 4]를 통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까지

발생주의로 산정한 총비용이 현금주의로 산정한 총지출보다 크게 나타난 점은 재정지출을 현금주의로 산정한 규모보다 실제로 투입된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 재정사업의 총비용(발생주의)과 총지출(현금주의) 차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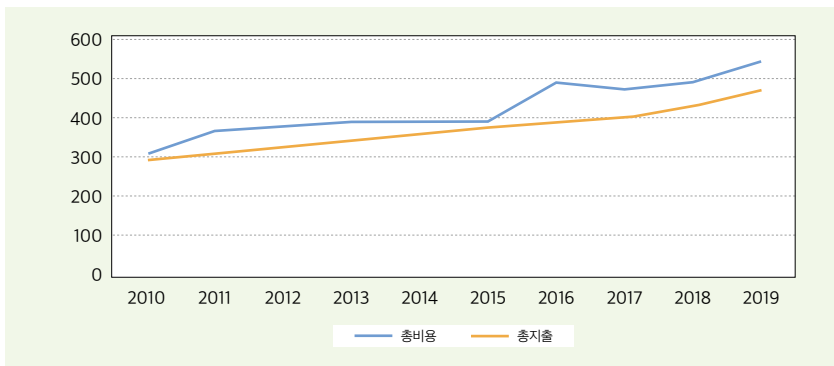
(단위: 조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비용	307.5	364.5	373.4	389.0	387.3	390.8	488.9	475.7	490.1	535.8
총지출	292.8	309.0	325.4	342.0	355.8	375.4	386.4	400.5	428.8	469.6
차이	14.7	55.5	48.0	47.0	31.5	15.4	102.5	75.2	61.3	66.2

출처: dBrain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총비용·총지출 연도별 추이

(단위: 조원)



출처: dBrain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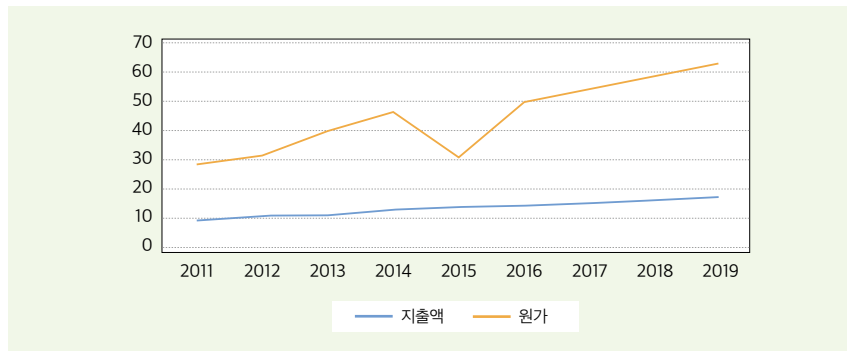
2014~15년 총비용의 감소는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해 당기 인식된 공무원연금 급여비용이 15조원가량 감소한 것이 일부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5~16년의 총비용의 증가는 2016년 자산재평가로 인한 평가손실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는 총비용과 총지출의 차이가 점차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4~15년 총비용의 감소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당기 인식된 공무원연금 급여비용이 15조원가량(2014년 46.2조원, 2015년 30.9조원) 감소한 것이 일부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5~16년의 총비용 증가는 2016년 자산재평가로 인한 평가손실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 35.6조원, 사회기반시설재평가손실 20.4조원). 또한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차이는 연금 관련 원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출액 대비 원가가 증가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공무원연금 급여지급 프로그램의 지출액·프로그램원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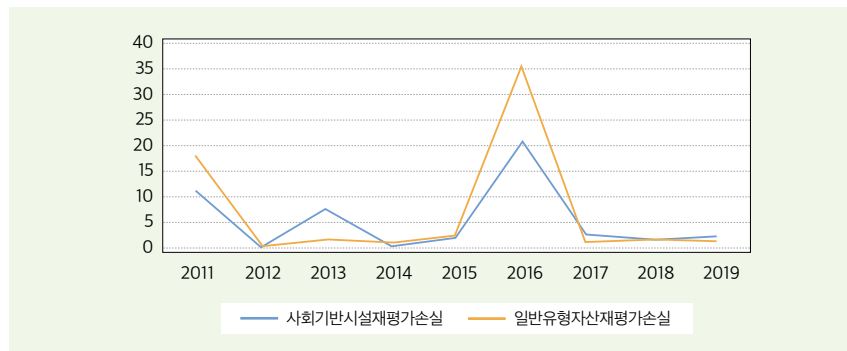
(단위: 조원)



출처: dBrain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 연도별 자산재평가손실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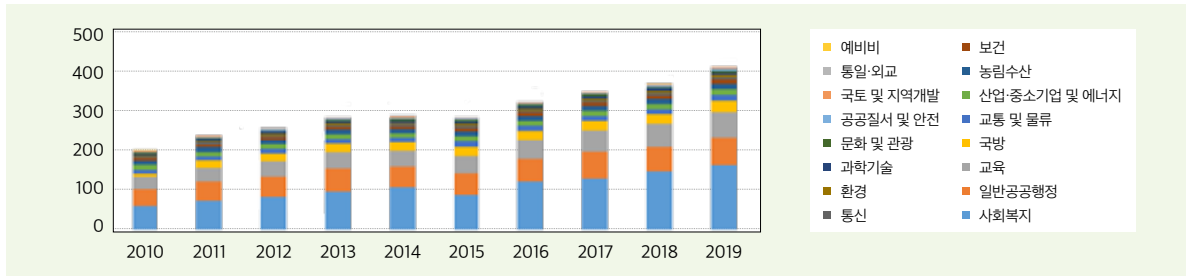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2020), 『국가회계편람』 '18.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실무해설 4, p. 487

다음으로 총비용을 프로그램 총원가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으로 나누어 현황을 분석해보았다. [그림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총원가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약 240.1조원에서 2019년 490.3조원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16대 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194.0조원), 일반지방행정(83.4조원), 교육(75.9조원) 순서로 각각 전체 총원가의 39.6%, 17.0%, 1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연금지급액(2019년 기준 국민·군인·공무원·사학연금 총 112조원)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프로그램 총원가의 추이를 살펴보면 연도별로는 2010년 약 240.1조원에서 2019년 490.3조원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7] 연도별·분야별 프로그램 총원가 추이

(단위: 조원)



출처: dBrain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4> 연도별·분야별 프로그램 총원가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9 비율
1. 사회복지	72.6	88.8	99.5	116.2	128.7	105.3	145.6	155.5	176.2	194.0	39.6
2. 일반·지방행정	50.6	57.1	60.6	68.8	61.5	65.5	67.5	80.9	73.8	83.4	17.0
3. 교육	37.7	41.2	45.9	48.0	47.8	51.8	55.2	61.6	67.3	75.9	15.5
4. 국방	8.1	21.9	24.4	26.2	25.6	27.0	29.3	30.7	31.3	34.0	6.9
5. 교통및물류	11.8	10.6	12.6	13.3	12.5	16.4	14.2	13.7	13.9	18.5	3.8
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4.6	14.9	13.8	14.2	14.2	14.8	15.6	14.4	15.3	16.8	3.4
7. 농림수산	12.6	14.4	12.8	13.2	12.2	14.5	14.2	14.5	16.3	16.0	3.3
8. 보건	7.0	7.2	7.0	7.9	8.3	9.9	9.6	9.4	9.7	10.9	2.2
9. 통신	4.2	6.5	7.0	6.8	6.5	6.5	6.5	7.1	6.9	8.0	1.6
10. 환경	5.1	5.3	5.0	5.4	5.6	6.2	6.2	6.3	6.3	7.7	1.6
11. 과학기술	4.0	4.5	5.1	5.6	5.7	6.1	6.4	6.6	6.8	7.1	1.4
12. 문화및관광	3.1	3.4	3.7	4.0	4.3	5.0	5.5	5.8	5.3	6.0	1.2
13. 공공질서및안전	2.7	3.1	4.3	3.6	4.0	4.0	4.0	4.2	4.6	5.2	1.1
14. 국토및지역개발	4.0	3.7	3.1	3.0	3.6	3.3	2.6	2.3	2.9	4.0	0.8
15. 통일·외교	1.7	2.0	2.3	2.3	2.3	2.4	3.0	2.6	2.9	2.9	0.6
16. 예비비	0.3	-	-	-	-	-	-	-	0.6	-	0.0
합계	240.1	284.6	307.1	338.4	342.9	338.8	385.2	415.6	439.9	490.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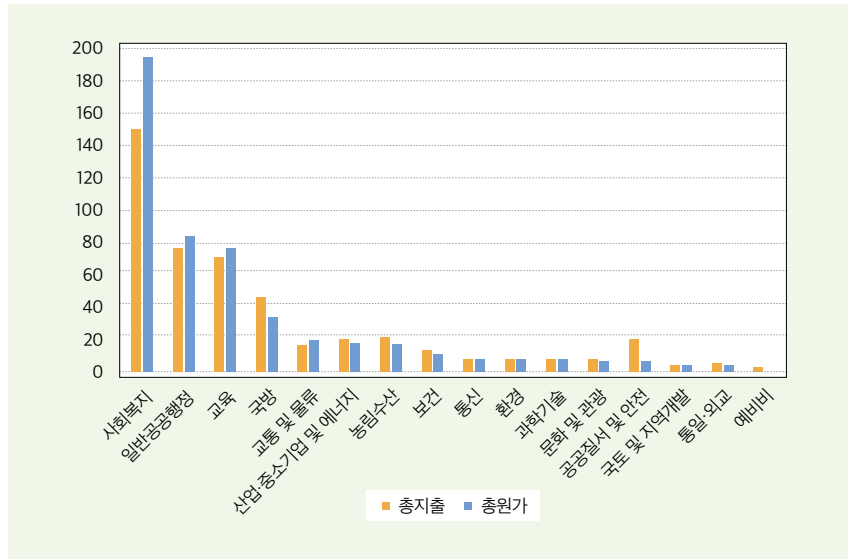
출처: dBrain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11년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초기부터 비배분비용으로 분류된 비용을 프로그램원가에 배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는 비배분비용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 지출액과 원가 차이를 비교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발생주의 원가가 지출액에 비해 45조원 이상 크게 나타나며, 이는 미래에 지급될 연금 비용을 발생주의에 따라 당기비용으로 선인식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원가에 비해 지출액이 크게 나타난 분야는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인데 이는 자산구입과 같은 자본성 지출이 큰 경우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 8] 2019년 분야별 지출·원가 차이 비교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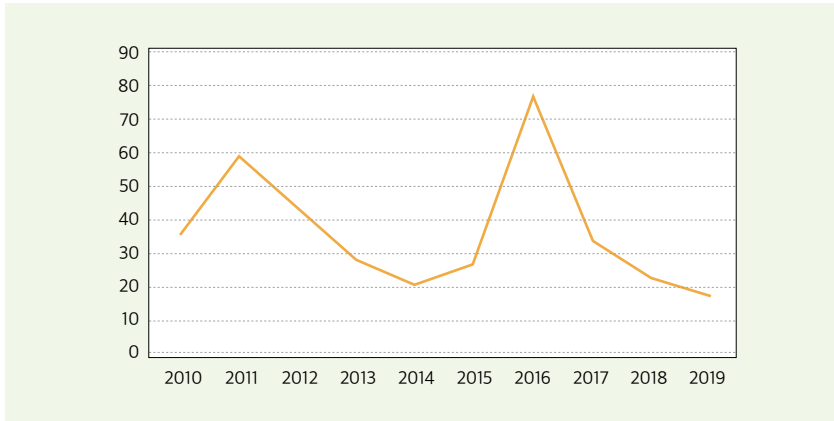
출처: dBrain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비배분비용의 연도별 추세를 분석하였다. 비배분비용은 프로그램과 대응되지 않는 비용으로, 프로그램 총원가로 배분되어야 할 금액이 비배분비용으로 구분될 경우 프로그램 총원가가 과소계상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2011년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초기부터 비배분비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비배분비용으로 분류된 비용을 프로그램원가에 배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그림 9]를 통해 비배분비용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을 제외하고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에 비배분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사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배분비용

[그림 9] 연도별 비배분비용 추이

(단위: 조원)



출처: dBrain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16년도를 제외하고 비배분비용으로 분류된 항목이 2010년 36.9조원에서 2019년 18.1조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한 것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정착에 따라 비용의 적절한 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 비배분비용의 증가분은 [그림 6]을 통해 확인한 자산재평가로 인한 평가손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도를 제외하고는 비배분비용으로 분류된 항목이 2010년 36.9조원에서 2019년 18.1조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보아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비용의 적절한 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5> 연도별 비배분비용 세부내역

(단위: 조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9 비율
합계	36.91	60.98	45.34	29.20	21.68	27.95	79.31	34.71	23.74	18.08	
평가손실	3.76	29.92	9.14	12.81	2.14	5.15	57.62	4.58	5.93	3.25	17.99
이자비용	2.71	3.09	3.11	2.83	2.76	2.86	2.82	2.63	2.64	2.60	14.38
자산처분손실	0.82	1.66	1.07	1.25	2.04	2.43	1.65	1.66	2.04	2.47	13.68
대손상각비	1.37	1.32	1.44	1.01	1.16	1.69	1.17	0.95	1.62	1.20	6.65
자산감액손실	0.14	0.42	0.65	0.86	0.41	0.49	0.40	2.52	0.49	0.27	1.51
감가상각비	0.08	5.33	1.57	1.84	2.00	2.46	2.30	3.23	1.25	0.06	0.31
기타비용	15.56	7.68	16.58	7.80	10.64	12.16	13.04	18.96	9.49	7.99	44.17

출처: dBrain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6> 연도별 관리운영비 세부내역

(단위: 조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9 비율
합계	30.42	18.91	21.03	21.40	22.68	24.00	24.42	25.40	26.50	27.43	
인건비	21.59	12.78	14.01	14.56	15.26	15.94	16.73	17.60	18.37	19.17	69.87
복리후생비	0.74	1.47	2.52	2.48	2.68	2.57	2.82	3.03	3.16	3.37	12.29
업무추진비	0.57	0.80	0.81	0.82	0.83	0.88	0.94	0.94	0.88	0.85	3.10
감가상각비	0.18	0.72	0.65	0.65	0.64	1.02	0.66	0.68	0.71	0.70	2.55
출연비	0.35	0.40	0.43	0.45	0.47	0.49	0.54	0.58	0.63	0.64	2.33

출처: dBrain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7> 2019년 중앙부처별 프로그램 총원가·관리운영비 비교

(단위: 백억원)

부처명	프로그램 총원가	관리운영비	부처명	프로그램 총원가	관리운영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0.5	1.0	방송통신위원회	2.9	3.3
감사원	14.1	0.0	방위사업청	340.5	26.9
경찰청	138.7	1,055.4	법무부	128.6	277.5
고용노동부	3,102.9	107.8	법제처	3.9	0.0
공정거래위원회	6.5	6.8	병무청	3.2	2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52.3	67.0	보건복지부	9,599.8	44.7
관세청	14.4	45.9	산림청	181.3	18.0
교육부	7,937.3	16.4	산업통상자원부	846.6	24.6
국가보훈처	527.0	12.4	새만금개발청	0.3	1.8
국가인권위원회	3.7	0.0	소방청	14.3	8.3
국가정보원	51.5	0.0	식품의약품안전처	29.4	21.3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48.1	8.8	여성가족부	104.1	2.7
국민권익위원회	8.8	0.0	외교부	230.5	20.8
국방부	4,274.9	69.9	원자력안전위원회	9.0	1.8
국세청	24.5	167.3	인사혁신처	4,812.2	9.3
국토교통부	2,482.0	37.2	조달청	10.6	3.8
국회	21.2	43.6	중소벤처기업부	607.5	25.2
금융위원회	247.7	17.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7	28.4
기상청	26.8	12.8	통계청	31.6	7.1
기획재정부	2,212.9	21.9	통일부	23.9	7.1
농림축산식품부	1,087.5	36.2	특허청	43.0	1.1
농촌진흥청	84.7	15.6	해양경찰청	37.6	108.9
대법원	46.7	158.3	해양수산부	516.0	49.9
대통령경호처	9.2	0.0	행정안전부	6,097.8	40.6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9.7	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3.2	1.9
문화재청	79.8	9.3	헌법재판소	4.8	0.0
문화체육관광부	480.2	35.5	환경부	814.5	4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1	0.0			

출처: dBrain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다음으로는 관리운영비의 연도별 추세 및 세부내역을 살펴보았다.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 및 행정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행정운영성 경비를 별도로 분류하는 이유는 수혜자가 국민이 되는 사업원가와 공무원이나 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운영성 경비를 구분하기 위함이며, 프로그램 사업원가와 달리 경제성과 효율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연도별 관리운영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인건비와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포함하며, 2019년 기준으로 관리운영비의 총합계는 27.4조원으로 인건비(19.2조원)와 복리후생비(3.37조원)가 전체의 약 80% 이상을 차지한다.

관리운영비 내역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부처별로 관리운영비 배분 실태가 매우 상이하다는 점이다. <표 7>은 2019년 기준 부처별 프로그램 총원가와 관리운영비를 비교한 표이다. 관세청, 국세청, 대법원 등과 같이 행정운영의 성격이 강한 부처의 경우 프로그램 총원가에 비해 관리운영비의 비율이 최대 7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따라서 관리운영비를 통해 해당 부처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할 때에는 부처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부처 간 비교에서는 해당 정보의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형 회계실체의 간접원가 배부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9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dBrain에 존재하는 84개의 사업형 회계실체 중 간접원가를 배부한 회계실체는 특허청, 조달특별회계(조달청), 석면피해구제기금(환경부), 언론진흥기금(문화체육관광부) 단 4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업형 회계실체 중 간접원가를 배부하지 않은 사유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

**관리운영비 배분 실태는 부처별로 매우 상이하여 관리운영비를 통해 해당 부처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 평가 시 부처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부처 간 비교에서는 해당 정보의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표 8> 사업형 회계실체별 간접원가 배부 현황(2019년 회계연도 기준)

(단위: 억원, %)

부처명	회계실체명	행정운영성 경비	관리운영비	간접원가	간접원가 비중
특허청	특허청	1,729.90	108.70	1,621.20	93.7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1,114.64	371.96	742.69	68.6
환경부	석면피해구제기금	19.20	2.59	16.61	86.5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진흥기금	2.25	1.86	0.38	17.0

출처: dBrain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프로그램 단위의  
원가 집계는  
내부 의사결정을  
위하여 원가정보를  
실질 활용하기에  
너무 광범위하며 공시된  
프로그램별 비용정보가  
의미하는 바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이를 활용한 분석 또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는데, 주로 행정운영성 경비가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배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간접원가를 배부한 회계실체를 분석해보면, 전체 행정운영성 경비 중 간접원가의 비중은 17%에서 93.7%까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간접원가 배부기준 및 관련 프로그램의 배부기준 등에 대하여는 정보를 공시하지 않으므로 간접원가 배부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세부 산정내역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된다.

## IV. 재정사업 원가산정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생주의 도입 초기에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10년이 지난 현재에는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충분히 정착되었으므로 실질적인 내부관리 목적의 유용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가 산출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현행 체계분석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 1. 원가집계단위 설정의 문제: 사업별 원가단위의 자율성 부여

우선 원가 집계 대상을 프로그램으로 적용하는 점이 적절한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원가계산준칙」 제6조에서는 원가 집계 대상을 해당 사업관리자, 예산 편성 관계자 등 정보이용자의 수요에 맞게 원가 집계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dBrain 시스템 운영과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초기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가 집계 대상을 재정운영표 작성단위인 프로그램별로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유지되어 프로그램 단위로 원가가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내부 의사결정을 위하여 원가정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프로그램이라는 단위는 너무 광범위하며 단위사업·세부사업의 집합개념이므로 공시된 프로그램별 비용정보가 의미하는 바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이를 활용한 분석 또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히 지난 10년간 동일한 프로그램명 내에서도 단위사업·세부사업의 추가, 통합, 분할, 폐지 등 다양한 과목구조 개편으로 인해 원

가의 변동이 어디서 기인하였는지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과거 10년간 프로그램 총원가는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과목구조의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단위사업 수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9년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편 이후 총원가를 발생시키는 프로그램·단위사업 수는 각각 578개, 2,650개로 2010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프로그램당 평균 비용, 즉 프로그램의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내부관리 목적에서 프로그램이라는 사업단위가 적절한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019년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편 이후 총원가를 발생시키는 프로그램·단위사업 수가 2010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은 내부관리 목적에서 프로그램이라는 사업단위가 적절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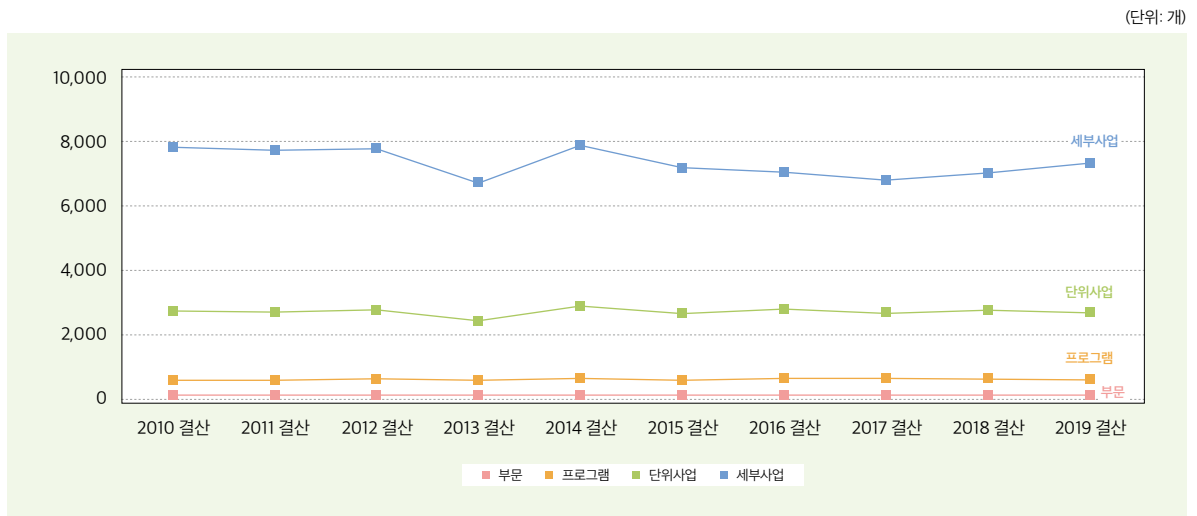
<표 9> 연도별 프로그램 예산구조 변동내역

(단위: 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분야 수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부문 수	69	69	69	69	69	69	69	69	69	75	
프로그램 수	552	551	581	539	602	563	612	600	608	578	591.6
단위사업 수	2,682	2,679	2,759	2,404	2,835	2,646	2,760	2,653	2,724	2,650	2,778.4
세부사업 수	7,825	7,722	7,780	6,718	7,897	7,190	7,029	6,778	7,009	7,319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 현황 - 연도별 세부사업 현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10] 연도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수 추이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 현황 - 연도별 세부사업 현황

관리운영비 구분 기준이  
부처별로 상이한 원인은  
행정지원 프로그램의  
편성기준 미흡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가 수행사업의 발생주의 원가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집계 대상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질적인 예산평가단위가 프로그램이 아닌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이므로 발생주의 원가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원가 집계 대상을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 사업분류체계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제약사항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재정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프로그램 예산구조는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순으로 계층화되어 있는데,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개념이 각각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의 하위 사업이라는 것 이외에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며, 사업별로 사업관리단위가 상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부처별·사업별로 원가정보의 수요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괄적인 집계단위 설정이 아니라, 각 사업관리자가 상황에 따라 원가집계단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dBrain에서는 최하위 사업단위인 세부사업 단위의 원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부처별·사업별로 적절한 단위로 집계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이고 유용한 원가 집계 대상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관리운영비 구분 기준 미흡 - 행정지원 프로그램 편성 기준 명확화

다음으로 부처별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대한 비용분류가 일관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원가계산지침은 행정운영성 경비를 행정지원 프로그램으로 집계된 비용으로 정의(「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제16조)하는데, 관리운영비 구분 기준이 부처별로 상이한 원인은 행정지원 프로그램의 편성기준 미흡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부 중앙관서에서는 행정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정하여 행정운영성 경비를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반면, 별도의 행정지원 프로그램 편성 없이 기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을 모두 일반사업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부처도 존재한다. 행정지원 프로그램이 설정되지 않은 부처의 경우, 대부분 부처의 고유사업 자체가 행정적인 성격으로 기관의 운영경비 및 인건비가 사업비와 동일한 프로그램

**<표 10> 행정운영성 경비가 프로그램 총원가로 구분된 사례**

부처명	원가구분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감사원	프로그램 총원가	감사활동 및 행정지원	인건비
			기본경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호 및 향상	인건비
			기본경비
법제처		정부입법 총괄지원	본부 인건비
			본부 기본경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기관 운영	인건비
			기본경비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 운영	인건비
			기본경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운영	인건비	
		기본경비	

출처: dBrain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처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부처운영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리운영비에 대한 비용분류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에 함께 편성되어 프로그램 총원가로 분류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해당 부처에 단 하나의 프로그램만이 존재하여 행정지원 프로그램으로 등록 시 프로그램 총원가를 0원으로 처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행정지원 프로그램을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헌법재판소 등에서는 인건비, 기본경비로 명시된 단위사업이 관리운영비가 아닌 프로그램 총원가로 구분되어 계상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 프로그램이 행정지원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적인 사업프로그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파악되었다.

관리운영비가 프로그램원가로 계상되는 경우, 프로그램 총원가가 과다계상되고 관리운영비는 과소계상되어 중앙관서 또는 사업의 평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부처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부처운영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리운영비에 대한 비용분류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부처의 결산담당자뿐만 아니라 예산편성담당자에 대하여도 관리운영비와 프로그램사업비의 명확한 구분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처의 고유사업이 행정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사업비와 운영비를 예산편성단계부터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사후에도 행정지원 프

효율성을 고려한  
행정형 회계에 대한  
프로그램 수익집계 및  
간접원가 배부의  
예외허용에 따른 득실을  
검토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로그럼 설정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dBrain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간접원가 배부미흡 - 간접원가 배부기준 확대 및 개선 검토

제II장에서 간접원가를 배부하지 않는 사업형 회계실체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결산검토 시 간접원가 미배부 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더불어 간접원가 배부 시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부기준이 설정되었는지도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간접원가 배부 실적의 미흡이 결산담당자의 원가정보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회계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결산담당자에 대하여 간접원가 배부에 대한 교육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형 회계에서 간접원가 배부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예규상 행정형 회계는 행정운영성 경비를 모두 관리운영비로 반영하여 간접원가 배부 절차를 거치지 않는데, 이상적으로는 정확한 사업 총원가 산정을 위하여 합리적인 간접원가 배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행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이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형 회계에서의 간접원가 배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체계에서 행정형 회계는 간접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총원가가 산정되어 과소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산 대비 적은 원가로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의사결정자가 오관하여 적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올바른 예산편성을 저해하는 의사결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현행 체계에서는 회계실체별로 행정운영성 경비의 구분기준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실체 간의 비교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다만 행정형 회계의 간접원가 배부의 효익과 비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간접원가 배부는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김이배, 2017). 특히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볼 때, 행정형 회계는 배부된 간접원가 비중 자체가 크지 않고,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왜곡된 원가가 산출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간접원가 배부의 실익이 비용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효율성을 고려한 행정형 회계에 대한 프로그램 수익집계 및 간접원가 배부의 예외허용에 따른 득실을 검토해보아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 4. 재정사업 원가정보의 활용방안 제안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효익은 현금주의로 산출된 예산정보 이외의 추가적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예산과 성과정보, 발생주의 원가정보가 완벽히 매칭되어 성과평가 및 예산결정 과정으로 환류되는 것이나 각 제도 간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다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예산으로의 환류기능은 단기간에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예산, 성과 및 원가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해당 정보로 인한 추가적 효익보다 유의하게 높을지는 미지수이므로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효익이 높은 분야에서 우선적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원가정보의 유용성이 큰 재정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정보 제공  
특히 자산취득이나 용자와 같이 지출액과 원가정보가 큰 차이가 나는 사업에서는 원가정보의 추가적인 효익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원가정보 활용이 유용한 재정사업유형을 선정하여 성과평가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정사업에서 원가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효율성 지표를 통해 사업을 관리하기보다는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부수적인 정보로 활용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활용방안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면에서 성과보고서 내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에 원가정보도 함께 추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사업관리자 및 일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원가정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원가회수가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예산 및 요금 산정을 위한 원가정보 활용  
발생주의 총원가의 개념은 원가회수가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예산 및 적정요금을 산정할 때 활용될 수 있다. 현재도 전기, 가스 등 공공서비스의 요금을 산정할 때,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의해 발생주의에 따라 산정된 원가정보를 기초회계자료로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확대하여 원가회수가 필요한 다양한 재정사업에 대하여 원가의 회수 정도나 예산책정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산취득이나 용자와 같이 지출액과 원가 정보가 큰 차이를 두는 사업에서는 원가정보의 추가적인 효익이 클 수 있고, 발생주의 총원가의 개념은 원가회수가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예산 및 적정요금 산정 시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통제 목적의  
단식부기·현금주의  
지출액에 비해 복식부기·  
발생주의 원가정보가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비용정보를 제공함은  
분명한 사실이나,  
원가정보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서는  
정보이용자들이 충분히  
활용가능한 형태로  
재정사업 원가가 산출될  
필요가 있다.

#### 다. 관리운영비를 활용한 부처운영 효율성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운영성 경비를 관리운영비 항목으로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은 중앙부처 간·기간 간 관리운영비 비교를 통해 중앙부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부처별 관리운영비 정보를 인사정보와 결합하여 1인당 관리운영비와 같은 행정관리 효율성 지표를 산출함으로써 고정비 성격의 관리운영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제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처별 특성에 따라 관리운영비의 규모 및 비중이 크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부처 간 비교분석 시에는 이러한 특성 차이가 심도 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 V. 결론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국가 재정관리에 현금주의 회계와 발생주의 회계를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다.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방식은 예산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인 반면,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방식은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재정정보 산출 및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체제 구축에 효과적이므로 이를 병행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과거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현금주의 예산체제하에서 발생주의 기반 재정정보는 예산과의 연계 미흡 및 이해관계자들의 낮은 이해도 등의 이유로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통해 프로그램 예산제도하에서 사업별 원가정보를 산출함으로써 이를 성과정보와 결합하여 효율적 사업관리 및 전략적 자원배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현재 재정사업의 원가정보는 재정운영표 작성에만 사용될 뿐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체제 구축”을 위한 관리 목적의 활용에는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통제 목적의 단식부기·현금주의 지출액에 비해 복식부기·발생주의 원가정보가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비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이아영, 2018), 현재 산출되고 있는 원가정보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할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원가산정체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으로 정보이용자들

이 충분히 활용가능한 형태로 재정사업원가를 산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가 집계 대상의 하향조정, 관리운영비 구분기준 개선, 간접원가 배부지침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다만 본고의 내용만으로 실질적으로 원가정보의 활용성을 개선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우선 본고에서는 전반적인 원가산정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재정사업의 특성에 따라 원가정보의 활용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세분화된 활용성 제고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사업 원가정보가 실제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원가정보 자체의 개선뿐만 아니라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의 개선도 함께 수반되어야 하지만 본고에서는 원가산정체계에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질적인 활용방안으로 개별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에서의 원가정보를 고려한 효율성 지표 활용을 제안할 수 있는데(김완희 외, 2014), 이는 원가뿐 아니라 재정투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의 산출 및 결과에 관한 정보가 결합되어야 하므로 추후 재정사업 평가체계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이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정책결정자가 인식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정책당국의 활용의지가 부족하다면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불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부문의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정착 및 활용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의 발생주의 정보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속적인 활용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한다.

재정여건이 어려워질수록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커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따라서 향후 원가정보를 활용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의 내용이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발생주의 정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원가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불필요 정보를 생산하는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정부 부문의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정착 및 활용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의 발생주의 정보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속적인 활용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알기 쉬운 국가회계 2020』, 2020. 10.
- 기획재정부, 『국가회계편람』, 2020. 12.
- 김완희·임정혁·이소정·이남주, 『정부 재정사업의 원가정보 활용방안 연구 - 영유아 양육지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김이배, 「정부부문의 합리적인 간접원가 배부에 관한 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5권 제1호, 2017, pp. 21~49.
- 신홍철·최용용·김완희, 「관리회계 관점에서 본 프로그램 예산의 핵심 이슈 및 정부의 과제 - 원가 정보의 산출 및 활용을 중심으로」, 『관리회계연구』, 제4권 제2호, 2004, pp. 85~119.
- 이아영, 「프로그램원가 정보의 공시와 국가회계정보의 유용성」, 『회계와 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8, pp. 269~309.
- 이원희·강인재, 「지방자치단체 원가관리의 개선방안」, 『정부회계연구』, 제11권 제1호, 2013, pp. 31~60.
- 임동완, 「발생주의 정부회계 활용을 위한 원가관리제도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3권 4호, 2012, pp. 267~290.
- 허경선·박노욱·김지영, 『공공기관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pp. 181.
- 허용·윤성식, 『정부회계학』, 법문사, 2014. 12.
- Moretti, D., “Accrual practices and reform experiences in OECD countries Results of the 2016 OECD Accruals Survey,” *OECD Journal on Budgeting*, 16(1), 2016.

Moretti. D., and T. Youngberry, “Getting added value out of accruals reforms,” *OECD Journal on Budgeting*, 18(1), 2018.

OECD and IFAC, *Accrual Practices and Reform Experience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2017.

### <웹사이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원가계산 준칙」,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공공요금 산정기준」, 검색일자: 2022. 2. 20.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 <https://kpfis.or.kr>

열린재정, <https://www.openfiscaldata.go.kr>, 검색일자: 2022. 2. 12.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byungj@kipf.re.kr)

1) 본고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근로자소득지원정책의 발전 방향: 근로장려세제의 확장」(전병목·전영준, 2022)의 일부분으로, 원고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요약하였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녀장려금의 형평성 효과<sup>1)</sup>

## I. 서론

근로장려금제도는 저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와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sup>2)</sup> 근로장려금제도와 함께 도입되었다가 별도 제도로 분리된 자녀장려세제 역시 자녀양육비의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조특법」 제100조의27). 동 제도들의 적용대상 역시 소득지원이 필요한 중하위 소득계층으로 설정하고 있다.

동 제도들의 효과분석은 제도 도입 목적을 반영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가장 주된 부류는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이다. 근로장려금제도 자체가 근로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소득증가에 따라 지원액이 증가하는 점증구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제도의 노동공급효과 분석은 홍우형(2021), 김문정·김빛마로(2020), 한중석·장용성·김선빈(2019), 신우리·송헌재(2018) 등 다양하다.

또 다른 제도 도입 목적인 소득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정책적 관점에서 많이 요구되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용됨에 따라 소득지원 효과에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주로 소득지원의 직접적 효과인 빈곤 완화, 소득재분배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임병인(2012), 신우리·송헌재(2018), 전병목·신상화(2018), 홍우형(2019) 등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최근 복지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복지정책의 유형도 지원대상을 특정한 제도에서 보다 일반화된 제도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일

반화된 재정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본소득 등에 대한 논의도 많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제도 역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그 적용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기본적인 소득증가 폭의 반영을 넘어 수혜가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근로장려금의 수혜가구는 지급연도 2009년 기준 59.1만가구에서 2020년 420.7만가구로 증가하였다. 2014년부터 근로장려금에서 분리된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역시 2020년 지급기준 69.9만가구에 달하였다. 2020년 지급기준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수는 약 491만가구<sup>3)</sup>에 달한다. 이러한 수혜가구 수는 2020년 전체 가구 수 2,035만가구(통계청, KOSIS 장래가구추계)의 24.1%에 달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제도 등의 수혜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보편적인 소득지원정책으로서의 기능도 강화되고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도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의 20% 상향, 최대지급액의 10%(단독가구, 맞벌이가구), 20%(홀벌이가구) 인상 등 제도 확대 공약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제도의 노동시장 영향과 함께 소득지원정책으로서의 기능, 즉 형평성 효과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기존에 잘 알려진 소득수준별 형평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사회적 변수들에 따른 형평성 효과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의 형평성 효과는 보편적 지원제도와 선별적 지원제도의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감안하여 본고는 근로장려금제도의 형평성 효과를 기존의 소득수준에서 연령, 혼인, 자녀 등 다양한 사회변수 등의 관점으로 확대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소득수준 중심의 형평성 논의가 간과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확대된 형평성 분석은 향후 근로장려금제도의 확장과정에서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은 제도 현황이며 제Ⅲ장은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형평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은 결론이다.

## Ⅱ. 제도 현황

2022년 현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제도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즉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에서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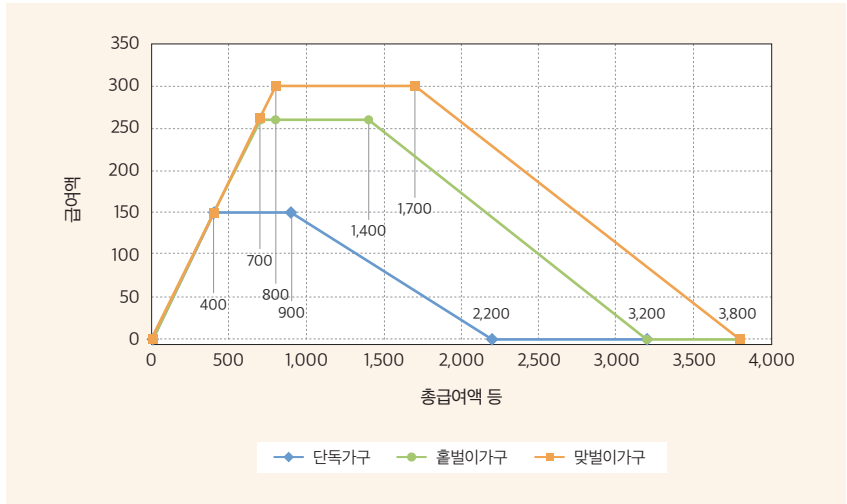
**근로장려금제도의 수혜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보편적인 소득지원정책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며 형평성 효과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3) 중복수급 가구 수는 51.6만가구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근로장려금 수급  
상한소득 인상이  
최대급여 지급  
소득기준의 조정없이  
이루어져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수의 확대와  
함께 점감률 하락을  
야기하게 된다.

[그림 1] 근로장려금의 산정방법(2022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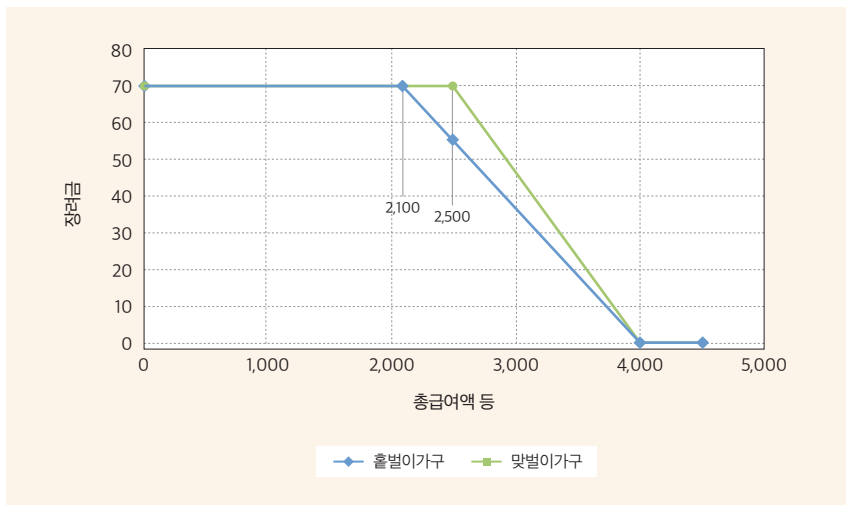
(단위: 만원)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 자녀장려금의 산정방법(2022년 지급)

(단위: 만원)



주: 자녀 1인당 지급금액임

출처: 저자 작성

제하고 차액이 존재할 경우 이를 환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제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환급형, 즉 남은 공제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2022년 지급되는(2021년 소득금액기준 산정) 근로장려금은 2019~2021년 적용제도에서 소득기준이 일괄 200만원 상향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수급 상한소득이 기존의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에서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러한 조정은 최대급여 지급 소득기준의 조정없이 이루어져,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수의 확대와 함께 점감률 하락을 야기하게 된다. 최대급여액은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으로 2019년(지급연도) 상향조정 이후 유지되고 있다.

자녀장려금은 2019년(지급연도)부터 자녀 1인당 지급금액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2,100만원(맞벌이가구 2,500만원)을 초과하면 감액지급하며 4,000만원 초과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즉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을 상당히 저소득계층으로 설정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는 지속적인 제도 확대로 크게 증가하여 왔으며 2020년 지급기준 420.1만가구에 달한다. 총지급액도 4.4조원에 이르렀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제도대상자들의 신청이 중요하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비 지급률(수급가구/신청가구)은 80%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85.6%까지 높아졌다. 적절한 정보제공과 수급자들의 제도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수급가구들의 평균수급액도 2020년 105.3만원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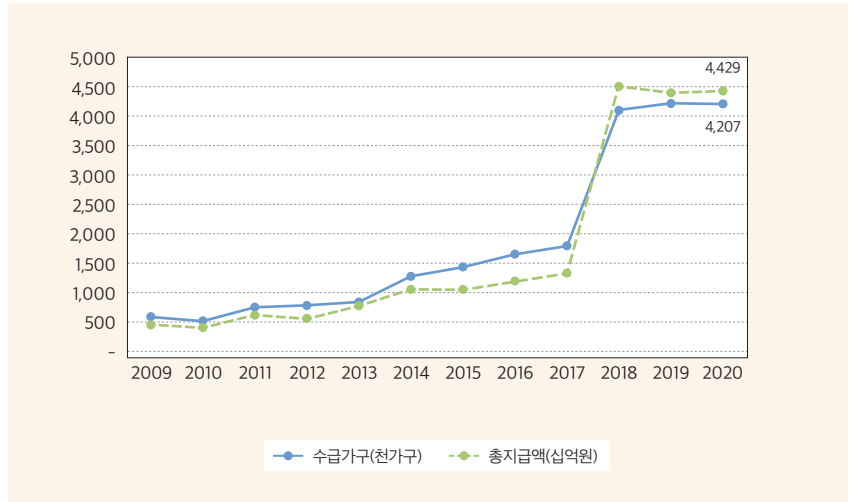
한편 자녀장려금 수급가구는 저출산과 중상위 소득가구 중심의 출산현상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4년 104.7만가구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에는 69.9만가구에 이르렀다. 총지급액은 감소추세 속에서 자녀당 지원금액이 증가(50만원 → 70만원)한 2018년에는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 2020년 총지급액은 6,017억원 수준이다. 자녀장려금 평균수급액 역시 2018년 단가 상향조정에 따라 증가하여 2020년 가구당 86.1만원 수준이며 신청 대비 지급률은 80~85%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는 지속적인 제도 확대로 크게 증가하여 2020년 기준으로 수급가구 420.1만가구, 총지급액은 4.4조원에 이르렀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비 지급률은 80%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85.6%까지 높아졌는데, 이는 적절한 정보제공과 수급자들의 제도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림 3] 근로장려금 총지급액, 수급가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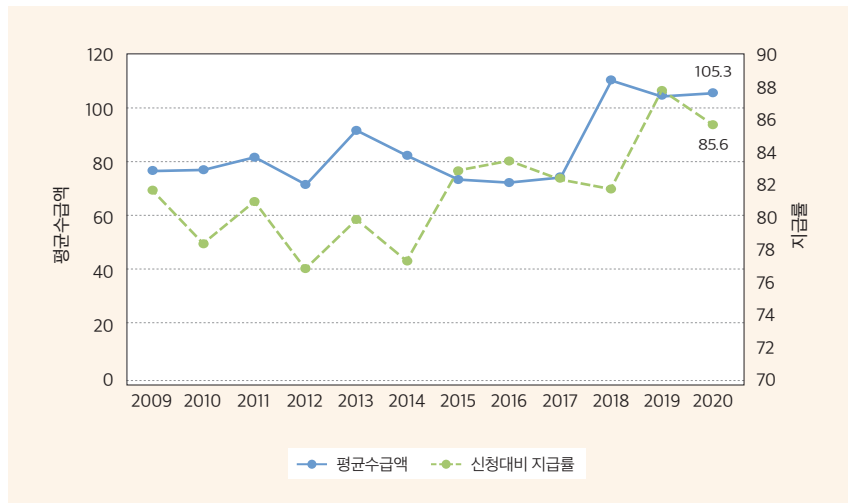
(단위: 천가구, 십억원)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검색일자: 2022. 3. 3.

[그림 4] 근로장려금 지급률, 평균수급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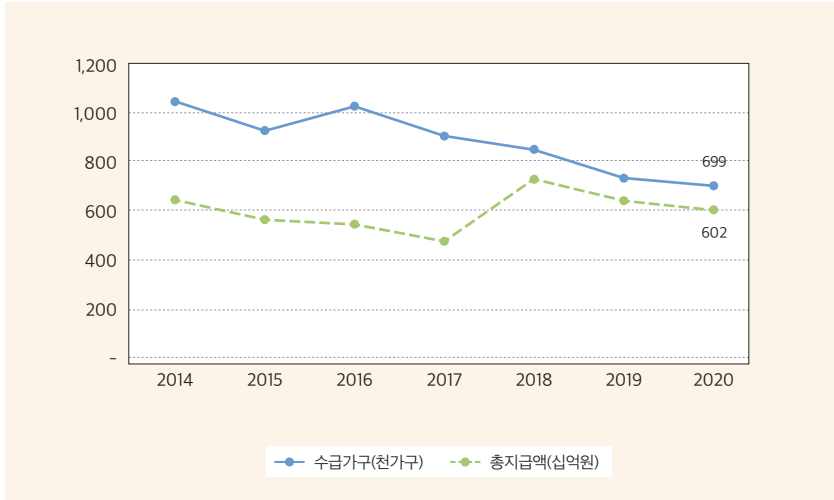
(단위: 만원, %)



주: 지급률은 신청가구 대비 수급가구의 비중, 평균수급액은 수급가구의 평균수급액임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검색일자: 2022. 3. 3.

[그림 5] 자녀장려금 총지급액, 수급가구 추이

(단위: 천가구,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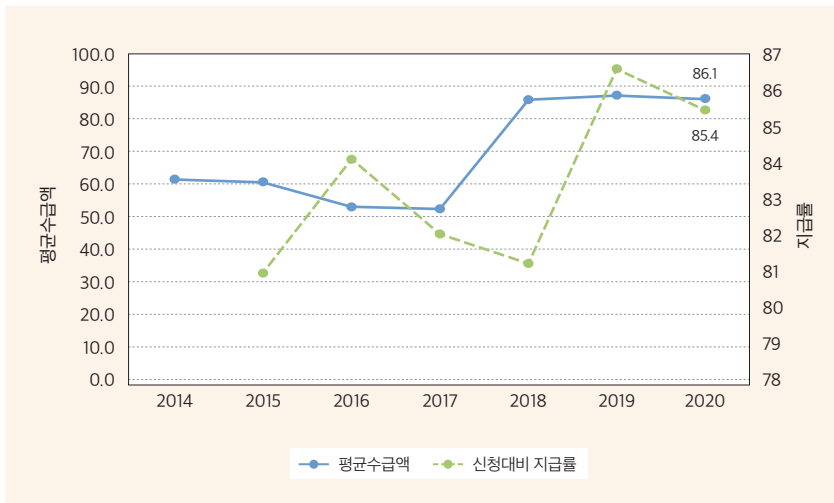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검색일자: 2022. 3. 3.

자녀장려금 수급가구는 저출산과 중상위소득가구 중심의 출산현상으로 꾸준히 감소하여 2014년 104.7만가구에서 2020년에는 69.9만가구에 이르렀다.

[그림 6] 자녀장려금 지급률, 평균수급액 추이

(단위: 만원, %)



주: 지급률은 신청가구 대비 수급가구의 비중, 평균수급액은 수급가구의 평균수급액임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검색일자: 2022. 3. 3.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률의 2019년  
추정 자료(17.6%)와  
국세청 자료(21.8%) 간  
차이는 가구구성 조사  
자료와 세무행정상  
자료의 차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장려금 수급을  
위한 사업소득의  
차이 등에 기인한다.

### Ⅲ. 형평성 분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형평성 분석은 4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가장 기본적인 소득수준에 따른 분석에 추가하여 가구구성(홀벌이/맞벌이)별, 연령별, 자녀 유무별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현 시점에서 활용가능한 최근 자료인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2020년 조사자료(2019년 경제상황)를 활용한다. 구체적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수급금액은 조사자료가 아니라 가구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제도요건을 적용하여 추정된 자료를 이용한다.<sup>4)</sup>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자료는 제도 분석에 필요한 장려금별 상세 내역을 제공하지 않고 수령 금액 집계만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사자료는 제도별 영향의 상세분석에 한계가 있다. 또한 2019년부터 시행된 근로소득자에 대한 반기별 장려금 지급도 조사자료 활용을 어렵게 한다. 반기별 지급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조사된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에 의한 연간 지급분과 2019년 상반기 소득에 기반한 반기분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도별 장려금 구분 과정이 필요하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 수급 추정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가구 비율은 2019년 기준 전체가구의 17.6%(2019)<sup>5)</sup>로 국세청 전수자료 결과 21.8%(2019)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급률 차이는 가구구성에 대한 조

<표 1>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률 비교

구분	국세청 자료 (천가구)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	
	2018	2019	설문자료(2018)	대상 추정 자료(2019)
대상 가구(A)	19,871	20,116	18,064	18,064
수급 가구(B)	4,106	4,390	3,898	3,391
평균수급액(만원)	106.2	101.7	140.5	138.7
수급률(B/A)	20.7%	21.8%	21.6%	17.6%

주: 1. 소득 귀속연도 기준

2. 국세청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수급률은 각 연도별로 비교하여야 함

3.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여부 조사는 수급시점(2019) 기준이므로 2018년 귀속소득에 의해 결정됨. 2019년 귀속소득 기준 장려금은 2020년 지급예정으로 조사자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019년 경제·사회상황을 바탕으로 추정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4) 엄밀히 조사자료는 2018년(전년) 소득자료에 기반한 2019년 장려금 수급자료이며 추정자료는 2019년 소득에 기반한 2020년 수급 추정자료이다.

5) 가구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수급률은 각각 20.8%(2018), 16.8%(2019)로 나타나,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1%p 정도 하락하나 큰 차이는 없다.

사자료와 세무행정상 자료의 차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장려금 수급을 위한 사업소득의 차이 등에 기인한다.

현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수급대상은 근로소득자와 함께 사업소득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도 포괄하고 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수준을 기존의 「소득세법」상 소득, 즉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이 아닌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산출 과정을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실제 제도운영에서 적용되는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소득환산액이 아니라 조사자료에서 나타나는 사업소득액을 사용하여 장려금 수급가구를 산정한다.<sup>6)</sup> 이러한 과정은 업종별 적용률과 소득률의 차이만큼 오차를 동반하게 된다. 이는 조사자료의 한계에서 나타나는 오차라 할 수 있다.

## 1. 소득재분배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을 위해 가구를 소득 5분위로 구분한다. 소득분위의 구분은 균등화 조정 경상소득 기준이다. 균등화는 가구 소득을 가구원 수 규모에 맞게 조정(즉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눔)하였음을 의미한다. 조정 경상소득이라 함은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금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이는 두 가지 제도의 효과 분석을 위한 것이다.

소득분위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소득수준은 소득분위 전체가구의 소득과 차이가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소득요건뿐만 아니라 재산요건 등을 만족하여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1분위를 제외하고는 소득분위별 장려금 수급가구의 경상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소득 1분위의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경상소득이 소득 1분위 전체 평균소득보다 10% 정도 높은 수준이다. 노동소득이 존재하여야 지원을 받는 제도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수급이 소득 5분위까지 발생하는 것은 제도의 수혜자를 부부소득 기준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부부 외에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소득분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가구를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제는 재산기준뿐이다. 청년가구 등 재산(2억원 초

**소득 1분위를 제외하고는  
소득분위별 장려금  
수급가구의 경상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6)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에는 사업소득의 원천이 되는 수입금액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으로 인해  
가구소득은 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분위별  
수급률을 살펴보면  
소득 1분위의 수급률이  
40.8%로 가장 높았고  
2분위도 유사한 수준인  
39.6%에 달하였다.

<표 2>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연소득 분포

(단위: 만원, 배)

소득분위	가구 경상소득(A)	수급가구 경상소득(B)	비율 (B/A)
1분위	1,091	1,199	1.10
2분위	2,598	2,282	0.88
3분위	4,429	4,214	0.95
4분위	6,758	6,667	0.99
5분위	13,074	9,342	0.71
전 체	5,895	2,064	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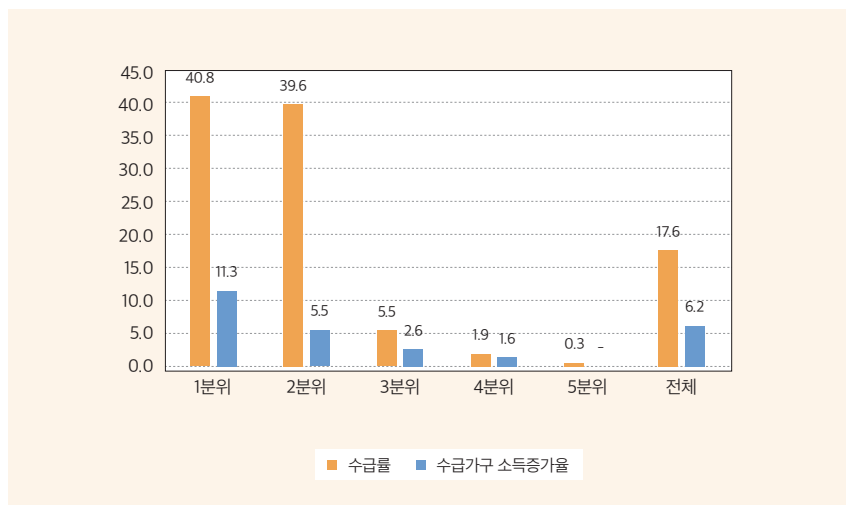
주: 1.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제외한 금액  
2. 소득분위는 가구규모로 조정된( $\sqrt{n}$ ) 균등화 가구 경상소득 기준  
출처: 저자 작성

과)을 축적하지 않은 고소득 가구는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률(수급가구/총가구)은 전체가구의 17.6%이며, 근로장려금으로 인해 가구소득은 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 수급률을 살펴보면 소득 1분위의 수급률이 40.8%로 가장 높았고 2분위도 유사한 수준인 39.6%에 달하였다. 소득획득이 근로장려금 지급의 전제조건이므로 1~2분위 가구의 40% 정도가 지급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의 경우에

[그림 7] 근로장려금의 재분배효과

(단위: %)



주: 수급률은 전체가구 중 수급가구의 비율  
출처: 저자 작성

도 0.3%(11가구)의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증가율은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가 1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가구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근로장려금 역시 소득증가에 따라 축소되기 때문이다.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약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가구에 집중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동일 소득분위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보인다. 이는 자녀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가구가 자녀를 출산하였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자녀양육비용 부담으로 노동시장 참가에 더욱 적극적이었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완화된다. 양육비용에 대한 체감부담이 줄어들고 자녀장려금 수급의 소득상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녀장려금의 수급률은 전체가구의 3.2% 수준이다. 소득분위별 수급률은 소득 1, 2분위에서 각각 5.7%, 9.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소득 1분위에 비해 소득 2분위에서 자녀장려금 수급률이 높은 것은 자녀 있는 가구의 분포비중이 높기 때문이다.<sup>7)</sup>

자녀장려금으로 인한 소득증가율, 즉 소득재분배효과는 전체적으로 3.4% 수준이며 소득이 낮은 소득 1분위에서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이 높아지는 2분위에서는 2.9%로 크게 낮아졌고 그 이상 소득계층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두 제도는 전체가구의 18.8%를 대상으로 평균소득의 6.4%를 지원하는 역할

<표 3>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연소득 분포

(단위: 만원, 배)

소득분위 <sup>1)</sup>	가구 경상소득(A) <sup>2)</sup>	유자녀가구 경상소득	수급가구 경상소득(B)	비율 (B/A)
1분위	1,091	1,727	1,717	1.57
2분위	2,598	3,472	3,142	1.21
3분위	4,429	5,379	3,953	0.89
4분위	6,758	7,775	8,934 <sup>3)</sup>	1.32
5분위	13,074	14,749	n.a	n.a
전 체	5,895	7,874	2,752	0.47

주: 1) 소득분위는 가구규모로 조정된( $\sqrt{n}$ ) 균등화 가구 경상소득 기준

2)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제외한 금액

3) 4분위 수급가구는 4가구로 조세와 패널조사상 가구구성원 차이 등으로 상당히 높은 소득수준의 수급가구가 존재하는 이상치(outlier)에 가까움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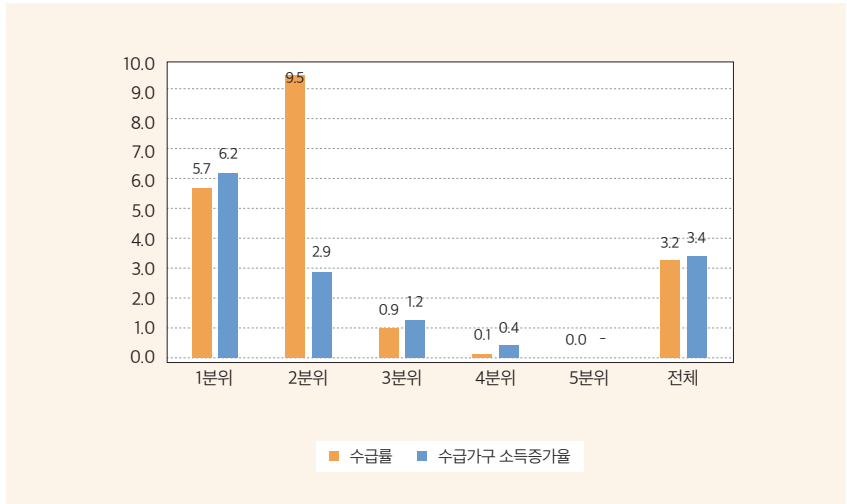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소득은 동일 소득분위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소득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완화된다. 이는 양육비용에 대한 체감부담이 줄어들고 자녀장려금 수급의 소득상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7) 전체 유자녀가구 비율은 23.0%이며 분위별로는 각각 7.7% (1분위), 19.3%(2분위), 27.8% (3분위), 30.3%(4분위), 29.7% (5분위)임.

자녀장려금으로 인한  
소득재분배효과는  
전체 3.4% 수준이며  
소득이 낮은  
소득 1분위에서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이 높아지는  
2분위에서는 2.9%로  
크게 낮아졌고 그 이상  
소득계층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림 8] 자녀장려금의 재분배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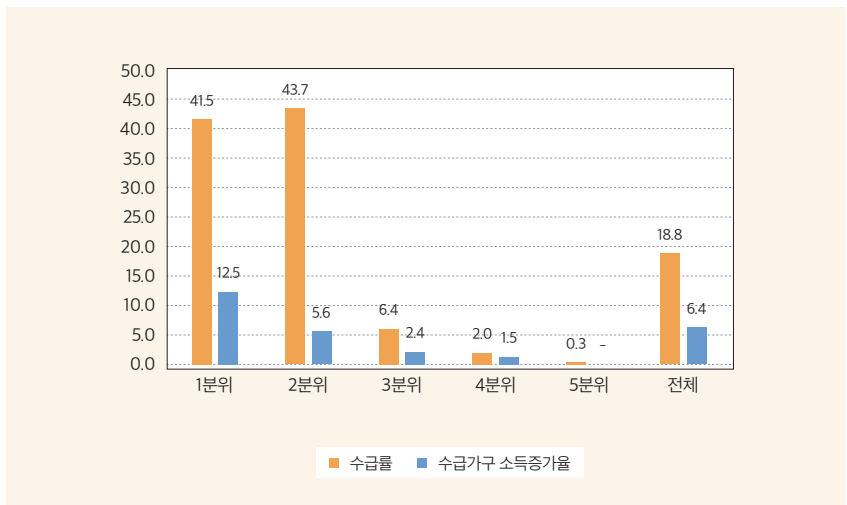
(단위: %)



주: 수급률은 전체가구 중 수급가구의 비율  
출처: 저자 작성

[그림 9] 근로·자녀장려금의 분위별 재분배효과

(단위: %)



주: 수급률은 전체가구 중 수급가구의 비율  
출처: 저자 작성

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가구에 집중된 제도 설계로 소득 1, 2분위 가구의 40% 이상을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 가구의 수급률은 제도의 소득상한으로 인해 6.4%로 크게 낮아진다. 두 제도로 인한 수급가구의 소득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 2분위가가 각각 12.5%, 5.6%로 높은 수준이며 중산층 이상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소득지원 제도로서 중하위 소득층에 잘 조준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하위 가구 간 소득격차, 소득분배지수 등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인 지표는 소득 5분위배율과 지니계수이다. 소득 5분위배율은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평균소득 비율로 소득격차를 나타낸다. 동 지표는 1 이상의 값을 가지며 작은 값을 가질수록 상하위 가구의 소득격차가 작음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전체 사회의 소득불균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수치가 낮을수록 소득이 균등하게 분포함을 의미한다. 즉 0은 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할 때, 1은 사회전체 소득이 1인에게 귀속될 때의 값이다. 먼저 근로장려금제도의 운영결과 소득 5분위배율(소득 5분위 평균 소득/소득 1분위 평균소득)은 기존 12.0배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으로 인해 0.6배 낮아진 11.4배로 개선된다. 이는 두 분위 간 소득격차를 약 4.8% 개선시키는 효과이다. 자녀장려금은 상대적으로 작은 지출규모로 인해 5분위배율을 0.1배 하락, 약 0.7% 개선시킨다. 두 제도의 운용으로 인해 종합적으로 5분위배율은 5.4%(0.7배)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구성원들의 소득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상대적으로 그 개선율이 낮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중하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은 지니계수를 0.76% 개선(즉 낮춤)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녀장려금 운영으로 인한 소득분배의 개선은 중하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의 특성상 상하위 계층 간 소득격차 축소에 더 크게 기여한다.**

**<표 4> 5분위배율 및 지니계수 변화**

구분	5분위배율(배)	변화폭(변화율)	지니계수	변화폭(변화율)
제도 적용 전 경상소득	12.0	-	0.4353	
근로장려금	11.4	-0.6(-4.8%)	0.4320	-0.0033(-0.76%)
자녀장려금	11.9	-0.1(-0.7%)	0.4349	-0.0004(-0.09%)
근로 및 자녀장려금	11.3	-0.7(-5.4%)	0.4315	-0.0038(-0.87%)

주: 5분위배율은 (상위 20%가구의 평균소득/하위 20%가구의 평균소득)이며 지니계수는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출처: 저자 작성

개인 2인이 단독가구로  
존재할 때와 혼인하여  
맞벌이가구로 존재할 때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수급가능 상한소득도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원으로  
중립적 관점의 소득상한  
4,0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며 자녀장려금은 상대적으로 작은 0.09% 개선효과를 나타낸다. 두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결합효과는 지니계수의 0.87% 개선이다.

두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소득분배의 개선은 중하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의 특성상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 축소에 더 크게 기여한다.

## 2. 가구유형별 효과

근로장려금제도는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하여 최대급여와 대상 소득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정의된다. 여기서 직계존속 개인의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정의된다.

이러한 가구유형의 구분은 필요소득의 격차, 가구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제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부양의 책임이 발생하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사실상 1인가구를 의미한다. 홑벌이가구는 직계존비속 중 부양가족이 있는 다인 가구이다. 맞벌이가구는 2명의 소득자가 존재하는 다인가구로서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수준이 높은 가구라 할 수 있다.

가구유형별 제도 구분에서 가장 먼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혼인에 대한 중립성이다(<표 5> 참조). 2020년 지급기준 가구유형별 수급가능 소득상한은 단독가구 2,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이며 최대급여액은 각각 150만원, 300만원이다. 개인 2인이 단독가구로 존재할 때와 혼인하여 맞벌이가구로 존재할 때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수급가능 상한소득도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원으로 중립적 관점의 소득상한 4,0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급여액 측면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한다. 최대급여액은 맞벌이가구 300만원으로 단독가구 150만원의 2배로 혼인에 중립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최대급여액을 수급할 수 있는 소득상한액은 맞벌이가구 1,700만원으로 단독가구 1,400만원의 1.21배에 불과하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개별 근로자들에 비해 혼인한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근로장려금제도의 혼인 중립성(2020)

(단위: 만원, 배)

구분	단독가구(A)	맞벌이가구(B)	B/A
수급 상한소득	2,000	3,600	1.80
최대급여액	150	300	2.00
최대급여 수급 상한소득	1,400	1,700	1.21

출처: 저자 작성

이러한 맞벌이가구에 대한 낮은 지원수준은 가구 기준, 중하위 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 목적에서 유래한다. 한 가구 내 두 소득자에 필요한 소득수준이 독립적 개별 근로자 2인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근로빈곤층, 즉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혼인 중립성에 대한 고려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장려금제도가 확대되어 보다 일반적인 소득지원제도로 기능할 경우에는 혼인 중립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가구유형별 소득수준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순으로 높아진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가구는 동일 유형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소득수준은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이는 자녀양육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이 고려된 노동시장 참여행태 또는 자녀출산 결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6> 근로·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소득수준

(단위: 만원, 배)

구분		전체가구	근로장려금 수급	자녀장려금 수급	근로 또는 자녀 장려금 수급
평균소득	단독가구	2,752	1,587	0	1,587
	홑벌이가구	5,622	2,301	2,580	2,440
	맞벌이가구	9,022	3,173	3,219	3,289
	전체	5,895	2,064	2,752	2,168
수급가구 소득비율	단독가구	1.00	0.58	-	0.58
	홑벌이가구	1.00	0.41	0.46	0.43
	맞벌이가구	1.00	0.35	0.36	0.36
	전체	1.00	0.35	0.47	0.37

주: 수급가구 소득비율은 가구유형별 전체가구 소득에 대한 장려금 수급가구 소득의 비율임

출처: 저자 작성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소득수준은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이는 자녀양육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이 고려된 노동시장 참여행태 또는 자녀출산 결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률이  
27.0%에 달하지만  
맞벌이가구는 6.5%에  
그치는 등 출산율  
관점에서 의미를 지니는  
맞벌이가구 지원은  
제한적인 소득상한  
운영으로 한계가 있다.**

수급가구의 가구유형별 소득분포에서의 위치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낮아진다.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증가가 동일 가구유형의 평균적 소득증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제도에 내재된 소득상한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전체가구의 유형별 구성(그림 10) 참조)을 살펴보면, 홑벌이가구가 3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독가구 32.5%, 맞벌이가구 29.3% 순이다.

출산율 관점에서 의미를 지니는 맞벌이가구 지원은 제한적인 소득상한 운영으로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률은 단독가구의 경우 27.0%에 달하지만 맞벌이가구는 6.5%에 그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으로 인해 맞벌이가구의 지급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홑벌이가구의 지급률은 18.2%로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상한 결정에서 필요소득적 측면의 고려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소득증가율은 상대적으로 그 격차가 작다. 근로장려금 수급 단독가구의 소득증가율은 6.0%로 수급 맞벌이가구의 소득증가율 5.1%와 큰 격차를 보이지는 않는다. 홑벌이가구의 소득증가율이 6.9%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중하위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녀양육비용에 대한 고려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제도이다. 수급을 위한 소득상한 역시 4천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의 3,200만원(홑벌이가구, 2022년), 3,800만원(맞벌이가구, 2022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가구유형에 따른 수급 소득상한의 차등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자녀양육의 비용부담을 주로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자녀양육의 요건 중 하나인 시간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할 수 있다. 맞벌이로 가정 양육시간이 부족한 가구의 경우, 부족한 양육시간에 대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상한을 적용하는 것은 맞벌이가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홑벌이가구의 지급률은 6.5%로 맞벌이가구 지급률 2.6%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가구 소득활동자 수에 관계없이 수급 상한소득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맞벌이가구의 지급률은 홑벌이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수급가구의 소득증가율도 소득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증가율이 3.6%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맞벌이가구 2.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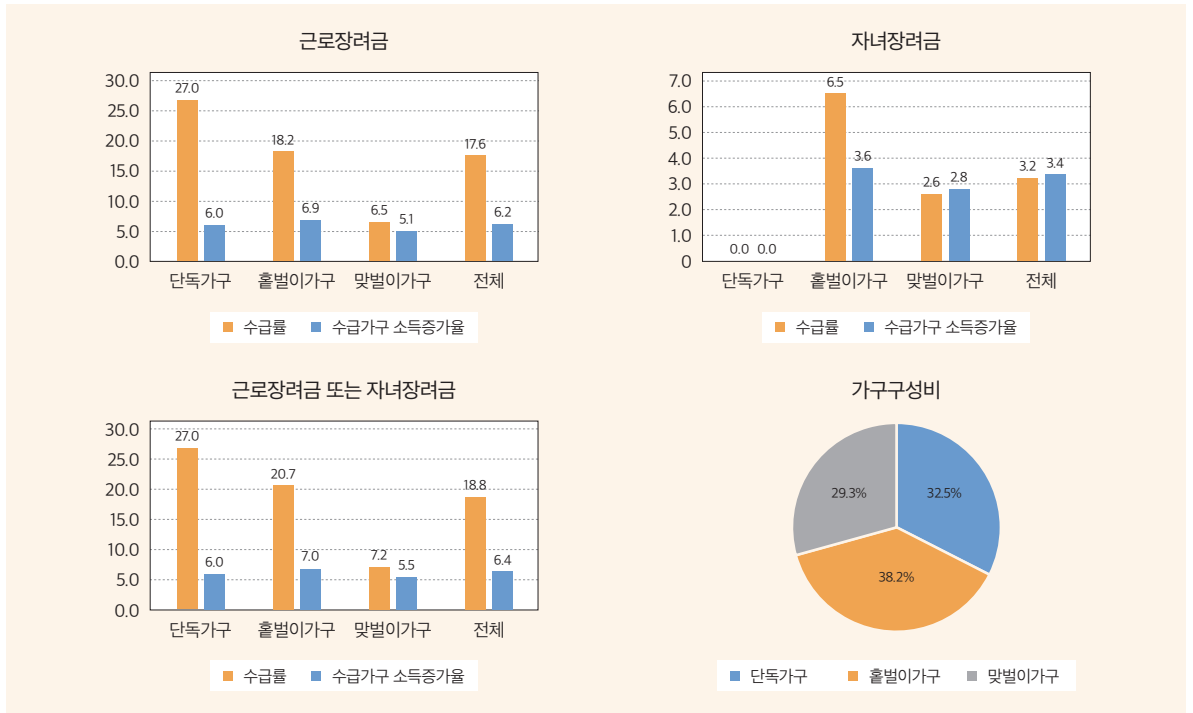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규모가 크고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와의 중복성도 상당히 때문이다. 실제 자녀장려금 지급률은 3.2% 수준이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의 지급률은 근로장려금 지급률과 1.2%p 차이를 보일 뿐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혜계층의 상당한 중복성은 두 제도의 분리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현재와 같은 수혜대상 결정방식은 그 타당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별도 자녀장려금제도 운영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아동빈곤율 등 차별적인 목표에 기반한 제도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자녀장려금 제도에서 맞벌이가구에 대한 추가적 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보육료 지원(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가구 노동시장 참여상황에 따른 왜곡을 줄이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혜계층의  
상당한 중복성은  
두 제도의 분리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림 10] 가구유형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효과

(단위: %)



주: 수급률은 유형별 전체 가구 중 수급가구의 비율

출처: 저자 작성

소득 1분위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이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수급률과 소득증가율을  
상대적으로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녀장려금제도는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불이익을 줄여주는 노력이 중요하다.

소득분위별 가구유형별 재분배효과를 살펴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1분위에서는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수급률과 소득증가율을 상대적으로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률은 1분위는 70.9%에 달하며 2분위에서도 43.1% 수준에 이른다. 수급가구 소득증가율도 각각 13.0%, 5.3%로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도 맞벌이가구의 수급률이 홀벌이가구의 수급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가구 자녀들이 맞벌이가구에서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표 7> 소득분위별·장려금별 재분배 효과

(단위: %)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률	수급가구 소득증가율	수급률	수급가구 소득증가율	수급률	수급가구 소득증가율	
1분위	단독가구	37.3	11.2	n.a	n.a	37.3	11.2
	홀벌이가구	45.0	11.2	13.8	6.3	47.1	12.9
	맞벌이가구	70.9	13.0	39.5	5.6	70.9	16.9
2분위	단독가구	45.3	4.8	n.a	n.a	45.3	4.8
	홀벌이가구	34.3	6.2	14.1	3.0	41.2	6.0
	맞벌이가구	43.1	5.3	20.4	2.6	49.0	5.9
3분위	단독가구	6.3	1.9	n.a	n.a	6.3	1.9
	홀벌이가구	4.1	2.7	1.5	1.4	5.4	2.5
	맞벌이가구	6.8	3.0	1.1	1.0	7.7	2.7
4분위	단독가구	4.9	1.1	n.a	n.a	4.9	1.1
	홀벌이가구	1.5	2.4	0.2	0.6	1.8	2.1
	맞벌이가구	0.8	1.4	0.1	0.3	0.9	1.2
5분위	단독가구	1.2	0.8	n.a	n.a	1.2	0.8
	홀벌이가구	0.4	1.8	0.0	0.0	0.4	1.8
	맞벌이가구	0.0	1.3	0.0	0.0	0.0	1.3
전체가구	17.6	6.2	3.2	3.4	18.8	6.4	

주: 수급률은 유형별 전체가구 중 수급가구의 비율

출처: 저자 작성

액급여에 가까운 자녀장려금으로 인해 수급가구 소득증가율은 소득수준이 높은 맞벌이가구에서 낮은 수준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제도는 소득 하위 1, 2분위에 대해 가구 유형에 관계없이 40% 이상 가구에 대해 소득지원을 하고 있다. 1분위 단독가구의 경우 수급률이 37.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경제활동참가가 어려운 고령가구의 존재에 따른 것이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제도로서 포괄성이나 소득증가율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 3. 연령별 효과

가구주 연령에 따른 수급가구 분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제도 운영 개선과정에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제도 도입 목적, 즉 근로유인 제공과 소득지원에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소득수준을 가구주 연령대에 따라 구분하면 동일연령대 평균소득 대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주의 상대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먼저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3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낮은 소득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연령대별 수급가구주의 상대소득수준이 고령가구주에서 높다는 것이다. 즉 20~60세 미만 수급 가구주의 소득수준은 동 연령대 전체 가구주 소득의 30~31%에 머무르는 반면 60세 이상 수급가구주의 상대소득 수준은 49%에 이른다. 근로유인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근로가능연령대 가구주에게는 상대적으로 제약적인 소득수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도 유사한데, 60세 이상 가구주의 동일연령대 평균소득 대비 상대소득이 다른 연령대 가구주에게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평균소득이 30세~60세 미만 가구주에게 비해 절대적인 소득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급가구 수가 12가구로 매우 작아 일반적 상황으로 볼 수 없다.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구성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가 전체의 45.3%로 가장 많고 40세 이상 60세 미만 가구주 가구가 42.0%를 차지하고 있

**연령대별 수급가구주의 상대소득수준이 고령가구주에서 높은 점은 근로·자녀장려금이 근로유인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근로가능연령대 가구주에게는 상대적으로 제약적인 소득수준을 적용함을 보여준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양육과 연관성이  
 높은 20세 이상  
 4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수급률은 7.3%로,  
 양육 부담시기 가구의  
 자녀장려금 수급률이  
 낮은 것은 자녀장려금이  
 매우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8> 근로·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소득수준

(단위: 만원, 배)

구분		전체가구	근로장려금 수급	자녀장려금 수급	근로 또는 자녀 장려금 수급
평균소득	20~40세 미만	5,904	1,838	2,700	2,097
	40~60세 미만	7,563	2,288	2,763	2,445
	60세 이상	3,964	1,951	3,012 <sup>1)</sup>	1,958
	전체	5,895	2,064	2,752	2,168
수급가구 소득비율(배) <sup>2)</sup>	20~40세 미만	1.00	0.31	0.46	0.36
	40~60세 미만	1.00	0.30	0.37	0.32
	60세 이상	1.00	0.49	0.76	0.49
	전체	1.00	0.35	0.47	0.37

주: 1) 수급가구 수 12가구로 매우 작아 이상치(outlier)

2) 수급가구 소득비율은 가구유형별 전체가구 소득에 대한 장려금 수급가구 소득의 비율임

출처: 저자 작성

다([그림 11] 참조). 이러한 가구주 연령대별 구성은 근로장려금의 도입 목적, 즉 근로장려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쉽지 않은 여건임을 보여준다. 오히려 적절한 정책 개입이 없다면 소득보전의 목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근로장려금의 가구주 연령별 수급률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수급률이 21.9%로 가장 높고, 근로가능연령 가구주 가구의 수급률은 각각 14.7% (20~40세), 13.9%(40~60세)에 머무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가구인 고령 가구 중심의 수급구조를 보인다. 근로장려금이 고령가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였을 수도 있지만 제도의 주된 목적은 아닐 것이다. 추가적인 제도개선 없이는 근로장려금의 주된 역할이 근로와의 연계성이 낮은 고령가구의 소득보전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급가구의 소득증가율은 가구주 연령에 따라 큰 변동을 보이지는 않는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자녀양육과 연관성이 높은 20세 이상 4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수급률이 7.3%로 가장 높다. 그 이상 연령 가구주 가구의 수급률은 각각 5.4%(40세 이상 60세 미만), 0.1%(60세 이상)로 낮은 수준이다. 양육 부담시기 가구의 자녀장려금 수급률이 낮은 것은 자녀장려금이 매우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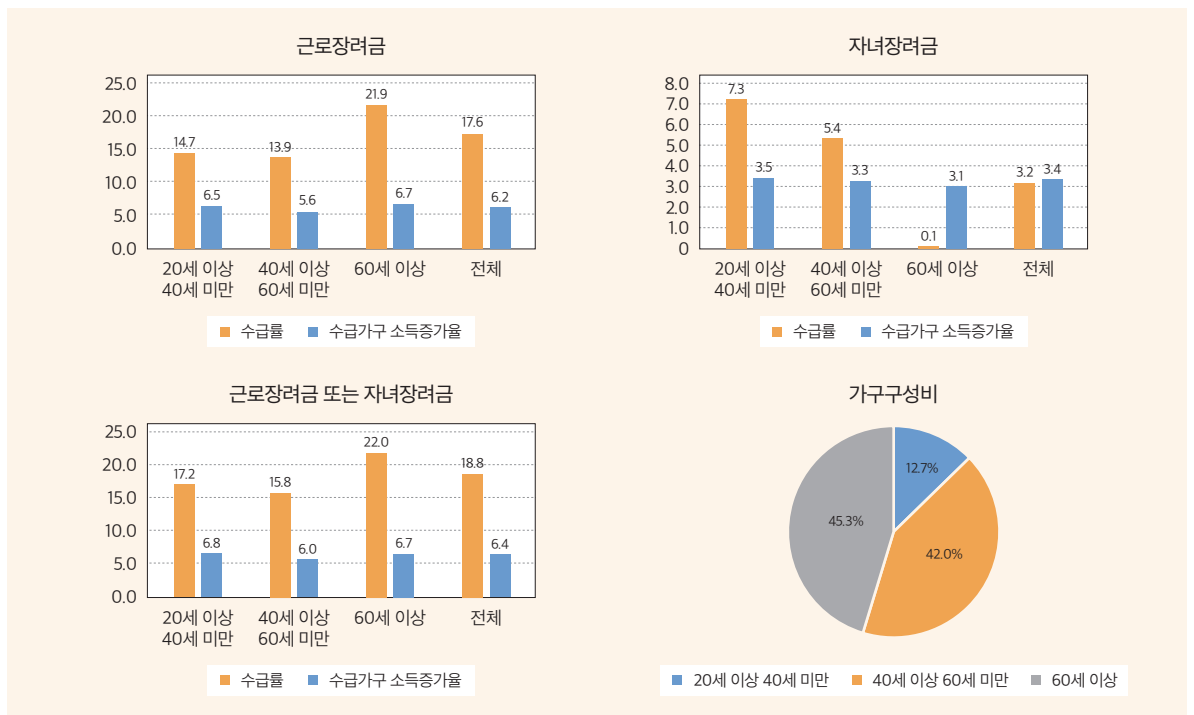
소득분위와 가구주 연령별 수급구조를 살펴보면 소득 1, 2분위의 저소득층에서 근로가능연령(20~60세) 가구주 가구의 수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9> 참조). 소득 1분위의 경우 20세 이상 4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률은 72.3%에 달한다. 그렇지만 소득 1분위에 속한 20세 이상 4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비중(전체 가구의 1.1%)이 작아 전체 수급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반면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수급률은 소득 1, 2분위에서 각각 33.1%, 37.9%로 나타나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동 분위 소속 가구 숫자가 전체 가구의 25.9% 수준으로 매우 커 전체 수급가구 규모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다.

자녀장려금 수급률은 양육부담이 집중되는 20~60세 가구 중 소득 1, 2분위에서 20% 내외 수준을 보여준다. 전체가구 중 수급률 3.2%로 매우 낮은 가운데 저

**고령가구에 집중된 근로장려금 수급구조는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근로장려와 소득지원이라는 제도 도입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조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 가구주 연령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효과

(단위: %)



주: 수급률은 각 연령대별 전체가구 중 수급가구의 비율  
출처: 저자 작성

미성년자인 부양자녀의 존재는 정부의 소득지원정책에서 주된 고려요인으로, 두 장려금 제도 중 자녀장려금제도는 이러한 목적의 소득지원정책이라 할 수 있다.

<표 9> 가구주 연령별 장려금별 재분배 효과

(단위: %)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률	수급가구 소득증가율	수급률	수급가구 소득증가율	수급률	수급가구 소득증가율
1분위	20~40세	72.3	13.5	27.2	6.5	74.3	16.5
	40~60세	62.2	12.2	21.7	6.0	65.1	14.3
	60세 이상	33.1	10.3	0.1	6.8	33.2	10.4
2분위	20~40세	42.4	4.2	24.8	2.9	53.7	4.6
	40~60세	41.3	4.6	18.5	2.9	49.1	5.0
	60세 이상	37.9	6.8	0.4	2.2	38.1	6.7
3분위	20~40세	1.7	1.1	1.7	1.0	3.2	1.1
	40~60세	5.4	2.2	1.5	1.3	6.8	2.0
	60세 이상	7.2	3.1	0.0	n.a	7.2	3.1
4분위	20~40세	0.7	0.4	0.0	n.a	0.7	0.4
	40~60세	1.3	1.2	0.2	0.4	1.6	1.0
	60세 이상	3.4	1.9	0.0	n.a	3.4	1.9
5분위	20~40세	0.2	1.2	0.0	n.a	0.2	1.2
	40~60세	0.1	0.9	0.0	n.a	0.1	0.9
	60세 이상	0.8	1.5	0.0	n.a	0.8	1.5
전체가구		17.6	6.2	3.2	3.4	18.8	6.4

주: 수급률은 각 연령대별 전체가구 중 수급가구의 비율  
출처: 저자 작성

소득가구에 집중된 지원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령가구에 집중된 근로장려금 수급구조는 근로장려금의 도입 목적 중 노동 시장 참여 확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근로장려와 소득지원이라는 제도 도입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조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4. 부양자녀 유무별 효과

미성년자인 부양자녀의 존재는 정부의 소득지원정책에서 주된 고려요인이다. 자녀들을 빈곤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가구의

<표 10> 근로·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소득수준

(단위: 만원, 배)

구분		전체가구	근로장려금 수급	자녀장려금 수급	근로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
평균소득	무자녀	5,080	2,012	n.a	2,012
	유자녀	8,060	2,363	2,752	2,761
	전체	5,895	2,064	2,752	2,168
수급가구 소득비율	무자녀	1.00	0.40	n.a	0.40
	유자녀	1.00	0.29	0.34	0.34
	전체	1.00	0.35	0.47	0.37

주: 수급가구 소득비율은 유형별 전체가구 소득에 대한 장려금 수급가구 소득의 비율임  
출처: 저자 작성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평균소득은 전체 유자녀가구 평균소득의 34% 수준으로, 무자녀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경우보다 높으나 무자녀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인 40% 수준 보다는 낮다.

자녀양육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자녀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두 장려금 제도 중 자녀장려금제도는 이러한 목적의 소득지원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역시 노동시장 참여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유자녀가구에 미치는 영향도 의미있는 이차적 효과이다.

자녀의 존재 유무에 따라 가구소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유자녀가구의 소득은 연 8,060만원으로 무자녀가구 평균 5,080만원보다 약 60% 높은 수준이다. 상당한 소득의 확보가 출산 또는 자녀양육의 필요조건으로 추정된다.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유자녀가구의 소득수준은 2,363만원으로 무자녀가구 2,012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그 격차는 17%로 크게 줄어들었다. 근로장려금 수급 유자녀가구의 소득은 전체 유자녀가구 평균소득의 29% 수준으로 포괄범위가 좁다. 근로장려금 수급 무자녀가구의 평균소득이 전체 무자녀가구 평균소득의 40% 수준임을 감안하면 유자녀가구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녀장려금제도는 상대적으로 개선된 결과를 보인다.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평균소득은 전체 유자녀가구 평균소득의 34% 수준으로 근로장려금의 경우보다 높다. 그러나 무자녀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인 40% 수준보다는 낮다.

자녀의 존재 유무에 따라 전체가구를 구분하면 무자녀가구가 전체의 77.0%로

**근로장려금의 경우  
무자녀가구 수급률은  
20.1%로 상당한  
수준이나 유자녀가구는  
9.2%로 상당히  
낮은 점은 동일한  
소득기준의 적용과  
유자녀가구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에 따른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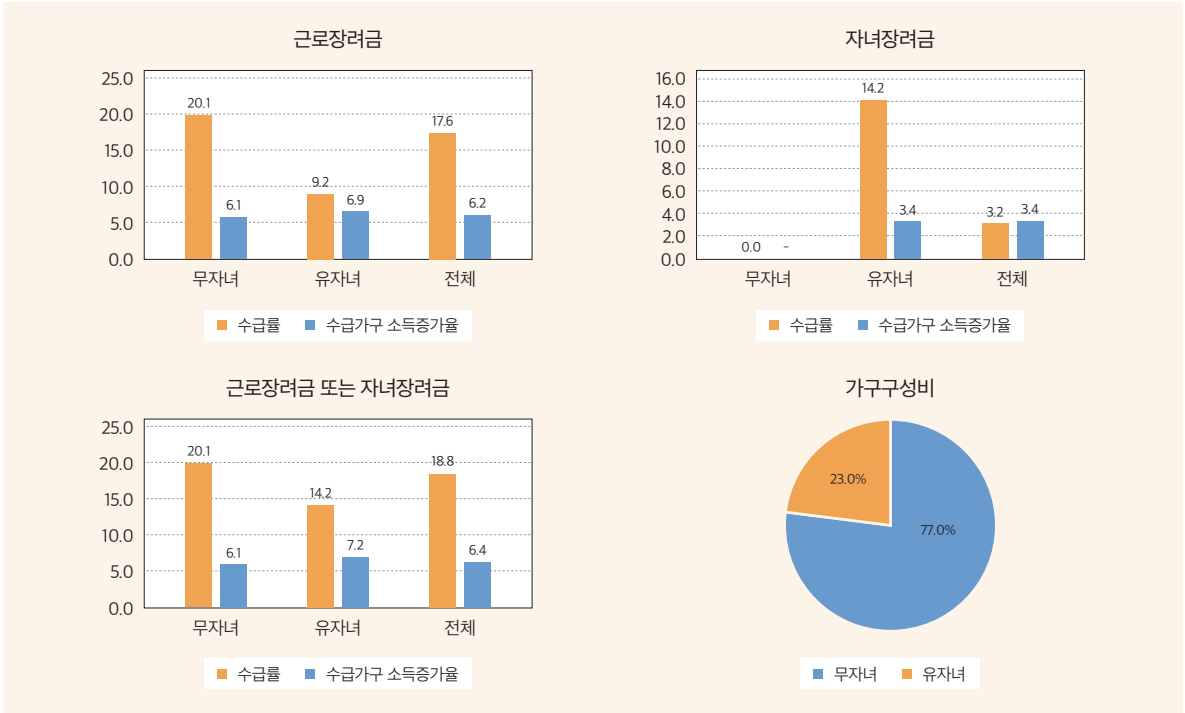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12) 참조). 자녀 유무에 따라 두 장려금의 수급률 등도 차이를 보인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무자녀가구 수급률은 20.1%로 상당한 수준이나 유자녀가구의 경우에는 9.2%로 상당히 낮다. 동일한 소득기준의 적용과 유자녀가구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에 따른 결과이다. 수급가구의 소득수준 격차가 크지 않으므로 인해 수급가구의 소득증가율은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다.

자녀장려금의 수급률은 14.2%로 저소득 유자녀가구의 지원제도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득증가율은 3.4%에 그치고 있다.

소득분위별 자녀 유무에 따른 수급상황은 유자녀 저소득가구의 수급률이 높게 나타난다(<표 11> 참조). 저소득 유자녀가구 규모가 크지 않은 소득 1분위의 수급률은 근로장려금 65.0%, 자녀장려금 74.4% 수준이다. 자녀장려금에 비해

[그림 12] 자녀 유무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효과

(단위: %)



주: 수급률은 유형별 전체가구 중 수급가구의 비율

출처: 저자 작성

<표 11> 자녀유무별·장려금별 재분배 효과

(단위: %)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률	수급가구 소득증가율	수급률	수급가구 소득증가율	수급률	수급가구 소득증가율
1분위	무자녀	38.7	11.1	0.0	n.a	38.7	11.1
	유자녀	65.0	12.1	74.4	6.2	74.4	16.8
2분위	무자녀	42.4	5.9	0.0	n.a	42.4	5.9
	유자녀	27.9	4.3	49.3	2.9	49.3	5.1
3분위	무자녀	7.4	2.6	0.0	n.a	7.4	2.6
	유자녀	0.6	3.0	3.4	1.2	3.6	1.7
4분위	무자녀	2.7	1.6	0.0	n.a	2.7	1.6
	유자녀	0.0	n.a	0.4	0.4	0.4	0.4
5분위	무자녀	0.4	1.2	0.0	n.a	0.4	1.2
	유자녀	0.0	n.a	0.0	n.a	0.0	n.a
전체가구		17.6	6.2	3.2	3.4	18.8	6.4

주: 수급률은 유형별 전체가구 중 수급가구의 비율  
출처: 저자 작성

자녀 유무에 따라  
두 장려금의 수급률도  
차이를 보이는데,  
자녀장려금에 비해  
소득상한이 낮은  
근로장려금은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수급률이  
급격히 낮아진다.

소득상한이 낮은 근로장려금 수급률은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급격히 낮아진다. 2분위 유자녀 가구의 수급률은 27.9%, 3분위 유자녀가구 수급률은 0.6% 수준이다. 소득상한이 높은 자녀장려금의 수급률은 더 높은 소득분위에서 수급률이 크게 하락한다. 소득 2분위 수급률 49.3%에서 소득 3분위에서는 3.4%로 하락한다. 소득 1, 2분위의 높은 수급률에도 불구하고 분포효과에 의해 전체 유자녀가구의 자녀장려금 수급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4.2%에 불과하다. 출산 형태 또는 출산가구의 분포 등을 감안한 자녀장려금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

#### IV. 맺음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제도는 2018년 대폭적인 확대로 연간 총지출 규모가 약 5조원에 이르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근로장려와 소득지원 목적으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효과를 다양한  
사회변수의 관점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의  
소득수준 중심의  
형평성 논의가  
간과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로 도입된 동 제도들의 효과성 분석은 주로 근로장려, 즉 노동시장 측면에 중점을 두어왔다. 단순한 복지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근로장려를 위한 제도로 설계·도입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소득지원효과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미흡했다. 소득지원 효과 연구는 단순한 소득재분배효과를 추정하는 정도에 그쳤다. 본고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지원효과를 기존의 소득계층뿐만 아니라 가구유형, 연령, 자녀 유무 등 다양한 관점으로 확장하였다. 제도의 효과분석은 2019년 기준으로 직접적 지원효과를 대상으로 하였고, 노동행태 변화를 통한 간접적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다.


전통적인 소득계층 간 재분배 관점에서 근로장려금은 소득 1, 2분위에 집중된 효과를 보이며 이를 통해 소득 5분위배율을 4.8% 개선시킨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자녀 있는 가구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므로 저소득가구를 중심으로 설계하였지만 소득 2분위의 수급률이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 수준이 조금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 5분위배율은 0.7% 개선에 그친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와 맞벌이가구의 대상 선정기준에서 혼인 페널티가 존재한다. 즉 지원대상의 소득수준 설정에서 단독가구 2인이 동일 소득에서 혼인하여 맞벌이가구가 되면 장려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혼인이 출산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제도 확대 시 혼인 페널티 규모에 대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도 설계를 반영하여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급률을 보인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수급률이 두 제도를 합치더라도 7.2%에 불과하다. 자녀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수급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기준으로 인하여 홑벌이가구의 6.5%에 비해 크게 낮은 2.6%에 그치고 있다. 자녀양육비 부담을 고려한 설계이지만 자녀양육의 요건 중 하나인 시간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맞벌이로 가정 양육시간이 부족한 가구의 경우, 부족한 양육시간에 대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상한을 적용하는 것은 맞벌이가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주 연령별 수급률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수급률이 21.9%로 가장 높고, 근로가능연령 가구주 가구의 수급률은 각각 14.7%(20~40세), 13.9%(40~60세)에 머무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가구인

고령가구 중심의 수급구조를 보인다. 근로장려금의 목적이 고령가구의 노동시장 참여촉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와의 연계성이 낮은 고령가구의 높은 수급률은 개선 필요성이 높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자녀양육과 연관성이 높은 20세 이상 4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수급률이 7.3%로 가장 높다. 그 이상 연령 가구주 가구의 수급률은 각각 5.4%(40세 이상 60세 미만), 0.1%(60세 이상)로 낮은 수준이다. 양육 부담시기 가구의 자녀장려금 수급률이 낮은 것은 자녀장려금이 매우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중복성이 매우 높다. 자녀장려금의 대상을 지나치게 저소득층으로 한정함으로써 제도 분리운영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불이익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기존의 보육료지원(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의 재정제도들과 상관관계 속에서 분리운영에 대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두 제도의 형평성을 위해  
근본적으로 기존의  
보육료지원(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의  
재정제도들과  
상관관계 속에서  
분리운영에 대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2020.

김문정·김빛마로, 『2019년 확대개편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신우리·송헌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고려한 소득재분배 효과 추정」, 『세무와 회계연구』, 제7권 2호, 2018, pp. 259~290.

임병인,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재분배효과」, 『Journal of Korean National Economy』, 제30권 2호, 2012, pp. 147~168.

전병목·신상화,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서 EITC 역할 재정립을 위한 개편방안 연구』,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전병목·장용성, 『조세·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5.

한종석·장용성·김선빈, 「근로장려세제의 거시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의 분석』, 제25권 2호, 2019, pp. 1~40.

홍우형, 「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의 세수귀착효과 및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재정정책논집』, 제21권 3호, 2019, pp. 3~33.

\_\_\_\_\_, 「근로장려세제가 부부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분석: 근로장려금 산정방식 변화에 따른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제14권 4호, 2021, pp. 77~106.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검색일자: 2022. 3.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2. 3. 3.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0년 원자료



## | 정책연구 |



### ■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 방향

김현아·전병목·윤성주·오종현·송경호

### ■ 사회보험료 통합 부과·징수 방안에 관한 연구

최인혁·정다운·김진수

### ■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장우현·김지운

### ■ 최저임금이 기업행태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일자리 재정정책에의 함의

이환웅·송경호

### ■ 임금 상승이 노인의 노동시장과 공적연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

조희평·고창수

#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 방향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성주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022년은 경제회복 국면과 경기불안 요소가 상존하는 가운데 새정부가 출범하는 해이다. 유례없는 경제위기 이후 대규모 유동성이 시장에 존재하는 가운데 여전히 다양한 변이로 인한 추가적인 감염병발 경제불안이 지속되는 중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경제지표로는 팬데믹 이전으로의 회복이 되었으나, 신흥국과 개도국들의 회복 속도가 불투명하고, 추가 변이 확산 여부에 따른 회복이 어느 정도 견고하게 유지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IMF(2021. 10.)는 중기재정계획의 설계는 첫째, 지속가능성 확보, 둘째, 경기순응적인 재정조치 이후의 경기안정화, 셋째, 단순하고 적용 가능한 재정준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2022년 이후 회복을 위한 중기재정계획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순차적인 분야별 재정투자, 성장모멘텀 확보를 위한 잠재성장을 확충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sup>1)</sup>

본 연구는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는 성격이나 규모 면에서 그간의 경제위기와는 다를뿐더러, 재정 역할의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감염병 확산이라는 외부충격 발생 이후 각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감염병 확산 양상과 국가대응 방식에 주목하였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선진국들과 미국

의 51개 주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추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진국들과 미국의 주별 자료 기준으로 볼 때, 해당 국가의 기대수명이 비교적 긴 경우, 국가채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소득계층 간 분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코로나19 사망자 비율이 대체로 낮은 추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사례에서는 코로나19로 가장 충격이 컸던 민생분야인 고용분야 충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상대적으로 저학력자, 여성, 20대의 취업확률이 비교계층에 비하여 낮았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라는 외부충격이 비대칭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 20대의 취업확률, 경제활동 참가율 감소 충격이 비교군에 비하여 크게 나타난 반면, 60대-고졸 이하 그룹에서는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취업확률 증가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통한 고용지원이 노년층, 그리고 이들 중에서도 저숙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타 계층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았는지 검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청년과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일부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경제위기 대응은 재정 및 금융지원 규모와 방법, 중기계획 수립, 국가경쟁력 강화 투자 등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대응한 것을 알

1) IMF, Fiscal monitor, 2021. 10., pp. 4-6; p. 27.

수 있었다. 초기 대응에서는 방역과 의료 부문의 투자가 집중되었고, 이후에는 고용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응이 주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노동 유연성이 높은 미국의 경우 엄청난 규모의 실업급여와 현금급여로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는 점은 주요국들과 다른 모습이다. 그 외에도 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부담금의 납부 연기, 면제, 아동수당 등과 같은 자녀지원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취약가구 생계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다양한 조치들은 피해 규모가 큰 기업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책대상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국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사회구조적 취약점을 파악하는 계기로 보았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을 중기계획에 담고자 하였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해 직업훈련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많은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도로·철도, 통신망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기후·환경친화적인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디지털 개혁·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투자계획들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경제위기와 성장모멘텀 확보를 위한 재정역할 강화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건전성 틀 구축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단기적인 재정확장 기조에 대해서는 2022년 이후 경제회복 여부 이후 판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입과 세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인구구조 변화 속도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속도, 국가채무 증가가 위협적인 수준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입 확대에

B5변형/ 268면  
2021. 12.



대한 시기와 방법, 세목별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증세 여부는 경제회복 정도에 따라 대상과 방법을 설정할 수 있으며, 경제회복 이후에도 고용시장의 회복 여부가 증세의 내용과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소득기반 축소와 재정지원으로 인한 소비계층 대상 확대에 따른 소비세 강화 방안도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기극복과 구조적 개편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을 개인별 지역별 양극화 개선, 순차적 재정투자를 통한 불균등한 자원재배분 조정 역할 강화, 성장모멘텀과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으로 보았다. 개인 및 가구를 중심으로 한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정책은 정부의 주요 소득재분배 아젠다이며, 주요국 등의 사례에서도 참고할 내용이 있는 반면, 선진국 중 드물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간 양극화는 중장기적인 균형발전 의제로만 다루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지방(교육포함) 재정관계는 이른바 ‘연성예산’ 구조이며, 최종 재정책임은 중앙정부의 채무로 이전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지역소멸이 계속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는 지역별 격차 완

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전체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재정역할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세입 대안으로 단계별 세입 확보 방안을 제안하였다. 경기회복과 관련한 재원 확보 정책의 시기를 조율하고, 증세 수단의 선택 또한 초기에는 과급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인 세목들을 제안하였다. 경제회복 이후 고용상황의 개선과 담세여력 확보가 나타난 이후, 소득과세의 실효세율 제고, 소비세의 역할 강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국제적 여건 변화와 같이 고려해야 하는 탄소세, 법인 세율에 대해서도 단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도 강조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부유세로의 전환, 사회보장기여금 요율인상 등 소득재분배 개선 대안도 제안하고 있다.

재정지출과 관련해서는 첫째, 법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잠식 최소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이전지출 방식을 현재와 같은 법정지출이 아닌 재정여건 변화를 감안한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초·중등교육에만 집중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으로 재배분하여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노령화와 산업구조 변화를 대응하는 재정효과성 확보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사회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부담률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증세 논의를 본격화하고 최종 부담자인 국민과 국회가 추가적인 부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장기 의제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사회보험 개혁은 국민부담 차원에서는 조세만큼이나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대상 연령 조정,

보험료율 조정, 의사결정 거버넌스 개편 등 중장기 재정부담 의제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둘째로는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재정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이 중요해진 지금, 중기계획의 의미가 과거와 달라졌음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재정준칙과 같은 재정규율이 뒷받침된 구체화된 중기계획이 국가의 신용도와 신뢰성 확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채무부담에 대한 이행은 해당 국가의 신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신용도는 그 국가의 재정계획에 담긴 출구전략 등의 경제전망치와 재정준칙 등이 얼마나 강건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는 재정준칙의 법적 실효성, 강제성 여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 그 논의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증세의 중요성 등이 분석될 것이므로 재정준칙을 포함한 재정규율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긴급 재정지원 단계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비전통적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의 유효성 검증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재정지출의 긴급성, 재정수요의 정치적 수요 등 외부 여건에 의하여 시장에서 수용해야 했던 비전통적 정책의 경우에는 인식 부족, 자료 부족, 역량 부족 등으로 정책 분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미래에도 사용될 정책 수단인바,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 파악과 효과성 검증작업의 중요성을 제안한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1-01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 방향'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사회보험료 통합 부과·징수 방안에 관한 연구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 연구배경

최근 코로나19 사태 발발 및 장기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체계 재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필요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비정형취업자에게 집중되었는데, 경제적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미가입 내지 미적용 문제가 부각되면서 사회보험의 실질적·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물론 경제 구조 및 노동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목격되는 가운데 포용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은 이미 존재하던 상황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러한 논의가 보다 공론화된 셈인데,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전 국민 고용 보험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보험 체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및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체계 내지 운영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는 매우 방대한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로 기간을 한정할 경우 최근의 사회적·경제적·정책적 환경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

고 있는 연구는 2021년 12월 현재까지 드문 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보험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검토를 시도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등 최근의 정책적 흐름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사회보험 체계 및 운영과 관련된 기존 논의, 그리고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제시한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상황에 따라 개별적·순차적으로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입 이후 소관부처별 행정체계에 따라 각기 독립적으로 관리·운영·발전해 온 배경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운영체계, 부과체계 등의 측면에서 비통일성이 상당히 큰 편인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사회보험제도 및 조직(업무)의 통합 필요성이 4대보험 중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이 도입된 1995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사회보험 통합과 관련된 논의는 노무현 정부 및 이명박 정부 시기에 매우 구체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 유력 안이었던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 징수공단 신설안이 정치적·사회적 이유로 관철되는 데에는 실패, 뒤이은 이

명박 정부 당시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징수통합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현 체계를 갖추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보공단 중심의 징수통합은 그 성과 및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현 건보 중심 징수통합은 개별 사회보험의 적용·부과·급여 업무 등은 해당 사회보험공단이 담당하는 가운데 징수업무만을 건보공단이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체계인데, 이와 같은 업무분담으로 인한 실익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 비판의 핵심이다. 가령 사회보험 가입자와 해당 사업장의 입장에서 행정상의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보 중심 징수통합 추진 당시 기대되었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유의미한 성과가 관찰되지 않았던바, 불완전한 통합 내지 불필요한 통합이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시작된 전염병 사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문제가 비정형취업자의 소득과약, 국세청 및 사회보험공단 간 정보공유의 문제 등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까닭에 현 사회보험 체계 전반에 대한 반성 및 점검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킴으로써 건보 중심 징수통합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심층적인 평가 및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 4대 사회보험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4대 사회보험 운영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바, 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부과기준, 자격기준, 재정 관리·운영 방식 등의 측면에서 정합성 제고 필요성 및 그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제시한다. 영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와 비교해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간 정합성 제고의 여지가 관찰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간 정합성 제고가 사회보험 운영체계 개선의 전

제조건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부과기준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는 쟁점은 사회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완전한 통일이다. 현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의 부과대상 소득은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건보 중심 징수통합 이후 현재까지 그 용어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며, 각 보험별 독립된 용어 사용 및 부과대상 소득의 비통일성 유지로 인한 실익이 불투명한 가운데 가입자 및 사업장의 혼란 내지 불편만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 운영체계 개선을 추진하기에 앞서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부과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격기준 측면에서도 4대 사회보험 간 비정합성은 쉽게 목격되는데, 가령 각 사회보험별 일용근로자의 정의는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세법상 정의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비통일적인 보험료 부과기준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행정과 관련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각 사회보험별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정비가 요구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나아가 재정 관리·운영 방식, 징수규정, 정산체계 등의 측면에서 실익이 불분명한 사회보험 간 비통일성 내지 비정합성이 추가적으로 목격되는바, 본 연구는 본격적인 통합 논의에 앞서 해당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보험 간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었음을 전제로, 본 연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보험 운영체계의 개선방안을 고민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4대 사회보험 운영체계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비용절감 및 업무효율화, 민원대응 등의 편의성, 소득과약 및 상호연계, 건보공단의 업무수행 지속가능성, 업무 중복성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측면에서 현재의 건보 중심 징수통합이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

회보험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별 장단점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방안은 건보 중심 징수통합이라는 현 체계를 유지하되 효율성 제고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전략이다. 해당 방안의 경우 조직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앞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방안은 소득과약 및 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전략이다. 해당 방안이 추진·실현될 경우 현 징수통합 체계의 비효율성이 상당 수준 제거될 것으로 보이나, 급격한 변화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방안은 소득과약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전략이다. 해당 방안의 경우 소득과약 업무의 전문화·고도화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우위가 있으나, 조직 및 제도 개편에 따른 효과가 비교적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 3. 한계점

우리나라 사회보험 부과·징수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중장기적 개선방안 도출을 목표로 하였으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우선 사회보험료 통합 부과·징수를 위한 부처별·기관별 중장기적 계획을 매우 구체적인 수준으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즉 국세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각 사회보험공단 모두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체적인 방향성 내지 실마리만을 제공한 셈인데, 정책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한편 사회보험 운영체계 통합·개선을 위한 현실적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각 방안별 예상편익 및 소요비용에 대한 추계는 시도하지 못하였다. 예상편익 및 소요비용 추계와 같은



B5변형/ 232면  
2021. 12.

정량적 분석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별 시나리오가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이후 엄밀히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책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 정량적 분석의 결과가 정성적 분석의 결과와 함께 논의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저자들은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한계점들이 추후 활발한 후속연구를 통해 촘촘히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1-02 「사회보험료 통합 부과·징수 방안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운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체계 구축에 관한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적극적 재정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체계 구축에 있어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재정운용 시의 지출구조조정과 차별화하여 접근할 요소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재정운용을 현재의 재정 여력을 활용하여 국가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재정운용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측면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장기적인 경제 여건과 변화 방향을 되도록 객관적으로 예측하여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미래의 진행방향을 바꾸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접근과는 차이점이 있다.

이처럼 중기적·장기적 시계에 있어 미래의 도전적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의 진행방향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재정운용에 있어서 지출구조를 확정하고 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정운용과는 다양한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

먼저 지출구조조정은 재정지출 전반, 상위와 하위 단위를 포함한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줄일 사업들만 식별하겠다는 접근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적극적 재정운용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출구조조정은 단순히 예산 감액이 아니라 전반적인 재정성과를 조망하고, 국민경제의 미

래를 개선하기 위해 중점 투자해야 하는 영역들 중심으로 지출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거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은 줄여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위 단위에서의 효과는 물론 하위 단위에서의 효과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출구조조정은 단독 주체가 진행할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체계적으로 비교우위에 맞게 다양한 주체들이 협업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적극적 재정운용의 정의상, 지출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단발적인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하여 예시적으로 구성해 본 지출구조조정체계의 예시는 [그림 1]과 같다.

해당 체계에서 주요 지출구조조정 주체는 재정당국, 청와대 또는 국회로 대표되는 국민대의권을 지닌 조직, 국책연구원 등 정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정당국은 전반적 관리 총괄 입장에서 국민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부처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국민의 대의권을 가진 국회와 청와대는 방향성과 정책우선순위를 검토하고 확정하여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조가 될 미래 경제상황의 예측이나 정책의 집행 현황, 실제 정책의 효과성 분석 등의 성과중심 자료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국책

[그림 1] 지출구조조정체계 예시



출처: 저자 작성

연구원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기적인 측면에서 순서대로 살펴보자면 평가와 자료분석 등 기초연구는 전 분야에 걸쳐 정책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아 도출하고, 초안은 재정당국에서 작성하여 국민대의권을 지닌 조직에서 확인받고 실행하는 형태로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실제 성과중심의 관리는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출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수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책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접근해야 할 성과중심 분석방향에 대해서 보다 심

도 있게 다루어보았다. 먼저 정부지출 분야별 지출 현황과 지출 금액이 국민경제적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상위 단위에서의 분석 예시를 제시하기 위해 국제비교 수준에서 예시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국방(2.4%), 경제업무(5.6%), 환경보호(0.8%), 주택·지역개발(1.1%) 분야의 정부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에서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일반공공행정(4.0%), 공공질서·안전(1.1%), 보건(3.0%), 오락·문화·종교(0.7%), 교육(4.4%), 사회보호(4.7%) 분

야의 정부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995~2019년 기간 동안 한국에서 경제사업의 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사회보호 분야의 정부지출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점은 고영선 외(2004)와 박형수(2005)에서 2000년도 초반 또는 그 이전 자료를 사용해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다.

1995~2019년 기간의 정부지출 비중 증가폭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전체 정부지출 비중은 10.2%p 증가하여 OECD 회원국 평균인 -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비교 대상인 34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하였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정부지출 비중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2017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은 여전히 OECD 회원국의 최하위권(34개 국가 중 32위)에 머물러 있다.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보건 분야 정부지출 비중(1.2%p)을 가장 크게 높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정부지출 비중(-2.6%p)이 비교적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한국은 보건(3.4%p), 사회보호(4.5%p) 분야 정부지출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경제업무(-0.5%p) 분야의 지출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2000년도 초반 또는 그 이전 자료를 사용해서 분석한 고영선 외(2004)와 박형수(2005)에서의 제언과 부합하게 지난 20여 년간 한국에서는 경제분야의 정부지출 비중을 줄이고 사회분야의 정부지출 비중을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1995년 이후 한국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이 현저하게 늘어났지만, 2017년 기준 34개 OECD 회원국 중 32위에 머물러 단순비교 측면에서는 한국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자료 기준으로 분야별 정부지출 비중을 단순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국방(2.2%), 경제업무(4.5%), 환경보호(0.9%), 주택·지역개발(1.0%) 분야의 정부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에서는 OECD 회원국에 비교하여 일반공공행정(4.0%), 공공질서·안전(1.2%), 보건(4.3%), 오락·문화·종교(0.9%), 교육(4.6%), 사회보호(6.7%) 분야의 정부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국에서 사회보호 분야의 정부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15.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정부지출 비중이 성장지표, 고용지표, 생산성지표, 분배지표 등 국민경제 성과지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추가적으로 검증이 필요하지만 보건 분야 정부지출 비중이 1%p 늘어날 때, 실질GDP가 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분야 정부지출 비중 증가는 국민들의 건강상태 개선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가로 이어져 실질GDP 개선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도 판단된다. 실제로 보건 분야 정부지출 증가가 노동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는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는 측면이 있었다. 한편 사회보호 분야의 정부지출이 1%p 증가할 때 실질GDP가 2.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회보호 분야의 정부지출은 대체로 소득지원 및 소득보전 성격의 지출로 근로의욕을 낮출 가능성도 존재한다. 소득지원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중 일부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노후 소득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층의 과다한 노동공급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호 분야의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고령층의 노동공급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다소 긍정적인 현상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 경제주체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국민 소득지표인 1인당 실질GDP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도 실질GDP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고용지표와 관련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경제업무 분야의 정부지출 비중이 1%p 증가할 때

경제 전체의 고용률은 0.64%p, 2.53%p, 0.14%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경제업무 분야의 재정지출 비중 증가가 고용률 감소로 이어진 것은 이들 분야에서는 정부지출에 따른 승수효과보다 구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추론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경제업무 분야의 정부지출 비중을 늘릴 때, 고용률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업률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도 고용률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와 부호만 반대일 뿐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생산성지표와 관련하여, 환경보호 분야의 정부지출 비중이 1%p 증가할 때 총요소생산성은 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호는 한정된 자원의 낭비를 막아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생산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생산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기술변화 속도가 충분하지 않거나 기업의 적응속도가 늦는 경우에는 동일한 자본량과 노동투입량을 가진 기업들의 생산성이 단기적으로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분야별 정부지출 비중 변화가 취업자 수 기준으로 정의된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경제업무와 보건 분야의 정부지출 비중이 1%p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은 각각 0.2%,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보호 분야의 정부지출 비중이 1%p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은 1.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야별 정부지출 비중 변화가 실질GD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노동생산성을 실질GDP를 취업자 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질GDP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경제업무 분야의 재정지

B5변형/ 161면  
2021. 12.



출 증가가 노동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만, 실질GDP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업무 분야의 재정지출 증가가 고용률을 낮추는 것과 관계가 있다. 경제업무 분야의 재정지출 비중 증가는 실질GDP를 늘리지는 않지만 고용률을 낮춰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업무 분야의 재정지출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고려하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분배지표와 관련하여 오락·문화·종교 분야의 정부지출 비중이 1%p 증가할 때 세전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5.0% 감소하여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오락·문화·종교 분야의 직장 안정성 및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면, 해당 분야의 정부지출 증가는 해당 분야의 수요 증가 및 노동공급 증가로 이어져 세전 시장소득의 불평등도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사회보호 분야의 정부지출 비중이 1%p 증가할 때 세전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1.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회보호 분야의 정부지출 증가는 소득불평등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보호 분야의 정부지출 비중

증가가 실질GDP를 낮추는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호 분야의 재정지출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경우 저소득층의 시장소득 감소에 따라 세전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공공질서·안전 분야와 오락·문화·종교의 정부지출 비중이 1%p 증가할 때 세후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각각 8.7%, 4.7% 감소하여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오락·문화·종교 분야의 정부지출 증가가 세전 시장소득 지니계수를 이미 5.0%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으로 세후 소득을 줄이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정부지출 증가가 세전 시장소득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세후 소득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정부지출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니계수와 다르

게 분야별 정부지출 비중 변화가 소득 10분위배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부 분야의 정부지출 비중 변화가 지니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분야별 정부지출 비중 변화는 소득 상위 10% 또는 하위 10% 집단보다는 중간에 속해 있는 다른 소득분위 집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의 <표 1>은 상위 단위에서의 OECD 회원국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책효과성 분석을 요약한 것이다. 비록 예시적인 상관성 분석이므로 추후 보다 세부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표 1>에서 요약되어 있는 것처럼 정책은 반드시 예상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보건지출이 생산성을 높일 가능성도 있었고, 경제지출 감소가 오히려 경제적 질적 목표 달성을 더 도울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1> 정부지출 비중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요약

	국민경제 성과지표	일반 공공 행정	국방	공공 질서 안전	경제 업무	환경 보호	주택 지역 개발	보건	오락 문화 종교	교육	사회 보호
성장 지표	실질GDP							+			-
	1인당 실질GDP							+			-
고용 지표	고용률	-		-	-						
	실업률	+		+	+				-		+
생산성 지표	총요소생산성										
	노동생산성 1 (실질GDP/취업자 수)				+			+			
	노동생산성 2 (실질GDP/총 근로시간)				+	-					
분배 지표	세전 시장소득 지니계수										+
	세전 시장소득 지니계수								+	-	
	소득 10분위배율										
출산율 지표	합계출산율										

주: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 중 모형 설명(1차 시차변수 포함 여부) 및 표본 설정(한국 포함 여부)과 상관없이 강건한 결과들을 요약 정리함  
출처: OECD, OECD Statistics, "Government expenditure by function(COFOG)," 1995~2019.

**<표 2> 지원이력-기업데이터 연계 후 2012~2014년 정책금융 업력 10년 초과 지원분 구분 요약표**

지원연도	업력 구분	기업 수 (개)	비중 (기업 수)	정책금융 3사 지원규모(조원)	비중 (지원규모)
2012년	업력 10년 이하	81,455	66.9%	30.9	57.1%
	업력 10년 초과	40,364	33.1%	23.2	42.9%
	지원기업합계	121,819	100.0%	54.1	100.0%
2013년	업력 10년 이하	82,315	65.5%	32.0	56.7%
	업력 10년 초과	43,380	34.5%	24.4	43.3%
	지원기업합계	125,695	100.0%	56.4	100.0%
2014년	업력 10년 이하	81,878	64.5%	32.2	56.9%
	업력 10년 초과	45,086	35.5%	24.4	43.1%
	지원기업 합계	126,964	100.0%	56.6	100.0%

출처: 기술보증기금(2016); 신용보증기금(2016); 중소기업진흥공단(2016); 한국기업데이터(2020)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이와 같이 정부지출 부문 간의 지출구조조정에서 정정책의 이름이나 원래 의도와 관계없이 실제의 장기적 성과가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성과를 내는 지출증가에 대한 증거기반 평가와 환류를 통해 성과를 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조타하고 환류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출 분야의 하위 세부단위에서의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성과평가를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하위 평가의 예시로 중소기업정책금융에 대해 심층 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조준분석 차원의 시장실패조건에 있어 업력 10년 초과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게 확인되어 정책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정책금융의 경우 현재 20조원 이상 규모의 지원을 즉각 재배분할 개연성이 있었다. 모든 정책금융에 있어 업력 10년 초과한 기업들에게 제공된 자금들을 식별하여 특별한 추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10년 이하의 기업들에게 재배분하도록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와 같이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실패와

크게 관계없는, 업력이 10년을 초과한 기업들에게 지원기관들이 자금을 제공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정책금융 원리금 회수를 위한 지원기관들의 안전추구 성향으로 판단되므로, 정책조정 과정에서 지원기관들의 성과지표 관리에 있어 회수율(대위변제율) 기준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원기업의 생산성 측면에서의 성과분석을 시행한 결과, 기업지원의 효과가 지원받은 기업들의 생산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만일 경쟁력과 수익성 면에서 지원효과가 높게 나온 지원기업들의 특성이 있었다면 해당 특성을 지닌 기업들에게 재원을 재배분할 것을 추천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아쉽게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향후 정책의 최소목표로 정책중립화 목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정책 중립화란 정책의 편익이 0이 되는 것으로, 이 경우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용편익분석에서의 최소한의 목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음(-)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기적인 최소한의

<표 3> 기보중진공비교 1기 효과 ROA 교집합 제외 중복별도분석

VARIABLES	기보중진공비교_교집합 제외	중진공기보비교_교집합 제외	기보중진공비교_중복지원
기보지원 여부	2.892** (1.205)		
매출액	-0.000239*** (5.91e-05)	-0.000239*** (5.91e-05)	-0.000145*** (4.80e-05)
총자산	-6.55e-05 (8.03e-05)	-6.55e-05 (8.03e-05)	-7.57e-05 (6.16e-05)
영업이익	-0.0102*** (0.000224)	-0.0102*** (0.000224)	-0.00973*** (0.000183)
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0.000784 (0.000779)	0.000784 (0.000779)	0.000624 (0.000659)
산업중소기업평균매출액	7.01e-05 (0.000863)	7.01e-05 (0.000863)	-0.000309 (0.000721)
산업중소기업평균영업이익	-0.00256 (0.00465)	-0.00256 (0.00465)	0.00300 (0.00394)
산업중소기업평균연구개발비	-0.00976** (0.00487)	-0.00976** (0.00487)	-0.0101** (0.00424)
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0.505*** (0.0942)	-0.505*** (0.0942)	-0.484*** (0.0805)
2013. Year	-0.266 (0.285)	-0.266 (0.285)	-0.478** (0.241)
2014. Year	-0.0307 (0.347)	-0.0307 (0.347)	-0.396 (0.292)
2015. Year	-0.274 (0.428)	-0.274 (0.428)	-0.717** (0.360)
중진공지원여부		-2.832** (1.205)	
기보중진공중복지원여부			-0.643* (0.387)
Constant	3.875 (2.802)	6.767** (2.683)	6.900*** (2.228)
Observations	436,824	436,842	436,842
R-squared	0.045	0.109	0.027
기업체 수	217,327	217,337	217,337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출처: 기술보증기금(2016); 중소기업진흥공단(2016); 한국기업데이터(2020)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목표로 정책중립화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수 있다.

추후 정책정상화 과정을 거쳐 기업특성이나 정책 특성에 따라 바람직한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정책의 확장과 부진한 정책의 감소를 통해 추가적인 진정한 의미의 정책금융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지원기관별 정책평가 결과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 지원기관별 요구사항을 차별화하여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상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 본 연구의 주요 정책 시사점 중 하나를 구성하는데, 제시한 <표 3>의 경우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이력을 중복제외 없이 지원된 경우와 중복지원의 효과를 나누어 확인한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았을 때보다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을 받았을 때 총자산영업이익률이

1년 후 2.9%p 가량 높아지며 중복지원의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낮은 효과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단위 지원에서는 동일한 목적과 수단을 사용한 살포형 지원에서 벗어나 뚜렷한 세부 정책목표를 둔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조준분석 결과를 통해 제안할 수 있다. 현재는 산업별 차등을 주지 않고 지원이 안분되어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처럼 일반적으로 지원담당부서를 산업별로 구성하면 산업별로 지원규모 나누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원담당부서 구성 시 산업별 구성을 지양하고 기관별로 산업배분 정책조정 기능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또한 장우현 외(2019)에서 제안한 것처럼 산업 중간성과지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량산업의 경우는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투자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정책, 침체산업의 경우는 기업설비 축소와 내실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정책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전적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총량 측면에서 정책의 한계효과가 낮다는 점이 일관적으로 발견되므로, 증거기반 성과평가 결과에 기반할 경우 중소기업정책금융은 성과개선을 도모할 수 없다면 축소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단위 분석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특화하여 진행했으나, 다른 분야에서도 지원이력과 측정가능한 국민경제적 성과지표를 확보할 수 있다면 본 장에서 제시한 방법론들을 일반적으로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조준 적절성 분석과 함께 사업 간 비교, 세부 정책대상별 비교, 지원기관 간 비교와 해당 조건의 조합을 통한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영역과 부족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고, 재원을 이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야별 하위 평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 제언은 우선 증거기반의 정량평가를 위해서는 지원이력에 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중소기업정책이나 일자리 정책, R&D 정책 등도 지원이력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았기 때문에 증거기반 방법론들을 적용하여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비교하기 어려웠다.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더라도 익명화하여 처리하거나, 개인 식별이 되지 않는 집단 수준에서의 지원이력이라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들은 어느 영역에서라도 활용 가능하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인프라는 지원이력의 체계적인 관리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성과지표의 개선이다. 성과지표는 이미 다양한 재정사업관리와 평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본요소인데, 각 사업의 성과지표를 국민경제적 기준으로 측정가능한 결과 위주의 정량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는 기본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중소기업정책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살펴본 것처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역설적으로 성과지표의 개선가능성과 이를 활용한 지출구조조정의 효율성 개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성과지표의 경우에도 분야별 특성과 준비도는 다를 수 있으므로 맞춤형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소기업정책의 경우 부가가치와 생산성, 일자리정책의 경우 고용량 순증분과 노동생산성 및 임금과 같이 정량적인 지표가 도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일 기술적인 문제로 정량적인 지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만족도와 같은 정성지표도 기본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지표들을 객관적인 정량지표로 대체해 나갈 수 있으므로, 준비도가 부족하다고 제외하고 접근하기보다 현재 가능한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모든 분야에서의 정책평가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로 앞서 제시한 분야별 상위평가의 경우도 하위평가와 별도의 평가라기보다 지원이력이 정부 지출분야 수준에서 최대한 집계변수화 되고 성과지표도 국민경제적인 최종지표가 활용되는 하위평가의 최상위 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맥락에서 상위평가의 경우 정부지출 분야를 합리적으로 정의하고 지출금액을 경제적 의미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지원이력 관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앞서 제시한 것처럼 분류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지원이력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위 조정을 위한 평가에 있어서의 성과지표의 경우도 최상위 성과지표로서의 중요성을 갖는데, 본 연구에서 제시했던 각종 지표들은 향후 성과지표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재정사업의 경우 개별 사업이 나름의 목적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에 기반하여 절대적, 상대적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적극적 지출구조조정은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출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면 국민경제적 필요성이나 성과가 낮은 사업이 구조조정되기보다 역학관계에서 약점을 보이는 사업들이 구조조정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증거기반 접근은 합리적 지출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예시로 한 중소기업정책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증거기반 접근과 연구에 따라 지원이력과 성과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분야에서 가능한 조건하에서 증거기반 평가를 도입하여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의 개념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위한 추진체계와 방법론을 포함한 실제 정책 설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적극적 재정운용과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의 개념을 정의해 보고자 시도해 보았고, 이를 기준으로 기존의 지출구조조정과 차별화하여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모색해 보았다. 단발적이고 단기적인 지출구조조정 보다는 상시적이며 체계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국책연구원의 비교우위에 맞춰 추진체계를 뒷받침할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증거기반 지출구조조정 방법론에 대해서도 예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근거기반 정책평가와 환류를 위한 자료 확보 방안 및 방법론 연구도 수행해 보았다. 아직 추가 검증이 필요할 수 있지만 분야 간 정책성과에서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방향성이 발견된다든지, 이전의 전체분석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세부분석 결과, 분야 내 정책배분 방향에 대한 함의들도 기초적인 예시적 분석을 통해서도 일정 수준 이상 발견할 수 있음을 확인한 점은 작더라도 소득이라고 판단한다.

이처럼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증거기반 평가를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원이력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로 준비도는 다를 수 있지만, 주어진 조건하에서 모든 분야에서 증거기반 평가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원이력 관리와 성과지표 관리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1-03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최저임금이 기업행태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일자리 재정정책에의 함의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고용 및 노동비용 조정 여부와 생산성 증대 여부를 탐색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고용, 임금, 고용비용 조정 등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시 10인 이상 사업체의 전수를 포함한 「광업·제조업조사」를 활용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사업체 단위의 최저임금영향률을 계산하여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 최저임금영향률이 10%p 증가하면 최저임금영향률이 0%인 사업체와 비교해서 2017년 대비 2019년 고용증가율이 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균형패널을 구축하여 분석한 기존 연구와 다르게, 사업체의 폐업에 의한 고용조정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표본에서 탈락하는 사업체들의 표본탈락 원인을 ① 10명 미만으로 고용조정 ② 사업체의 폐업으로 구분하여 표본에서 탈락한 사업체의 탈락 원인 비율을 이용 가능한 다른 자료를 활용해서 추정하였다. 그다음 계산된 비율에 따라 임의의 표본탈락 사업체에는 폐업에 의한 탈락으로 가정하고 0의 값을 부여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체들은 10명 미만으로의 고용조정으로 인한 표본탈락으로 가정하고 고용수준에는 10명 미만으로 고용을 조정한 사업체들의 고용값을 배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외연적 경로(사업체 폐업)에 의한 고용조정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외연적 경로에 의한 고용조정은 전체 고용조정의 38.10%



B5변형/ 146면  
2021. 12.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연적 경로 역시 중요함을 밝혔다.

그다음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평균급여 등의 노동비용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영향률이 10%p 증가하면 최저임금영향률이 0%인 사업체와 비교해서 2017년 대비 2019년 평균임금이 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평균노동비용 역시 평균급여 증가율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 플라스비 검정 결과 2015년과 2017년 사이 임금변화와 최저임금영향률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추정치의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광업·제조업조사」의 분석 기간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확대해 최저임금의 고용효

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모형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시점 이후(2018년 이후)와 이전의 경우, 최저임금영향률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랐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모형에서 2018년 이전에는 최저임금영향률과 고용 간의 유의한 관계가 관측되지 않았으나, 2018년 이후에는 모든 모형에서 최저임금영향률 증가가 고용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최저임금 인상 정도에 따라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임계점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비선형구조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체의 생산성(부가가치율, 1인당 생산액, 중요소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체의 생산성에 따른 고용 효과의 이질성에 관한 다양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의 인상이 사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와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사업체의 생산성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모든 모형에서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이 높은 사업체는 동일한 최저임금 인상 충격에 대해 고용감소의 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생산성이 낮은 사업체는 고용감소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비선형적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정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 시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가 2018년 전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

는데, 2018년 이전에는 최저임금영향률과 고용 간의 유의한 관계가 관측되지 않았으나, 2018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영향률의 증가가 고용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 시 경제에서 수용가능한 적절한 인상 수준의 결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함의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시 최저임금 인상폭에 따른 고용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비용의 증가 및 고용감소 효과가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이질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기준 등의 설계에 이러한 이질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가 사업체의 생산성에 따라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산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영세사업체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고용불안 해소 측면에서 합리적인 정책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비용 증가에 따른 고용감소에 노출된 사업체를 30인 미만 기준만을 활용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책목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운용되는 것처럼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및 비용 증가효과의 사업체 특성별(산업별, 규모별, 최저임금영향률) 이질성을 고려하여 예외대상을 지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하면 본 연구는 이용 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광업·제조업에 속한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산업 전체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행태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하려면 기업들이 비용 증가에 따른 충격을 최종생산물의 가격인상

혹은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조정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까지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해 해당 분석을 신뢰성 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본 분석에서는 사업체들의 해당 마진에서의 조정 여부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해당 마진에 대한 분석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를 사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지 아니면 사업체의 영업이익의 감소를 통해서 대응하는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정책목표 측면에서의 정당성, 그리고 정책의 효과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1-04 『최저임금이 기업행태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일자리 재정정책에의 함의』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임금 상승이 노인의 노동시장과 공적연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

조희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임금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최저임금 상승이 고령자의 노동시장과 연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령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한 최저임금은 고령자의 노동시장 및 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고령 노동자는 다른 연령대의 노동자에 비해 평균적인 교육수준과 노동생산성이 낮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듯 고령자의 최저임금 영향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에게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최저임금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이 고령노동자의 고용, 노동시간,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이질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고령층이 다른 연령층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은 노동시장 참여 및 은퇴 결정이 공적연금 수령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이 고령자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노령연금, 기초연금과 같은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령자의 소득과 노동시장 참여가 감소한다면 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수령이 증가할 수 있다. 반면에 최저임금이 소득 증가를 가져오고 은퇴를 늦춘다면 공적연금 수령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이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수급률 및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 1. 최저임금 상승이 고령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먼저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고용조사」(2009~2020년)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이 60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단위는 시군(161개)/연령(60~64세, 65~69세, 70세 이상)/성별로 정의된 인구집단이며, 종속변수와 주요 설명변수는 각각 인구집단별 노동시장 지표와 최저임금 영향도이다. 여기서 최저임금 영향도는 전년도의 임금을 금년도의 최저임금까지 상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주급(週給)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노동시장 지표는 각각 고용률, 평균 노동시간, 평균근로소득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연령×성별×시간’ 고정효과를 통제함으로써 동일한 연령대와 성별을 가진 인구집단의 지역 간 변이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효과를 식별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의 인상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전체적인 고용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평균노동시간을 상당 부분 감소시켰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영향도가 10% 증가할 때, 전체 고령자의 평균노동시간이 각각 0.07시간 감소하였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취업자의 근로소득은 증가하였지만, 비근로소득자와 미취업자까지 포함한

평균근로소득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본고에서 추정된 최저임금과 고령자 노동시장 간의 이러한 관계성은 분석 기간 동안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렇듯 최저임금 인상이 고령자의 전체적인 고용 규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는 고령자의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의 효과는 연령별, 성별, 교육수준별로 상당히 이질적으로 나타났다. 우선 최저임금이 노동시간을 낮추는 효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체적으로 커졌다. 또한 60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평균적인 근로소득이 증가한 반면, 70대의 평균근로소득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남성과 고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고령자의 고용률과 평균근로소득은 증가한 반면, 여성과 고졸 미만의 교육수준을 가진 고령자의 고용률과 평균근로소득은 감소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고용형태별, 산업별로도 크게 이질적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전체적인 노동시간이 감소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전일제 근로자의 고용은 감소한 반면, 파트타임 근로자의 고용은 증가했다. 또한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우 유의미한 고용 감소가 관측되지 않았던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 고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산업별 효과 또한 상당히 이질적으로 나타났는데, 고령 노동자가 경비나 청소 등 주로 종사하는 ‘부동산업’이나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부정적인 고용효과가 추정된 반면 ‘제조업’, ‘건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의 산업에서는 긍정적인 고용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공공형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B5변형/ 156면  
2021. 12.

다음으로 여러 강건성 분석을 통해 본고의 분석 결과가 강건함을 확인하였다. 대안적인 지역별 통제변수나 고정효과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했음에도 전체적인 추정 결과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또한 최저임금 영향도 정의 시 본고에서 사용한 필요액 지수가 아닌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최저임금 미만을 지수를 사용하거나 인구집단 정의 시 산업을 사용하는 대안적인 추정방법을 사용하여도 분석 결과의 방향성은 큰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시기인 2020년을 제외해도 본고의 추정 결과는 강건하게 유지되었다.

## 2. 최저임금 상승이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이 고령자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국민연금 통계연보』(2012~2020년) 및 『통계로 본 기초연금』(2015~2020년)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률 및 수급액을,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률과 기초연금 수령자의 소득인정액을 종속변수

로 사용하였다. 앞선 노동시장 분석과 같이 최저임금 영향도(필요액 지수)의 인구집단별 차이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이 공적연금 수령에 미치는 효과를 식별하였으나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추정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시군별 수급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집단을 시도, 출생연도, 성별을 이용하여 정의하였다. 또한 ‘출생연도×성별×시간’ 고정효과를 통제함으로써 같은 출생연도와 성별을 가진 인구집단의 시도별 차이를 통해 최저임금의 효과를 식별하였다. 기초연금의 경우 시군구별 데이터가 존재하는 반면, 이를 성별, 연령별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회귀분석 시 단순히 시군을 인구집단으로 사용하였다.

먼저 최저임금 영향도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률 및 수급액과 대체적으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노령연금을 정규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누어 이에 대한 분석을 각각 수행하였는데, 노령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규노령연금의 경우 최저임금이 연금수급률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작게 추정되었다. 다만 연금을 미리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연금수급률, 수급자 수, 총급여액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조기노령연금 수급률 감소효과는 주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자 노동시장 분석에서 여성과 달리 남성에게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소득 및 고용효과가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다.

기초연금 분석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이 기초연금 수급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하위 70%의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급인정액이 0원인 비율과 100만원 이상인 비율이 동시에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양극화 현상은 최저임금의 효과가 인구집단별로 크게 이질적이었던 앞선 노동시장 결과와 그 궤를 같이한다.


### 3. 결론 및 시사점

최저임금 인상이 고령자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평균적인 효과는 고용의 측면보다 주로 노동시간의 감소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효과는 인구집단별로 상당히 이질적이었는데, 여성, 저숙련, 임시직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고용 및 소득 효과가 나타난 반면 남성, 고숙련, 상용직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고령자의 소득과 노동공급을 증대시킨 미국과 캐나다의 선행연구(Fang and Gunderson, 2009; Borgschulte and Cho, 2020)와 상반된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 고령자의 교육수준과 노동생산성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데에 있다. 즉 고령 노동자와 비(非)고령 노동자의 교육수준 및 인적자본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한국의 고령자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것이며, 특히 여성 및 저숙련 고령자에게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본고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적인 노령연금 수급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수급 감소로 이어졌음을 보인 미국의 선행연구(Borgschulte and Cho, 2020; Hampton and Totty, 2021)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

은 현 시점에서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여 고령층에 대한 보장성이 여전히 낮다는 것에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여성과 저숙련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과 연금액이 낮아 노동시장 충격이 노령연금 수령의 증가가 아닌 공공형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선행 연구와 동일한 방향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수급률과 수급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국민연금에 장기간 가입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여건을 충족한 고령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 증대로 인해 은퇴를 늦추고 (조기)노령연금 수령 또한 늦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의 국민연금이 더욱 성숙해지고 보장의 범위가 확대된다면 미국과 유사하게 최저임금의 변동과 연금 수령자들의 행동 변화 사이의 연결고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본고의 분석 결과를 종합했을 때 노동시장 충격에 취약한 고령자의 취업을 장려하고 고령자의 전반적인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이 고령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기업과 고령 노동자 간의 매칭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노동시장 충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정도가 인구집단별로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창출된 공공형 일자리의 전반적인 질을 개선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노인 일자리 사업의 공공형 일자리는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공적연금의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형 일자리의 활동비나 활동 기간은 이러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각 소득계층의 필요와 사회적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노동시장 충격에 취약한 저소득 고령자 위주로 양질의 공공형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1-05 '임금 상승이 노인의 노동시장과 공적연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정책토론포트 |



■ 2022년도 PEMNA 예산분과 웨비나



## 2022년도 PEMNA 예산분과 웨비나

### 개요

- 회의명 2022년도 PEMNA 예산분과 웨비나
- 주제 Budgeting for ICT
- 일시 2022년 4월 21일 (목)
- 주최 세계은행
- 주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후원 기획재정부, EU

\* 본 원고는 2022년 4월 21일(목), 세계은행이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하에 「Budgeting for ICT」를 주제로 열린 2022년도 PEMNA 예산분과 웨비나의 요약자료입니다. 본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 PEMNA(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 아태재정네트워크)는 아태 지역 국가의 공공재정관리능력(Public Financial Management) 배양을 목적으로 2012년에 설립된 국가 간 재정협력체임

- PEMNA 사업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사무국을 담당함
- 회원국은 한국,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브루나이로 총 14개국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계은행(WB), EU, IMF가 개발협력회원으로 참여함
- PEMNA는 국고회계분과와 예산분과 총 2개 분과를 운영 중이며 2012년 1차 총회 이후 매년 연 1회 총회와 2~4회의 분과회의, 벤치마킹, 연구보고서 발간 등 활발한 교류 및 역량강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PEMNA는 정보통신기술 예산을 주제로 한 2022년도 첫 예산분과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진행함

## 2022년도 PEMNA 예산분과 웨비나

### Opening Remarks & Introduction

#### • Rofyanto Kurniawan(예산분과의장)

- Rofyanto Kurniawan 예산분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과 예산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중의 평등한 정보 접근성을 위한 통신기술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한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음
  - 정보통신기술 예산을 주제로 하는 이번 회의를 통해 많은 회원국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발히 공유할 수 있는 포럼이 되길 기대함

### Session 1. Budgeting for ICT

#### Presentation: Investment Planning for ICT Lifecycle Management

#### • Peter Poulin(세계은행)

- 정보통신기술 부문의 지출은 새 건물을 구매하는 등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년에 걸친 투자와 조달의 계획, 관리감독, 및 지속성보장이 핵심임



■ 정보통신기술자산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매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드는 일회적인 초기비용 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운영비용이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예산에 이와 같은 다년간의 비용이 잘 반영되게 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초기 공급업체와 계약 시 다년간의 유지보수에 대한 옵션을 포함시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정보통신기술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부처 내 담당부처의 역할과 협력 역시 중요하며,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계획은 적절한 사업계획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전체 예산에서 정보통신기술부분의 비용을 분리하고 사업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파악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집행·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정보책임자, 재무책임자, 재무부, 예산부처의 역할분담과 정보교환 및 협업이 중요함
- 한편, 투자계획이 포함해야 하는 사업계획으로는 투자의 필요성, 장단점 및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한 옵션선택의 정당성, 감정, 전략의 조정, 초기계획, 역할과 책임의 배분, 평가프레임워크, 위험평가 등이 있음

### Presentation: ICT Budgeting

• 홍필기(서울대지정대학교)

■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화를 주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예산에 대해 국가정책

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기술 예산에 대한 자문 사업을 시행한 결과 정보통신기술예산 계정이 부재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보고, 감사, 평가가 힘들다는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이 모색됨

- 태깅(tagging) 등을 이용하여 예산분류를 체계화하는 한편, 원가산정을 위한 공동지침을 마련함
-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일선부처에 예산절차 일부를 위임하거나 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함
- 한국의 사례 중 예산책정에 대한 표준지침, 프로젝트 관리시스템(PMS),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을 참고 해볼 수 있음

## Session 2. Country presentations

### Presentation: Budgeting for ICT in Korea

• 유동훈(기획재정부)

■ 한국은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중요성을 인식, 지난 5년간 해당분야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이에 다양한 성과를 거두는 한편 7대 분야 기술개발 및 5대 투자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2022년 정보통신기술 예산안에 포함시켰음

- 2022년 한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기술분야는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사이버보안, 디지털전환,

5G, 기술윤리, 증강현실 등을 비롯한 디지털체험 등이며, 중점투자분야는 산업간 데이터빅뱅, 5G 혁신, 인재개발, 디지털 포용성, 사이버보안 등임

- 한국의 2022년 정보통신기술 예산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2조 8,000억규모이며 이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산업간 데이터 빅뱅 분야로 약 60.5%가 할당됨

-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예산이 커짐에 따라 효율적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새로운 심사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디지털정부 플랫폼 구축을 계획 중임

- 한국은 정보화사업 도입에 앞서 전문가들이 사업타당성과 적정성, 검토기준과 성과 등을 검토하는 사전검토제의 도입을 고려 중이며, 이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예산절감 및 예산선순환구조 확립이 기대됨
- 한국이 구상중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AI와 빅데이터의 행정 활용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Presentation: ICT Budgeting Process - Indonesia's Experience

• Agung Hidayat Purwanto(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는 약 2억 7천만 인구 중 인터넷사용자는 1억 7,500만명에 이르는 한편 전자상거래 규모도 1,360만달러에 달하는 등 거대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디지털혁신을 위해 데이터센터 건설, 정부 인터넷 네트워크 개선, 데이터 통합 등을 진행 중이며, 이는 디지털정부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예산체계 확립을 통해 최적화 될 수 있음

- 최근 시행된 PEMNA의 정책자문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기술 예산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확립, 국가 정보통신기술계획의 분류체계 확립, 정보통신기술 예산지침마련,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확립, 정보통신기술 예산정보시스템,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등이 권고됨

### Closing Remarks

• 허경선(한국조세재정연구원)

- PEMNA 사무국장 허경선 아태재정협력센터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예산분과 웨비나를 통해 정부 예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더욱 커진 정보통신기술예산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와 회원국 간 지식공유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으며, 웨비나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참가자들에 감사를 표하였음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http://www.kipf.re.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 주요국의 조세동향

### [미국 - 비거주 외국인의 이연보상에 관한 사례집 발표]

■ 미국 국세청은 2022년 3월 31일, “비거주 외국인 개인이 받는 이연보상”(INT-C-227)에 관한 사례집을 발표함<sup>1)</sup>

- 미국은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 개인서비스 수행을 포함하여 미국 무역 또는 사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 이자, 배당금, 임대료, 로열티에 관하여 총액 기준 최대 30%의 고정 세율로 원천징수함
- 이연보상은 성과와 관련한 보상액의 일부를 수년간 이연하고 특정 과세연도에 보상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함
  -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연보상은 급여 연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차기 연도에 지급되는 보너스, 스톡옵션, 퇴직연금 등의 형태로 이루어짐

■ 이번에 발표한 사례집에서는 이연보상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제공함

- 개인이 수행한 개인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미국 근무일수 기준으로 계산함
- 다년보상약정은 다년 기간 내의 미국 내외 지역에서 발생한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함
  - 다년보상약정은 개인이 1년 이상의 과세연도에 수행한 서비스에 대하여 어느 한 과세연도에 보상받는 것을 말함
- 부가혜택은 직원의 주 근무지 국가에서 제공함
  - 부가혜택의 예로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주택, 현지 교통비 지급, 위험 수당, 세금 환급, 피부양자 등록금 제공, 이사 비용 제공 등이 있음

■ 이번에 발표한 사례집에서는 피고용인 신분의 비거주 외국인이 받는 네 가지 일반적 유형의 이연보상에 대하여 설명함

- 급여 연기
  - 지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 과세가 연기되는 자금 없는 이연보상 계획
- 미국 회사의 연금 또는 이익 공유 계획에 따른 분배금
- 경영진 또는 임원급에 대한 ‘top hat plan’
  - ‘top hat plan’이란, 회사 내 경영진이나 고액 급여를 받는 직원에게 이연보상 또는 복지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고용주가 관리하는 자금 없는 계획을 말함<sup>2)</sup>

1) IRS, “Practice Units,” <https://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practice-units>, 검색일자: 2022. 5. 3.

2) THOMSON REUTERS, “Top Hat Plan,” [https://content.next.westlaw.com/3-501-5245?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https://content.next.westlaw.com/3-501-5245?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 검색일자: 2022. 5. 3.

- 'top hat plan'의 형태 중 하나로 고용주가 참여 직원에게 특정 보상을 연기할 기회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비적격 이연보상 제도가 있음
- 'top hat plan'의 다른 형태로는 고용주의 적격 플랜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참여 직원에게 추가 퇴직 소득을 제공하는 보충 임원 퇴직 계획이 있음

■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이연보상 지급을 위한 고려 사항에 대하여 제시함

-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에서 서비스를 수행한 적이 있는지 여부
  -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개인서비스에 대한 보상인 경우에만 해당 이연보상에 관하여 과세함
  - 미국 소득세법 861(a)(3)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서비스가 아닌 경우 해당 소득은 해외출처로 간주되어 미국 세금 면제의 가능성이 있음
-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과의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인지 여부
  - 미국과의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의 미국 내 소득에 관하여 미국 세금의 면제 가능성이 있음

<자료수집 및 조사: 이나현 변호사>

[캐나다 - 2022년도 예산안 발표]

■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2년 4월 8일, 법인세에 관한 연방정부의 예산안을 발표함<sup>3)</sup>

- 2022년도 예산안을 통해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세금인 Canada Recovery Dividend를 공개함
  - 2021년 과세연도에 1억캐나다달러<sup>4)</sup>를 초과하는 은행 및 생명보험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16.5%로 인상함
-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직접 공기 포집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적격포집장비<sup>5)</sup>의 경우 60%
  - 다른 적격포집장비의 경우 50%
  - 적격 운송, 보관 및 이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 37.5%
- 소기업이 통상의 15%보다 6%p 감소된 9%의 법인세율 혜택을 받도록 소상공인 공제(small business deduction)를 제안함

■ 캐나다는 2022년 4월 8일 소득세에 관한 연방정부의 예산안을 발표함<sup>6)</sup>

- 2022년 예산에서는 연간 기여한도가 8천캐나

3) IBFD, "Canada's Budget 2022 – Business Tax Measur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4-11\\_ca\\_1%23tns\\_2022-04-11\\_ca\\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4-11_ca_1%23tns_2022-04-11_ca_1), 검색일자: 2022. 5. 3.  
 4) 2022년 5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854억 6,000만원임  
 5) 적격포집장비란,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프로젝트의 일부로 이산화탄소를 포집, 운송, 저장 또는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를 말함  
 6) IBFD, "Canada's Budget 2022 – Personal Tax Measur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4-11\\_ca\\_2%23tns\\_2022-04-11\\_ca\\_2](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4-11_ca_2%23tns_2022-04-11_ca_2), 검색일자: 2022. 5. 3.



다달러<sup>7)</sup>이고 평생 기여한도가 4만캐나다달러<sup>8)</sup> 인 개인의 경우 생애 첫 주택 마련을 위해 FHSA (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계좌 개설을 제안함

- FHSA를 통해 얻은 소득은 비과세임
- 첫 주택 구매를 위해 FHSA에서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비과세임

- 2022년 예산안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액 환급을 2021년 대비 두 배 늘린 1만캐나다달러<sup>9)</sup>를 적용함

- 이를 통해 적격 주택 구매자가 최대 1,500캐나다달러<sup>10)</sup>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
- 적격 주택을 취득한 최초 주택 구매자는 2021년 기준 최대 750캐나다달러<sup>11)</sup>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음

-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적격 개조에 관한 세금 공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다세대 주택의 적격 개조에 대해 적정 경비의 15%와 5만캐나다달러<sup>12)</sup> 중 더 적은 금액을 다세대 주택 개조에 관한 세금 공제로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 적격 개조란 노인 또는 성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살 수 있는 보조 주거 단위를 만드는 것을 말함

- 특정 여행비용 및 이주비용이 발생하는 무역업자를 위해 최대 4,000캐나다달러<sup>13)</sup>의 노동이동 공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주거용 부동산을 12개월 미만 보유 후 매각한 사람에 대하여 양도 차익 전부를 사업수익으로 간주하고 과세함

<자료수집 및 조사: 이나현 변호사>

### [프랑스 - 신탁 보고 의무 관련 신규 지침 발표]

- 프랑스 국세청은 2022년 3월 30일, ‘신탁 보고 의무 신규 지침’을 발표하여 프랑스 연계 거점이 있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재산 보고 의무를 부과함<sup>14)</sup>

- 지침은 프랑스 연계 거점이 있는 수탁자의 신탁재산 보고 의무, 포트폴리오 투자의 보고 의무, 신탁 등록부에 접근 자격이 있는 전문가 목록 등

7) 2022년 5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88만 3,680원임

8) 2022년 5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41만 8,400원임

9) 2022년 5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85만 4,600원임

10) 2022년 5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7만 8,190원임

11) 2022년 5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3만 9,095원임

12) 2022년 5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920만 4,000원임

13) 2022년 5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4만 1,840원임

14) bofip.impots.gouv.fr., “30/03/2022 : PAT - DJC - Précisions relatives aux obligations déclaratives à la charge de l’administrateur d’un trust”, <https://bofip.impots.gouv.fr/bofip/13272-PGP.html/ACTU-2021-00243>, 검색일자: 2022. 4. 20.; EY, “French Tax Authority releases new guidelines impacting trust reporting requirements,” 2022. 4. 8., [https://www.ey.com/en\\_gl/tax-alerts/french-tax-authority-releases-new-guidelines-impacting-trust-reporting-requirements](https://www.ey.com/en_gl/tax-alerts/french-tax-authority-releases-new-guidelines-impacting-trust-reporting-requirements), 검색일자: 2022. 4. 20.

을 제시함

- 수탁자는 프랑스 연계 거점이 있는 경우에 일  
반적인 연간 보고 의무가 있고, 설립·청산 등  
의 사건에 기반한 특별 보고 의무가 있음
- 프랑스 연계 거점은 수탁자·위탁자·수익자 또  
는 위탁자로 간주되는 수익자가 프랑스 거주  
자이거나, 신탁의 자산 또는 권리가 프랑스 내  
에 소재하거나, 수탁자가 EU 역외에 설립 또는  
거주하는 등의 경우에 충족됨
- 포트폴리오 투자가 신탁 자산으로 포함되면,  
사건 기반 특별 보고 의무로서 그 증권의 판매  
및 구매는 수탁자에 의하여 보고되어야 함
- 2018년 부동산세 개정 시 수탁자의 신탁재산 보  
고 의무에 대한 규정이었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침을 발표함
- 지침은 신탁과 관련하여 프랑스 「조세일반법」  
1649AB조에 따른 신고의무와 적용방법이 규  
정된 「조세일반법」부록2의 제369조, 제369A  
조 및 제369B조의 규정을 수정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 [독일 - 중국 기업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지침 발표]

- 독일 재무부는 2022년 4월 5일, 중국 기업 배당금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지침(No. 2022/0342138)을  
발표함<sup>15), 16), 17)</sup>
  - 중국-독일 자본소득세 협정(China-Germany  
Income and Capital Tax Agreement(2014))에  
서는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회사의 배당금 원천  
징수만을 다루고 있음
  - 많은 독일투자자는 중국 증권거래소가 아닌 홍  
콩 증권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며, 독일 증  
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도 일부 존재함에  
따라 상기 회사들의 배당금 원천징수에 대한 규  
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중국 기업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부담은 보유  
기간과 중국주식이 보유·상장된 거래소에 따라 다  
를 수 있음
- 중국 증권거래소에 보유·상장된 주식 중 인민폐로

15) IBFD, Ministry of Finance Issues Guidance on Creditability of Withholding Tax on Dividends Distributed by Chinese Compani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4-05\\_de\\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4-05_de_1.html), 검색일자 2022. 4. 20.

16) BLOOMBERGLAW, Germany MOF Explains Taxation on Stock Dividends Under DTA With China,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2V23PAG00000?bc=W1siU2VhcmNoIjI3VsdHMlCl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NW1MGJhMmZlMjU4MWFIZjlyZjg3ZTc2M2YyZmlxNGUiXV---ff746bb5e77991909551ae90ffd48f5ec236162b&search32=LS7uog6ZO3Ek1wpGkS6tqw%3D%3DG\\_FQZow\\_biMqmq5xusVwD5MupwAHXDwCc-pUSx\\_LIm91rlWXJgEZuw19XD-lh8rric-WRxfQiZ5oLzFh3N20TryQNH5CtOlk\\_J-T2EeYgH3PXQ1-RUpd6fe2JC45GhtLpWoL9ub\\_3MJsj3i2oVBCR59otV4eUGFpLPXQ31L3v3b7AYiWB-yZG9Rbdof5HfEhuSH8hLqPUdhvqJmUQFtUhxDDjvtcH2EymgjrR6NHdmlM03y14Pznn8xtalKe](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2V23PAG00000?bc=W1siU2VhcmNoIjI3VsdHMlCl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NW1MGJhMmZlMjU4MWFIZjlyZjg3ZTc2M2YyZmlxNGUiXV---ff746bb5e77991909551ae90ffd48f5ec236162b&search32=LS7uog6ZO3Ek1wpGkS6tqw%3D%3DG_FQZow_biMqmq5xusVwD5MupwAHXDwCc-pUSx_LIm91rlWXJgEZuw19XD-lh8rric-WRxfQiZ5oLzFh3N20TryQNH5CtOlk_J-T2EeYgH3PXQ1-RUpd6fe2JC45GhtLpWoL9ub_3MJsj3i2oVBCR59otV4eUGFpLPXQ31L3v3b7AYiWB-yZG9Rbdof5HfEhuSH8hLqPUdhvqJmUQFtUhxDDjvtcH2EymgjrR6NHdmlM03y14Pznn8xtalKe), 검색일자: 2022. 5. 2.

17) 독일재무부, “Kapitalertragsteuer; Anrechnung von Quellensteuer, die auf Ausschüttungen von chinesischen Aktien erhoben wird, auf die deutsche Kapitalertragsteuer nach § 43a Absatz 3 EStG,”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MF\\_Schreiben/Steuerarten/Abgeltungsteuer/20220331-anrechnung-von-quellensteuer-die-auf-ausschuettingen-von-chinesischen-aktien-erhoben-wird-auf-die-deutsche-kapitalertragsteuer.pdf?\\_\\_blob=publicationFile&v=2](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MF_Schreiben/Steuerarten/Abgeltungsteuer/20220331-anrechnung-von-quellensteuer-die-auf-ausschuettingen-von-chinesischen-aktien-erhoben-wird-auf-die-deutsche-kapitalertragsteuer.pdf?__blob=publicationFile&v=2), 검색일자: 2022. 5. 2.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리 적용되며, 홍콩달러나 미국달러로 거래되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 중국 증권거래소에서 중국 통화인 인민폐로 거래되는 중국기업의 주식을 A주라 하며, A주의 배당금 지급 시에는 비거주자(개인)의 보유기간에 따라 원천징수세가 적용됨<sup>18)</sup>
  - 보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0% 적용
  - 보유기간이 1개월~1년인 경우 10% 적용
  -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 중국 증권거래소에서 미국달러나 홍콩달러로 거래되는 중국기업의 주식을 B주라 하며, B주 배당금 지급 시 중국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음

- 홍콩 증권거래소에 보유·상장된 중국 주식의 경우, 행정편의상 배당금 지급 시 일괄적으로 1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 홍콩 증권거래소에 보유·상장된 중국주식은 H주식이라 하며, 독일 개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H주식에 투자함
- 중국은 많은 국제주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담을 줄이고자, H주식의 경우 배당금 지급 시 일괄적으로 10%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

수함

- H주식의 배당금을 비거주 개인에게 지급할 경우 20%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나 중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들의 경우 제한세율(10%)이 적용됨에 따라 중국은 행정편의상 일괄적으로 10%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

-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 보유·상장된 중국 기업의 주식배당금 지급 시 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자료수집 및 정리: 서희진 회계사>

### [아일랜드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대응 조치 발표]

- 아일랜드 총리실(Department of Taoiseach)은 2022년 4월 13일,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휘발유, 가스 등 연료가격이 오르자 세금 감면 등의 추가 대응조치를 발표함<sup>19)</sup>
- 가스 및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5%에서 9%로 인하함
  - 동 조치로 4,600만유로<sup>20)</sup>의 세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가구당 약 50유로<sup>21)</sup>의 가스요금과 70유로<sup>22)</sup>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18) 독일 개인투자자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시스템(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system)을 통해서 A주를 취득할 수 있음  
 19) Tax Notes International, Ireland to Cut VAT on Gas and Electricity, Volume 106, 2022, p. 420  
 20) 2022년 5월 1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20억 9,034만원임  
 21) 2022년 5월 1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만 7,489원임  
 22) 2022년 5월 1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만 4,485원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휘발유, 디젤유 및 그린 디젤유에 대한 물품세 인하를 연장함
  -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 3월, 휘발유는 리터당 20센트, 디젤유는 리터당 15센트, 그린 디젤유는 리터당 2센트 인하하는 조치를 발표함
  - 3월 발표 당시에는 8월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금번 연장으로 오는 10월 예산안 발표 전까지 물품세 인하조치가 연장됨
- 한편 그린 디젤유 물품세에 대해서는 리터당 2.7센트 추가 인하함
- 끝으로 연료수당(fuel allowance)을 수령하는 약 37만 가구에는 5월 중 100유로의 연료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 [스페인 -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 관련 에너지 조세 조치 정부 승인]

- 스페인 정부는 2022년 4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스페인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에너지 조세와 관련한 긴급 조치를 승인함<sup>23)</sup>

- 전기요금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 세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함
  - 전기 에너지 생산에 대한 과세를 중지함
  - 청구서 발행기간 전월 전력시장의 1일 평균요금이 45유로<sup>24)</sup>/MWh 이상인 경우, 10kW 미만의 전력 사용량을 가진 고객과 사회적 취약계층<sup>25)</sup>에게 10%의 부가가치세 감면세율을 적용함
  - 전기요금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율이 5.11%에서 0.5%로 감면되며, 이때 과세대상 전기요금이 에너지 과세지침(2003/96)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율로 발생하는 금액보다 작은 경우 별도의 요율이 적용됨
    - 업무용 전기는 0.5유로<sup>26)</sup>/MWh, 비업무용 전기는 1.0유로<sup>27)</sup>/MWh임

- 일부 세금에 대한 환급주기를 단축하고 조세행정 관련 마감일 연장과 관련한 법령을 개정함
  - 상업용 가스에 대한 탄화수소 세금의 환급주기를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함
  - 기술적 사고에 기인한 만료 전 조세행정 업무의 마감일 연장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행정의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인 Law 39/2015와 관련하여, 심각한 사이버 공격 시에도 조세행정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

23) IBFD, "Spain - Government Approves Tax Measures to Combat Soaring Prices of Energy,"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4-05\\_es\\_1](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4-05_es_1), 검색일자: 2022. 4. 25.  
 24) 2022년 5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만 9,900원임  
 25) 2017년 10월 6일 Royal Decree 897/2017 조항에 근거한 사회적 취약계층임  
 26) 2022년 5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66원임  
 27) 2022년 5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32원임



### 을 개정함

- 해당 조치는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됨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생존 소유자가 자동으로 수령한다는 조건하에 상속세 면제가 적용됨

- 그리스와 조세지원협정이나 다자간 권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보유된 현금 예금과 계좌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 [그리스 - 공동 예금 및 투자 계좌에 대한 상속세 면제 도입]

- 그리스 정부는 2022년 3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소유 예금 및 투자계좌의 소유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 관련 규정을 제정함<sup>28)</sup>
  - 본 규정은 배우자가 공동으로 보유한 뮤추얼 펀드의 은행 계좌 및 주식에 대한 상속세 법안 개정을 촉구한 EU 집행위원회 공식 통지와 관련한 조치임
- 2022년 3월 28일 이후 납세 의무가 발생한 상속건에 대해, 공동계좌 소유자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상속세 면제가 이루어짐
  - 공동 소유의 예금계좌 또는 투자계좌에 보유된 자금을 공동계좌 소유자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

## [핀란드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추가 지침 발표]

- 핀란드 세무당국은 2022년 4월 8일,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 이자 및 로열티 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함<sup>29)</sup>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현행 과세규정을 요약하는 업데이트된 지침으로, 제한납세의 무자 및 원천징수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납세의무자) 비거주자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원천징수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핀란드 국내원천소득인 배당, 이자, 로열티소득에 대하여 제한납세의무를 가짐<sup>30)</sup>

28) IBFD, "Greece - Greece Introduces Inheritance Tax Exemption for Joint Depository Bank Accounts and Investment Accounts,"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3-30\\_gr\\_1](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3-30_gr_1), 검색일자: 2022. 4. 25.

29) News IBFD, "Tax Administration Issues Guidance on Administrative Obligations Imposed on Payer of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Paid to Non-Residents," 2022. 4.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4-12\\_fi\\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4-12_fi_1.html), 검색일자: 2022. 4. 21.

30) 핀란드 세무당국, "Lähdeveron periminen osingosta, korosta ja rojaltista sekä suorituksen maksajan velvollisuudet," [https://www.vero.fi/syventavat-vero-ohjeet/ohje-hakusivu/108027/l%C3%A4hdeveron-periminen-osingosta-korosta-ja-rojaltista-sek%C3%A4-suorituksen-maksajan-velvollisuudet/?utm\\_source=Nro%2024%20-%20Rajoitustusti%20verovelvolliset%20ja%20l%C3%A4hdeveron%20periminen%20%2F%20Rajoitustusti%20verovelvollisen%20osingot,%20korot%20ja%20rojaltit%20%2F%20Tilap%C3%A4ist%C3%A4%20suojelua%20hakeneella%20oikeus%20heti%20ty%C3%B6ntekoon&utm\\_medium=email&utm\\_campaign=#5-verovastuu](https://www.vero.fi/syventavat-vero-ohjeet/ohje-hakusivu/108027/l%C3%A4hdeveron-periminen-osingosta-korosta-ja-rojaltista-sek%C3%A4-suorituksen-maksajan-velvollisuudet/?utm_source=Nro%2024%20-%20Rajoitustusti%20verovelvolliset%20ja%20l%C3%A4hdeveron%20periminen%20%2F%20Rajoitustusti%20verovelvollisen%20osingot,%20korot%20ja%20rojaltit%20%2F%20Tilap%C3%A4ist%C3%A4%20suojelua%20hakeneella%20oikeus%20heti%20ty%C3%B6ntekoon&utm_medium=email&utm_campaign=#5-verovastuu), 검색일자: 2022. 4. 21.

- 원천징수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조세절차법 (1558/1995, VML)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전징수 의무를 가짐
  - 완납적 원천징수가 아니므로 기납부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세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음
- (예외사항) 원천징수세 면제 조항은 별도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자소득의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됨
- 수취인이 EEA 가입국 거주자인 경우 및 핀란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는 원천징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취인이 핀란드와 조세조약 체결국인 경우 조세조약이 선 적용됨
- (원천징수 및 신고) 비거주자 개인인 경우 30%, 비거주자 법인인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며, 세금신고서 등에 원천징수 내용을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 배당금의 경우 OmaVero<sup>31)</sup>에 전자제출하거나 세금신고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자 및 로열티 소득의 경우 소득정보시스템에 관한 법률 (laki tulotietojärjestelmästä)에 따라, 소득대장 (Tulorekisteriin)에 신고하여야 함
-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 [중국 - 보육비 소득공제 신설]

- 중국 국세청은 2022년 3월 29일, 부가항목 공제에 포함되는 보육비(childcare expenses) 소득공제를 신설함<sup>32)</sup>
  -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가 3살 이하 자녀의 보육에 지출한 비용은 매달 1,000위안<sup>33)</sup> 한도로 소득공제할 수 있음
    - 3살 이하 자녀를 보육하는 부모 둘 다 소득이 있을 시 보육비 소득공제를 균등하게 안분하거나 한 쪽에서 일괄공제도 가능함
    - 보육비 소득공제는 고시 [2022] No. 8에서 발표되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됨
- <자료수집 및 정리: 김치울 연구원>

### [인도네시아 -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2년 5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시행함<sup>34)</sup>
- 해당 조치로 인해 암호화폐 실물거래자 및 암호화폐 전자지갑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여 암호화

31) 핀란드 세무당국의 전자신고 시스템을 의미함

32) IBFD, "China Introduces Tax Deduction for Childcare," 2022. 3.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3-29\\_cn\\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3-29_cn_1.html), 검색일자: 2022. 4. 20.

33) 2022년 5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만 9,610원임

34) IBFD, "Indonesia To Impose Income Tax and VAT on Cryptoasset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4-11\\_id\\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4-11_id_1.html), 검색일자: 2022. 4. 20.



폐 거래를 촉진하는 전자상거래 제공자(전자상 거래사업자)는 암호화폐 과세대상 자산의 판매 자로부터 VAT를 징수하는 징수자로 지정됨

■ 해당 과세 시행으로 소득세법상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대상, 세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 암호화폐 실물거래자<sup>35)</sup>인 전자상거래관리자에 의해 제공된 전자설비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암호화폐 판매자에게 거래 가치에 0.1%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로서 최종 과세되며, 전자상거래관리자가 암호화폐 실물거래자가 아닌 경우 거래 가치에 0.2%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로서 최종 과세됨
- BAPPEBTI(인도네시아 상품 선물거래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은 전자상거래관리자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설비를 통해 암호화폐를 받거나 얻은 경우 거래 가치에 0.1%를, BAPPEBTI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거래관리자를 통한 경우 거래 가치에 0.2%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로서 최종 과세함
- 블록 보상 및 거래 검증 서비스에 대한 보상의 형태로 암호화폐 시스템에서 얻는 이익과 같은 암호화폐 채굴자의 소득에는 거래 가치에 0.1%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최종부과됨
- 전자상거래사업자의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설비 제공에 대한 소득에는 소득세법에 따

른 현행 세율이 적용됨

■ 또한 해당 과세 시행으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한 과세대상, 과세행위, 세율 등이 규정됨

- 암호화폐 자산 판매자에 의한 암호자산, 전자상 거래 거래사업자에 의해 암호자산 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설비 제공 용역, 암호화폐 채굴자에 의한 암호화폐 거래 확인 서비스 및 암호화폐 채굴자 그룹 관리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이러한 과세대상에 대해 과세되는 거래 행위에는 법정화폐로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것, 하나의 암호자산을 다른 암호자산으로 교환(스왑)하는 것, 암호자산을 상품(암호자산 제외) 및 서비스와 교환하는 것을 포함함
- 암호자산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자상거래 거래운영자가 암호화폐 실물거래자인 경우 암호자산의 거래 가치에 1%의 세율을, 전자상 거래 거래운영자가 암호화폐 실물거래자가 아닌 경우 암호자산의 거래 가치에 2%의 세율을, 암호화폐 자산 채굴 서비스에 의해 암호화폐 자산 채굴자가 받은 암호화폐 자산 가치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35) 인도네시아 상품 선물거래 규제 기관에서 정의하는 개념으로서, 암호화 자산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뜻함

**[호주 - 2022/23년 예산안 발표]**

- 호주 연방정부(Treasury)는 연방총선을 앞둔 2022년 3월 29일, 민생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포함된 2022/23년 연방 예산안을 발표함<sup>36)</sup>
  - 우선, 소득세 측면에서 기존의 중저소득층 세액공제(low and middle income tax offset)인 1,080호주달러<sup>37)</sup>에 더하여, 천만명 이상의 중저소득층에게 생활비를 공제해주는 혜택(420호주달러<sup>38)</sup>이 새롭게 포함됨<sup>39)</sup>
    - 이를 통해 연소득 12만 6천호주달러<sup>40)</sup> 이하의 소득자들은 최대 1,500호주달러<sup>41)</sup>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3천호주달러<sup>42)</sup>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해당 혜택은 2021/22년 세금신고를 하게 되는 2022년 7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함
  - 유가 급등으로 시민주담이 가중되자, 휘발유·경유에 대한 소비세(리터당 0.44호주달러<sup>43)</sup>)를 향후

6개월간 절반(0.22호주달러<sup>44)</sup>)으로 감면하기로 함  
- 이를 통해 리터당 0.22호주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차량 두 대를 보유한 가정은 연평균 약 700호주달러<sup>45)</sup>의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힘

- 한편 법인세 측면에서는 특허박스 제도의 확장 적용,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 등이 마련될 예정임<sup>46)</sup>
  - 먼저 농업 및 저탄소 기술 분야(agriculture and low-emissions technology sectors)로 특허박스 제도를 확장 적용할 예정임
    - 2022년 3월 29일 이후 승인되거나 발행된 특허에 대해 17%의 세율<sup>47)</sup>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연도부터 적용될 것임
  - 또한 호주 의학 및 바이오기술 혁신 분야에도 특허박스 제도가 확장 적용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2021년 5월 11일 이후 승인되거나 발행된 특허에 대해서도 17%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36) 호주 재무부, "Portfolio Budget Statements 2022-23", <https://treasury.gov.au/publication/portfolio-budget-statements-2022-23>, 검색일자: 2022. 4. 25.  
 37) 2022년 4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7만원임  
 38) 2022년 4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만원임  
 39) Tax Notes International, *Australian Budget Envisages Lower Fuel And Personal Income Taxes*, Volume 106, 2022, pp. 108-109  
 40) 2022년 4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1,326만원임  
 41) 2022년 4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5만원임  
 42) 2022년 4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0만원임  
 43) 2022년 4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6원임  
 44) 2022년 4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8원임  
 45) 2022년 4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3만원임  
 46) IBFD, "Australia Announces Tax Breaks and Expansion of Patent Box Regime in Federal Budget for 2022/23", 2022. 3. 3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3-30\\_au\\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3-30_au_1.html), 검색일자: 2022. 4. 25.  
 47) 매출 5천만호주달러 이상인 기업의 법인세율은 30%임



- 5천만호주달러 이하의 연 매출을 기록한 중소기업(Small Businesses)에 대해 기술투자비용 공제(Technology investment boost) 및 종업원 훈련비용 공제(Skills and training boost)를 제공할 예정임
  - 디지털 전환 등에 사용한 비용(사이버 보안시스템, e-인보이스 도입,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구독 등) 및 관련 자산 구입비용에 대해 20%의 추가 비용 공제가 가능할 예정
  - 중소기업이 제공한 종업원 훈련비용에 대해 20%의 추가 비용 공제가 가능할 예정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 [OECD - 디지털 플랫폼 보고 의무를 위한 표준 IT 형식 발표]

- OECD는 2022년 3월 29일, ‘디지털 플랫폼 정보(Digital Platform Information: DPI) XML 스키마 및 사용자 지침’을 발표함<sup>48)</sup>
  - ‘DPI XML 스키마 및 사용자 지침’은 플랫폼 운영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모델 규정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전자 보고 및 교환을 허용하는 표

준화된 IT 형식을 제공함

- 공유 및 직(gig) 경제의 판매자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거래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납세자가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에게 정보 보고 의무를 부과한 것임
- OECD는 2020년 7월 3일, ‘공유 및 직 경제의 판매자와 관련한 플랫폼 운영자의 보고 모델 규정’을 발표하여, 디지털 플랫폼에 이를 통하여 제공하는 숙박·이동·개인서비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음

- DPI XML 스키마는 모델 규정의 확장된 범위를 반영하며 OECD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모델 보고 규정과 EU 행정협력지침(DAC 7)에 따라 IT에 기반한 교환을 기술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것임

- OECD는 2021년 6월 22일, 관할국이 위 모델 규정의 확장된 범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택적인 모듈을 제공하였고, 정보교환은 다자간 권한있는 당국 간 협정(MCAA)의 형식으로 국제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운영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48) OECD, “Model Rules for Reporting by Platform Operators with respect to Sellers in the Sharing and Gig Economy,” <https://www.oecd.org/ctp/exchange-of-tax-information/model-rules-for-reporting-by-platform-operators-with-respect-to-sellers-in-the-sharing-and-gig-economy.htm>, 검색일자: 2022. 4. 22.; Bloomberg Law, “OECD Creates IT Format for Online Platforms to Share Tax Data,” 2022. 3. 29.,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ED4USR4000000?bc=W1siU2VhcmNoIFJlc3VsdHMlLCV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OTgzZjI3MWFjMzRlZjk1ZDRiZGE2YmEYMTcyODgyNDgiXV0-2fef9e57d7d7e85edba6c14cb82bde35b3f8604b>, 검색일자: 2022. 4. 20.

**[OECD -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 및 CRS 수정안 관련 의견 수렴]**

■ OECD는 2022년 3월 22일,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 및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에 대한 의견 수렴안을 발표함<sup>49)</sup>

- 의견 수렴안은 금융시장에서의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인한 투자 및 지불 방식 변동에 대응하여,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 및 CRS 수정사항과 관련된 부분으로 구성됨
  - 가상자산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계좌에 보관된 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CRS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이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음
- 관련 의견제출 마감일은 2022년 4월 29일이며, OECD는 2022년 10월 새로운 규칙에 대한 제안을 발표할 예정임

■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는 가상자산 교환의 관련 거래 보고의무, 절차 규정 및 여타 기술적인 제안 사항을 담고 있음

-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는 가상자산을 교환

하는 중개인에 대하여 네 가지의 관련 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정보의 자동교환을 제안함

- 가상자산과 법정 화폐 사이의 교환
- 가상자산의 1개 이상 형식 사이의 교환
- 보고 가능한 소매 지불 거래
- 가상자산 이전

-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가상자산 사용자를 식별하고, 보고 목적을 위한 관련 조세 관할국을 결정하는 등 절차 규정을 제공함
- 이외에도 가상자산 보고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한 기술적인 제안을 담고 있으며, 기업이 가상자산 사용자인 경우의 절차 규정 및 실질적인 이행 요건 등이 이에 포함됨

■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와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CRS<sup>50)</sup>의 범위에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상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사항을 제안함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예금계좌에 해당하여 중앙은행이 아니라 고객의 은행이 보고하여야 함

49) OECD,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and Amendments to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https://www.oecd.org/tax/exchange-of-tax-information/public-consultation-document-crypto-asset-reporting-framework-and-amendments-to-the-common-reporting-standard.pdf>, 검색일자: 2022. 4. 20., EY, "OECD releases Consultation document: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and Amendments to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2022. 4. 12., [https://www.ey.com/en\\_gl/tax-alerts/oecd-releases-consultation-document-crypto-asset-reporting-framework-and-amendments-to-the-common-reporting-standard](https://www.ey.com/en_gl/tax-alerts/oecd-releases-consultation-document-crypto-asset-reporting-framework-and-amendments-to-the-common-reporting-standard), 검색일자: 2022. 4. 20.

50) OECD는 미국 FACT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2014년 CRS를 처음 도입하였고, 은행 및 여타 금융기관이 역외 거주 고객을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을 과세관청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과세관청은 해당 정보를 다른 관할국과 교환함



- 가상자산 또한 금융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및 기존 금융기관에 대하여 연말에 고객이 보유하는 가상자산의 가치 및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 하에서의 거래를 보고하도록 요구함
  - 다만 가상화폐를 보유한 디지털 지갑이 기존 금융계좌와 동등하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음
- 가상자산의 정의에 금융 자산의 정의 변경 및 투자기업의 정의를 추가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542)을 발표하였음<sup>51), 52), 53)</sup>

- EU회원국은 최소 15% 부가세를 적용해야 하지만, EU VAT 지침(2006/112/EC) 부록 III에 나열된 항목에 대해서는 5% 이상의 감면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기본생필품에 대해서는 0% 또는 0%와 5% 사이의 초감면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sup>54)</sup>
- 회원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안을 채택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관련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 [EU - 부가가치세 감면세율 적용범위 조정]

- 유럽 이사회는 2022년 4월 5일 의료시스템, 탈탄소화정책 및 디지털 경제 전환 약속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감면세율을 적용하는 지침(Council Directive 2022/

- 화석연료 및 화학비료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각각 2030년 및 2032년부터 감면세율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함

- 의료시스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부가세 감면세율 적용 대상 의약품과 의료장비의 범위를 확대함
- 피임 및 여성 위생 보호에 사용 되는 제품을 포

51) IBFD, "EU Council Adopts Major Overhaul of VAT Reduced Rat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4-06\\_e2\\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4-06_e2_2.html), 검색일자: 2022. 4. 20.

52) Baker McKenzie, "European Union: EU Council approves fundamental overhaul of VAT rates," <https://insightplus.bakermckenzie.com/bm/tax/europe-eu-council-approves-fundamental-overhaul-of-vat-rates>, 검색일자: 2022. 5. 3.

53) European Union, "Council Directive (EU) 2022/542 of 5 April 2022 amending Directives 2006/112/EC and (EU) 2020/285 as regards rates of value added ta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0J.L.\\_2022.107.01.0001.01.ENG&toc=OJ%3AL%3A2022%3A107%3ATOC](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0J.L._2022.107.01.0001.01.ENG&toc=OJ%3AL%3A2022%3A107%3ATOC), 검색일자: 2022. 5. 3.

54) BLOOMBERGLAW, EU Ministers Finalize Reduced VAT Update, Calais Tax-Free Zone,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64RN8NO000000?bc=W1siU2VhcmNoIFJlc3VsdHMlLCVhcHJvZHVhdC90YXgvc2VhcmNoL3Jlc3VsdHMvMTk0YjIhYjAxZGE4YTEwOWU1NzFIN2MzMGZkOGVhZWYiXV0-55574f0e6b540ee8c6ced296d30279c97e17652b&search32=qJ78l3xpdIvS4tz09mO4\\_A%3D%3D4HAJj5vAxuKkRlXZffr2kw-BEYQ7pOep0e208rsu3FvqIW6AOYuk41a-TMWEIHTCvfHQf20FFwNJ2PhWpJU8QZ0DscDfXDXiO\\_y8OllwI9Z7YSDzAgfamWxy1kT7BGtk-EZGR3CpW9xy3sgebCNxggV3vH57q2vwwC0xETxPalrFjs67yFthap471hzJpEkUPKces9ipEaqZlaYGR1eNodKbB1carwS2zk\\_a04Tr3U1aCX7TJPPXWCXHZ-hUABMahVWQvMnVU0zEaC6Fc4TN5g51Usb1ZJ2jYei9URW7Mm1aE7ARs720QZylZc7ZnFi-e2cpCuK-Ph7sI3\\_ZxF9u2Nz6YF6wHtdcgvYXLADh68%3D](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64RN8NO000000?bc=W1siU2VhcmNoIFJlc3VsdHMlLCVhcHJvZHVhdC90YXgvc2VhcmNoL3Jlc3VsdHMvMTk0YjIhYjAxZGE4YTEwOWU1NzFIN2MzMGZkOGVhZWYiXV0-55574f0e6b540ee8c6ced296d30279c97e17652b&search32=qJ78l3xpdIvS4tz09mO4_A%3D%3D4HAJj5vAxuKkRlXZffr2kw-BEYQ7pOep0e208rsu3FvqIW6AOYuk41a-TMWEIHTCvfHQf20FFwNJ2PhWpJU8QZ0DscDfXDXiO_y8OllwI9Z7YSDzAgfamWxy1kT7BGtk-EZGR3CpW9xy3sgebCNxggV3vH57q2vwwC0xETxPalrFjs67yFthap471hzJpEkUPKces9ipEaqZlaYGR1eNodKbB1carwS2zk_a04Tr3U1aCX7TJPPXWCXHZ-hUABMahVWQvMnVU0zEaC6Fc4TN5g51Usb1ZJ2jYei9URW7Mm1aE7ARs720QZylZc7ZnFi-e2cpCuK-Ph7sI3_ZxF9u2Nz6YF6wHtdcgvYXLADh68%3D), 검색일자: 2022. 5. 3.

함하여 의료 및 수의학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추가됨

- 의료장비, 가전제품, 장비, 품목 및 보조 기구와 같이 일반적으로 의료에 사용되는 품목 등이 추가되었으며, 이 범주에 대해서는 초감면세율도 적용 가능하도록 함
  
- 탈탄소화 정책 지원을 위해 태양광 패널, 전기 자동차,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서비스와 같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감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태양광 패널의 경우 0% 초감면세율 적용 가능함
  
- 디지털 경제 전환 지원을 위해 인터넷 접근 서비스에 대해 감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2025년까지 문화 및 스포츠 이벤트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감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서희진 회계사>



## 주요국의 재정동향



### EU

■ EU 집행위, 실업위험완화긴급지원(SURE) 반기 보고서 발표(2022. 3. 24.)<sup>1)</sup>

- 집행위는 실업위험완화긴급지원(SURE; Support to mitigate Unemployment Risks in an Emergency)의 집행 및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연 2회 작성하여 이사회, 의회 등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3차 보고서를 발표
- 현재까지 19개 회원국, 944억유로가 승인되었고 이 중 약 900억유로를 지원
  - 2020년에 근로자 3,100만명(자영업자 800만명 포함)과 기업 250만개를 지원하였는데 이는 수혜 회원국 근로자의 약 30%, 기업의 약 25%에 해당하며, 수혜 대상은 소기업과 도소매·숙박·식품서비스·제조업에 집중되었음
  - 2021년에도 근로자 300만명과 기업 40만개를 지원하였고 지난 보고서 이후 헝가리의 신규 조치에 대한 지원을 승인

- 본 정책이 팬데믹에 따른 피해 완화와 회복 지원에 성공적이었다는 지난 두 보고서의 분석을 업데이트하고 결론을 재확인
- 예비적 분석<sup>2)</sup>에 따르면 2020년 수혜 회원국 내 150만명의 실직을 효과적으로 예방했을 것으로 평가
  - 수혜 회원국의 2020년 실업률 상승은 예상보다 현저히 낮았고, 2020년 SURE 수혜 금액이 클수록 실업률 증가가 완만했음
  - 이러한 노동시장 조치, 특히 단기근로계획은 다른 정책 대응과 함께 예상 실업률 상승과 비교하여 SURE 수혜 회원국의 실업률을 약 1%p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약 150만명에 해당
- SURE 프로그램이 수혜국들의 단기근로지원 정책 채택과 고용유지정책 연장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기존 설문 결과에 덧붙여, 최근 설문<sup>3)</sup>에서 EU 시민들의 동 정책에 대한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또한 EU가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SURE 사회적 채권(SURE social bond)을 직접 발행해 저리 조달함으로써 회원국들이 82억유로의 비용을 절감<sup>4)</sup>했다고 추정

1) EU 집행위, SURE: Third report shows continued success in protecting jobs and supporting recovery, 2022. 3. 24.,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1987](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1987), 검색일자: 2022. 4. 22.

2) 보고서는 SURE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반사실적' 시나리오를 설계하기 어려우며, 생산과 고용 간의 관계에 SURE 외 여러 요인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첨언

3) EU 집행위 여론조사기관(Eurobarometer)의 2021년 12월 조사에서 회원국이 사람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EU가 대출을 제공한 것이 좋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82%가 그렇다고 응답

4) 회원국들이 SURE 대출을 하지 않고 동일한 일자에 SURE 채권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채권을 발행했을 것으로 가정했을 때의 각 SURE 채권의 발행 가격과 이 반사실적 채권의 발행 가격 간 차이를 고려해 계산

■ EU 이사회,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발표(2022. 3. 23., 4. 13.)<sup>5)</sup>

- EU 외교 이사회는 유럽평화기금(European Peace Facility)\*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력 강화 및 러시아 군사 공격으로부터의 민간인 보호 지원 규모를 기존 5억유로에서 15억유로로 확대

\*글로벌 안보 제공자로서의 EU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3월 대체-신설된 예산 외(off-budget)<sup>6)</sup> 기금으로, 2021~2027년 최대 56억 9천만유로(경상가격 기준)가 채택됨

- 개인보호 장비, 응급 키트, 연료, 방어 목적의 살상(lethal equipment)<sup>7)</sup> 및 비살상 군사 장비 등 공급에 사용될 예정

■ EU 통계청, 2021년 4분기 재정통계 발표(2022. 4. 22.)<sup>8)</sup>

- (재정수지) 유로지역<sup>9)</sup>과 EU 27개국의 2021년 4분기 GDP 대비 일반정부 계절조정 재정수지는 각각 -3.6%, -3.5%로 전 분기 대비 유로지역은 개선, EU는 유지됨
  - 유로지역의 GDP 대비 적자 감소는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고 GDP 규모가 증가한 것에 기인

-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정책 대응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재정수지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하회

- (정부채무) 유로지역과 EU 27개국의 2021년 4분기 말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는 각각 95.6%, 88.1%로 전 분기 대비 각각 1.9%p, 1.8%p 하락

- 두 지역 모두 GDP가 증가한 가운데 유로지역은 채무 수준 자체가 감소한 반면, EU는 채무가 소폭 증가

- 채무 비율이 높은 회원국은 그리스(193.3%), 이탈리아(150.8%), 포르투갈(127.4%) 순이며, 낮은 회원국은 에스토니아(18.1%), 불가리아(24.4%), 룩셈부르크(25.1%) 순으로 집계됨

- 전 분기 대비 슬로바키아(1.8%p), 체코(1.5%p) 라트비아(1.3%p) 등 7개국은 채무 비율이 상승한 반면 독일은 유지, 그리스(-8.3%p), 키프로스(-5.4%p), 슬로베니아(-5.0%p) 등 19개국은 하락

5) EU 이사회, EU support to Ukraine: Council doubles funding under the European Peace Facility, 2022. 3. 23.,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3/23/eu-support-to-ukraine-council-doubles-funding-under-the-european-peace-facility/>, 검색일자: 2022. 4. 22.; \_\_\_\_\_, EU support to Ukraine: Council agrees on third tranche of support under the European Peace Facility for total €1.5 billion, 2022. 4. 13.,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4/13/eu-support-to-ukraine-council-agrees-on-third-tranche-of-support-under-the-european-peace-facility-for-total-1-5-billion/>, 검색일자: 2022. 4. 22.

6) 연간 예산 추정액에 맞춰 회원국들이 매년 기여금을 분담

7)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번 지원이 EU가 제3국에 살상 장비를 제공한 첫 사례이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

8)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6% of GDP in the euro area and 3.5% of GDP in the EU, 2022. 4. 22.,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4497742/2-22042022-CP-EN.pdf>, 검색일자: 2022. 4. 25.; \_\_\_\_\_, Government debt down to 95.6% of GDP in euro area, 2022. 4. 22.,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4497745/2-22042022-BP-EN.pdf>, 검색일자: 2022. 4. 25.

9) EU 회원국이면서 유로화를 자국 통화로 사용하는 19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벨기에,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IMF

■ 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 발표(2022. 4. 19.)<sup>10)</sup>

- (동향)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전망이다
  - 오미크론 변이의 단기적 영향 이후 2분기부터 글로벌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및 러시아 제재 등의 영향으로 1월 전망 이후 크게 악화됨
- (전망)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1년 6.1%에서 2022년과 2023년 3.6%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22년 1월 전망 대비 각각 -0.8%p, -0.2%p)
  - 2023년 이후에는 중기적으로 약 3.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sup>11)</sup>되며, 고용과 생산량은 2026년까지 팬데믹 이전 추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선진국) 2021년 5.2%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점차 둔화되어 2022년 3.3%, 2023년은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22년 1월 전망 대비 각각 -0.6%p, -0.2%p)
    - 유럽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 공급망 훼손 등에 따라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 1월에 이미 하향 조정된 미국과 캐나다는 소폭 하향 조정

-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2021년 6.8%에 이어 2022년 3.8%, 2023년 4.4% 성장할 것으로 예상(22년 1월 전망 대비 각각 -1.0%p, -0.3%p)
  - 물가 상승, 타이트한 글로벌 금융상황, 관광 감소 등으로 대부분 성장률이 하락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산유국은 유가 상승으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됨
- (위험) 비정상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쟁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 하방 리스크 확대
  - 전쟁 악화로 공급망 훼손, 에너지 가격 상승,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난민에 따른 사회적 불안, 코로나 신종 변이 재확산 우려, 제로 코로나 전략으로 인한 중국 성장둔화 장기화, 금리 인상 및 부채부담 증가 등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
- (정책권고) 전쟁 노출도, 팬데믹 상황 및 회복 강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 차원의 정책과 다국간 대처가 중요함
  - (재정정책) 팬데믹 기간 동안의 재정확장 이후 부채관리는 필요하나, 코로나 및 전쟁 취약층에 대한 지원축소는 신중해야 하며,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선별지원 등으로 중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함
  - (통화정책) 각 국 여건에 맞는 통화정책 및 기대인플레이션 관리, 선진국 통화긴축에 대응하기 위해 신흥국의 금리인상 확대도 고려

10)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2/04/19/world-economic-outlook-april-2022>, 검색일자: 2022. 4. 20.

11) 단, 이 예측은 분쟁이 우크라이나에 국한되어 있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는 제외하며(2022년 3월 31일까지 발표된 러시아 에너지 및 금융 조치로 인한 영향은 기준선에 포함), 팬데믹으로 인한 보건 및 경제적 영향은 2022년 동안 감소할 것으로 가정한 전망이다

<표 1> 세계 경제 전망

구분	실적치	전망치		'22년 1월 전망 대비 차이 <sup>1)</sup>		'21년 10월 전망 대비 차이 <sup>1)</sup>	
	2021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세계경제	6.1	3.6	3.6	-0.8	-0.2	-1.3	0.0
선진국	5.2	3.3	2.4	-0.6	-0.2	-1.2	0.2
미국	5.7	3.7	2.3	-0.3	-0.3	-1.5	0.1
유로지역	5.3	2.8	2.3	-1.1	-0.2	-1.5	0.3
독일	2.5	2.1	2.7	-17	0.2	-2.5	1.1
프랑스	7.0	2.9	1.4	-0.6	-0.4	-1.0	-0.4
이탈리아	6.6	2.3	1.7	-1.5	-0.5	-1.9	0.1
일본	1.6	2.4	2.3	-0.9	0.5	-0.8	0.9
영국	7.4	3.7	1.2	-1.0	-1.1	-1.3	-0.7
캐나다	4.6	3.9	2.8	-0.2	0.0	-1.0	0.2
기타선진국 <sup>2)</sup>	5.0	3.1	3.0	-0.5	0.1	-0.6	0.1
한국	4.0	2.5	2.9	-0.5	0.0	-0.8	0.5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6.8	3.8	4.4	-1.0	-0.3	-1.3	-0.2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아시아	7.3	5.4	5.6	-0.5	-0.2	-0.9	-0.1
중국	8.1	4.4	5.1	-0.4	-0.1	-1.2	-0.2
인도 <sup>3)</sup>	8.9	8.2	6.9	-0.8	-0.2	-0.3	0.3
아세안-5 <sup>4)</sup>	3.4	5.3	5.9	-0.3	-0.1	-0.5	-0.1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유럽	6.7	-2.9	1.3	-6.4	-1.6	-6.5	-1.6
러시아	4.7	-8.5	-2.3	-11.3	-4.4	-11.4	-4.3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6.8	2.5	2.5	0.1	-0.1	-0.5	0.0
저소득 개도국	4.0	4.6	5.4	-0.7	-0.1	-0.7	-0.1
세계 무역(재화 및 서비스)	10.1	5.0	4.4	-1.0	-0.5	-1.7	-0.1
수입 - 선진국	9.5	6.1	4.5	-0.2	0.0	-1.2	0.4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11.8	3.9	4.8	-1.7	-0.9	-3.2	-0.9
수출 - 선진국	8.6	5.0	4.7	-1.1	0.0	-1.6	0.7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12.3	4.1	3.6	-1.7	-1.5	-1.7	-1.4
원자재 가격 (미 달러)							
오일 <sup>5)</sup>	67.3	54.7	-13.3	42.8	-5.5	56.5	-8.3
비연료(세계 원자재 수입 가중치에 기반한 평균)	26.8	11.4	-2.5	8.3	-0.6	12.3	-1.0
소비자 물가							
선진국 <sup>6)</sup>	3.1	5.7	2.5	1.8	0.4	3.4	0.6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sup>7)</sup>	5.9	8.7	6.5	2.8	1.8	3.8	2.2

주: 실질실효환율은 2022년 2월 7일부터 3월 7일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간주

1) January 2022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October 2021 World Economic Outlook

2) G7국가들(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과 유로지역 국가들 제외

3) 인도의 실적치, 전망치 데이터는 회계연도 기준이며, 2011년부터 GDP는 2011/12년 회계연도를 기준 년으로 삼은 시장가격 기준 GDP

4)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5) 영국 브렌트(Brent), 두바이 파테(Fateh), 미 서부텍사스 중질유(Intermediate crude oil)의 단순평균가격. 2021년 평균 유가는 배럴당 69.07달러, 선물 시장에 기초한 가격은 2022년 106.83달러, 2023년은 92.63달러

6) 2022년, 2023년 인플레이션은 각각 5.3%, 2.3%(유로지역), 1.0%, 0.8%(일본), 7.7%, 2.9%(미국)

7) 베네수엘라 제외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2, Table 1.1.; 한국은 WEO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추출



- (미래대비) 디지털화 등을 위한 교육, 고용안 전망 확충, 탄소가격 설정, 배출량 감축 목표 상향 등 기후변화대응 강화

■ IMF, Fiscal Monitor 보고서 발표(2022. 04. 20.)<sup>12)</sup>

-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계는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과 글로벌 상품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과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재정정책 운영 환경이 급변함
- (동향) 팬데믹 초기에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한 후 경제가 회복되고, 예외적 지원을 철회하면서 2021년 세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6.4%, 일반정부 채무는 97.0%를 기록(2020년 -9.9%, 99.2%)
  - 2021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선진국에서 -7.3%, 신흥 시장국에서 -5.3%, 저소득 개도국에서 -4.9%에 달했음
- (전망) 2022년 세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4.9%, 채무는 94.4%로 전망됨
  - 팬데믹 관련 재정 조치가 점차 종료되어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1.5%p 개선되었으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치솟은 전 세계 국가채무 또한 2022~24년동안 GDP의 약 94% 정도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 전 세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전쟁의 결과를 알 수 없고 불확실성이 커져 재정수지는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위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례적으로 높은 가운데, 하방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음

- 전쟁, 상품 가격의 높은 변동성, 인플레이션 및 차입 비용 상승 등이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음
- 장기화되고 심화된 전쟁은 원자재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인플레이션을 더욱 압박하여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음
- 또한 국가 간에 백신 접종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신종 변이 등의 출현 등 팬데믹에 대한 위험 요소가 상존

- (정책권고) 재정정책은 향후 전망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를 갖춰야함

-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 러시아 제재의 영향이 강한 국가는 재정정책으로 인도적 위기와 경제적 혼란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재정지원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취약층이나 우선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제한된 재정 여력과 재정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선택한 정책을 시기적절하고 목표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

■ IMF, 유럽 지역 경제 전망발표(2022. 4. 20.)<sup>13)</sup>

12) IMF,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M/Issues/2022/04/12/fiscal-monitor-april-2022>, 검색일자: 2022. 4. 21.

13)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for Europe*, April 202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REO/EU/Issues/2022/04/20/regional-economic-outlook-for-europe-april-2022>, 검색일자: 2022. 4. 21.

- (동향) 전쟁은 아직 팬데믹에서 회복 중인 유럽에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전쟁 이전에 유럽의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은 2020년 GDP 손실의 상당 부분을 회복했지만 (2021년 각각 5.6%와 6.7% 성장), 민간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 추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추세임
- (전망) 2022년 GDP 성장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2022년 1월 전망보다 감소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훨씬 더 가파른 감소가 예상됨(우크라이나 3.6%→ -35.0%, 러시아 2.8%→ -8.5%)
  - (위험) 장기화된 전쟁은 난민의 수를 증가시키고, 공급망 병목 현상을 악화시키며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가하고 생산량 손실을 심화시킬 것임
    - 가장 우려되는 것은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중단이며, 이는 특히 중부 및 동유럽의 많은 국가에 상당한 생산 손실을 초래할 것임
  - (정책권고) 경제적 측면에서 공급 쇼크 요인인 전쟁은 팬데믹 관련 현안들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전쟁으로 촉발된 충격에 대한 점진적 조정이 필요함

<표 2> 재정 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GDP 대비 비중)

구분	실적치	전망치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재정수지							
세계	-6.4	-4.9	-4.0	-3.9	-4.0	-4.0	-3.9
선진국	-7.3	-4.3	-2.9	-2.8	-3.0	-3.0	-3.0
미국	-10.2	-4.8	-4.0	-4.4	-5.2	-5.1	-5.2
유로존	-5.5	-4.3	-2.5	-2.0	-1.8	-1.7	-1.7
일본	-7.6	-7.8	-3.5	-2.5	-2.5	-2.6	-2.8
영국	-8.0	-4.3	-2.3	-1.5	-1.4	-1.3	-1.0
캐나다	-4.7	-2.2	-0.8	-0.7	-0.5	-0.4	-0.3
기타	-2.6	-1.7	-0.9	-0.6	-0.5	-0.4	-0.3
한국	-0.6	-1.6	-1.1	-1.1	-1.2	-1.1	-1.2
신흥 시장국	-5.3	-5.7	-5.5	-5.4	-5.3	-5.3	-5.2
국가채무							
세계	97.0	94.4	94.1	94.5	95.0	95.4	95.5
선진국	119.8	115.5	113.7	113.1	113.0	112.9	112.7
미국	132.6	125.6	123.7	124.0	125.1	126.2	127.4
유로존	96.0	95.2	93.4	92.1	91.0	90.0	88.9
일본	263.1	262.5	258.3	258.7	259.4	260.5	261.8
영국	95.3	87.8	82.7	79.6	76.3	73.4	70.7
캐나다	112.1	101.8	98.5	96.2	93.4	90.5	87.7
한국	49.8	52.0	53.3	55.1	56.8	58.3	59.8
신흥 시장국	66.1	67.4	69.8	72.1	74.2	75.9	77.2

주: 미달러로 환산된 명목 GDP 기준. 2021년 수치는 대부분 확정되지 않은 잠정치임

출처: IMF, Fiscal Monitor, April 2022, Table 1.1, 1.2 편집, 한국은 statistical appendix Table A1, A7 편집



### 미국

#### [예산·결산 등]

■ 관리예산처(OMB), 2023 회계연도(2022. 10.~ 2023. 9.) 대통령 예산안 발표(2022. 3. 28.)<sup>14)</sup>

- (예산기조 및 주요정책) ① 국내·외 안보 및 안전 강화, ② 더 나은 미국 건설을 위한 투자, ③ 법인세율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sup>15)</sup>을 통한 재정책임 구현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편성
- (경제전망) 2022년 실질성장률은 전년(5.5%) 대비 1.3%p 감소한 4.2%로 전망하며, 이후 2025년에 저점(2.0%) 기록 후 장기적으로 2.3% 전망
  - 2022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1.5%p 감소한 3.9%, 2023년에 저점(3.6%) 기록 후 2025년

부터 장기적 수준으로 3.8% 전망

- (수입) FY2023 재정수입은 올해(FY2022) 추정치(4조 4,370억달러) 대비 4.5%(2,010억달러) 증가한 4조 6,380억달러(GDP 대비 18.1%) 전망
  - 올해(FY2022) 재정수입은 전년(FY2021) 실적치 대비 약 9.6%(3,900억달러) 증가한 4조 4,370억달러(GDP 대비 18.3%) 추정
- (지출) FY2023 재정지출은 올해(FY2022) 추정치(5조 8,520억달러) 대비 약 1.0%(600억달러) 감소한 5조 7,920억달러(GDP 대비 22.7%) 계획
- (국가채무) FY2023 연방정부 채무<sup>16)</sup>(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도(24조 8,360억달러) 대비 4.7% 증가한 26조 330억달러 전망

■ 의회예산처(CBO), FY2022 상반기(2021. 10. 1.~2022. 3. 31.) 재정 결산 추정치 발표(2022. 4. 8.)<sup>17)</sup>

<표 3> FY2023 대통령 예산안 경제전망

(단위: 십억달러, %)

구분(CY <sup>1)</sup> )	실적			전망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2032
GDP 명목규모	20,580	21,433	20,894	22,899	24,631	25,853	····	37,437
실질 GDP성장률	2.9	2.2	-3.4	5.5	4.2	2.8	····	2.3
CPI (Urban) <sup>2)</sup>	2.4	1.8	1.2	4.6	4.7	2.3	····	2.3
실업률	3.9	3.7	8.1	5.4	3.9	3.6	····	3.8

주: 1) CY = Calendar Year

2) 계절조정된 도시소비자 물가 지수

출처: OMB, Fiscal Year 202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Table S-9), 2022. 3. 28.

14)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3/28/statement-by-president-joe-biden-on-the-fy-2023-budget/>, 검색일자: 2022. 4. 21.

15) 법인세율은 28%(현행 21%)로 인상 계획, 부유세의 경우 전체가구 중 상위 0.01%를 대상으로 최저세율 20% 신설 계획

16) 정부 내부거래 제외 → 정부 내부거래(debt held by Government accounts)를 제외한 연방정부 채무는 미국 채무의 주요지표로 쓰임

17) CBO, <https://www.cbo.gov/system/files/2022-04/57909-MBR.pdf>, 검색일자: 2022. 4. 21.

<표 4> 미국 재정전망

재정 전망	실적				추정	전망						
	2008	200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2031	2032	2023~2032
예산총량(십억달러)												
수입	2,524	2,105	3,421	4,047	4,437	4,638	4,874	5,076	...	6,795	7,083	58,264
지출	2,983	3,518	6,550	6,822	5,852	5,792	6,075	6,406	...	8,477	8,867	72,685
재정적자	459	1,414	3,129	2,775	1,415	1,154	1,201	1,330	...	1,682	1,784	14,421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5,803	7,544	21,017	22,284	24,836	26,033	27,271	28,644	...	37,727	39,542	-
경제규모 (GDP)	14,441	14,119	21,000	22,358	24,256	25,567	26,694	27,787	...	35,498	37,041	-
예산총량(GDP대비 %)												
수입	17.7	14.8	16.3	18.1	18.3	18.1	18.3	18.3	...	19.1	19.1	18.8
지출	21.0	24.7	31.2	30.5	24.1	22.7	22.8	23.1	...	23.9	23.9	23.4
재정적자	3.2	9.9	14.9	12.4	5.8	4.5	4.5	4.8	...	4.7	4.8	4.7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40.8	53.0	100.1	99.7	102.4	101.8	102.2	103.1	...	106.3	106.7	-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iscal Year 202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Table S-1), 2022. 3. 28.

- (재정수지) 2022회계연도 상반기에 집계된 총 누적 재정적자는 6,670억달러, 전년 동기(1.7조 달러) 대비 40%(1조 400억달러) 감소
- (세입) 전년 동기(약 1.7조달러) 대비 25%(4,180억 달러) 증가한 총 약 2.1조달러
- (세출) 전년 동기(약 3.4조달러) 대비 18%(6,220달러) 감소한 총 약 2.8조달러

<표 5> FY2021 & FY2022 상반기 재정 결산 비교

(단위: 십억달러)

구분	FY 2021 상반기 (A)	FY 2022 상반기 (B)	증가 (B-A)
재정 수입	1,704	2,122	418
재정 지출	3,410	2,788	-622
재정 적자	1,706	667	-1,040

출처: CBO, Monthly Budget Review for April 2022, 2022. 4. 8.

[기타]

- 미 연방준비제도(Fed), FOMC 회의록 및 경제 전망 공개(2022.4.6.)<sup>18)</sup>
- FOMC 참석자(participants)<sup>19)</sup>들은 3월 15~16일 개최된 FOMC 회의<sup>20)</sup>에서 경제활동과 고용지표

18) Fed,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2022. 4. 6.,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omcminutes20220316.htm>, 검색일자: 2022. 4. 20.; IMF, IMF Seminar: Debate on the Global Economy, 2022. 4. 21., <https://meetings.imf.org/en/2022/spring/schedule/2022/04/21/imf-seminar-debate-on-the-global-economy>, 검색일자: 2022. 4. 26.

19) 연준 이사 5명과 지역연준 총재 5명

20) 베이지북 3월호를 참고 바람



- 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다는 점에 주목함
-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는 강하게 증가했고 실업률이 크게 떨어졌지만,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인 수급 불균형,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임
- 참가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지만,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추가 상승 압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
- 경제 전망과 관련해 2021년 말에 비해 GDP 성장률은 둔화됐지만, 소비와 기업 투자의 견조한 증가세를 주목함
- 노동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 고용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음
- 위원(member)<sup>21)</sup>들은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
- 최근(4/21) IMF에서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0.5%p 인상안을 5월 FOMC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
- 결정문과 함께 발표된 경제 전망에서는 16명의 위원 모두 2022년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했고, 물가 전망은 12월 대비 상향 조정(2.6%→4.3%)했으며, 성장률의 경우 2022년 전망치는 12월 대비 하향(4.0%→2.8%)했으나 2023년 이후 전망치는 유지함

<표 6> FOMC 경제 전망(중간값)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장기
실질 GDP	2.8	2.2	2.0	1.8
(12월 전망)	4.0	2.2	2.0	1.8
실업률	3.5	3.5	3.6	4.0
(12월 전망)	3.5	3.5	3.5	4.0
PCE 인플레이션	4.3	2.7	2.3	2.0
(12월 전망)	2.6	2.3	2.1	2.0
Core PCE 인플레이션	4.1	2.6	2.3	-
(12월 전망)	2.7	2.3	2.1	-
기준금리(FFR)	1.9	2.8	2.8	2.4
(12월 전망)	0.9	1.6	2.1	2.5

출처: Fed,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Table 1, 2022. 3. 16.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3월 주 및 지역별 실업 통계 발표(2022. 4. 15.)<sup>22)</sup>
- 미국 전체 3월 실업률은 3.6%로 전년(6.0%) 및 전월(3.8%) 대비 개선됨
- 각 주별로 볼 때 모든 주에서 전년 대비 실업률이 개선되었으며, 37개 주는 전월 대비 개선됨
- 네브래스카와 유타가 각각 가장 낮은 실업률(2.0%)을 기록했으며 15개 주의 실업률이 미국 전체 실업률 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함
- 미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2022. 4. 20.)<sup>23)</sup>

21) 기준금리 투표권을 가지는 연준 이사 7명(현재 4명), 뉴욕연준 총재 1명, 기타 지역연준 총재 11명 중 4명

22)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State Employment And Unemployment-March 2022, 2022. 4. 15., <https://www.bls.gov/news.release/laus.toc.htm>, 검색일자: 2022. 4. 20.; 백악관, Statement from President Biden on State Unemployment Rates, 2022. 4. 2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4/15/statement-from-president-biden-on-state-unemployment-rates/>, 검색일자: 2022. 4. 21.

23) Fed, Beige Book - April 20, 2022, 2022. 4. 20.,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202204.htm>, 검색일자: 2022. 4. 21.

- (전반적인 경제활동) 2월 중순 이후 경제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대되었음
  -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소매 및 비금융 서비스 회사에 대한 소비자 지출이 증가함
  - 제조업 활동은 대부분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견조한 활동을 보였지만, 공급망 정체, 노동시장 문제, 투입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기업의 수요 충족 능력에 영향을 줌
  - 차량 판매는 저재고로 크게 제약을 받았고, 상업용 부동산은 소매 활동 증가에 따라 활동이 다소 가속화된 반면, 주거용 부동산은 강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적이었음
  - 농작물 가격은 크게 치솟았지만, 가뭄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선 어려움을 겪었으며, 투입 비용 증가가 전국적인 압박으로 작용했음
  - 최근 물가 상승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래 성장 전망에는 부정적인 우려가 있었음
- (고용 및 임금) 고용은 완만하게 증가했고, 노동 수요는 대부분 지역과 산업에서 지속적인 강세를 보임
  - 지속되는 노동 수요 강세로 임금 인상이 지속되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도 임금 상승에 기여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임금 상승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초기 징후가 있었다고

언급함

-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강했고, 많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함
- 제조업에서 원자재, 운송,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이 있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금속,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다고 언급함



일본

- 내각부, 2022년 제4회 경제자문회의 개최, ‘지방 활성화’ 및 ‘사회보장개혁’에 대해 논의(2022. 4. 13.)<sup>24), 25)</sup>
  - (지방 활성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방 혁신 및 중소기업 수출 증대 등 지원
    - (배경)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쿄 인구 순유입은 주춤하였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 감소와 젊은 인구의 유출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집중에서 분산으로’를 위한 지방 활성화 추진
    - (내용) 디지털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을 활용하여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 시스템 강화, 농업 및 중소기업 수출 역량 제고 등을 제안
      -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개방형 혁신<sup>26)</sup>(Open

24) 내각부, 令和4年第4回経済財政諮問会議, 2022. 4. 13.,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22/0413/agenda.html>, 검색일자: 2022. 4. 14.

25) 경제재정자문회의는 경제재정정책에 대해 내각 총리 대신과 관계 국무대신(각 부성(府省)의 장),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정책 형성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내각부에 설치된 합의제 기관. 경제자문회의의 논의를 통해 재정 및 경제정책의 기본 운영방침인 골대방침 수립에 참고하고자 함

26)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한편 내부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냄(한경 경제용어사전)



innovation) 및 스타트업, 우수인재 집적 촉진, 취업기회 확대, 인재교류 촉진, 지방 노동인구 감소 보충<sup>27)</sup> 등 강조

- 디지털전환을 활용하여 농업 등 1차 산업의 고도화 및 법인 경영을 장려하며, 지방 중소기업 수출 역량을 강화
- 지역의 문화나 자연 등 무형자산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
- (사회보장개혁) 성장과 분배 선순환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 기능의 강화를 제안
  - 사회안전망 강화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을 견인
    - 현행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지원과 육아휴직급여 지원에서 누구나 역량강화 및 자녀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 확대
  - 2042년 65세 이상 고령자수는 최다로 고령화를 36% 초과가 예상되므로 전(全) 세대형 사회보장 체제 구축과 의료·간병비의 효율화, 임금격차 시정 등이 필요
    - 전(全) 세대형 사회보장 차원에서 지원 및 부담 방식을 재검토하여 현역 세대의 사회보험료 증가를 억제하여 장래 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함

■ 일본은행, 2022년 4월 금융시스템 보고서 발표 (2022. 4. 21.)<sup>28)</sup>

- (총평) 국내·외 경제금융 측면에서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되고 있으나 일본 금융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 금융 대응이 효과적이고, 금융 중개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상황(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실물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조정)을 가정하더라도 금융시스템은 견고성을 갖추고 있음
- (리스크) 급격한 대규모의 국제금융시장 조정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본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세 가지 리스크를 주의할 필요
  - ① '감염병 확산에 따른 국내 대출 신용비용 상승'으로 향후 지속적 경기회복을 가정할 경우 기업 부실화 및 국내 대출 신용비용 상승은 억제
  - ② '국제금융시장의 조정 등 글로벌 경제금융 변화가 일본의 '해외대출', '유가증권 투자', '외화 자금조달' 등에 과급될 리스크'를 고려해야 함
  - ③ '감염병 이전의 기존 취약성'으로 최근 일본 금융기관은 중수준 위험 기업과 부동산업, 대형 M&A 등 레버리지가 높은 대출로 위험을 감수해왔으므로 장기 저금리 상황이 수익성 악화, 중개 기능 정체 등으로 연계될 가능성 있음

27)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가 아닌 특정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일컫는 '관계인구'를 늘리고, 다양화하여 지방인구 감소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8) 일본은행, 金融システムレポート(2022年4月号), 2022. 4. 21., <https://www.boj.or.jp/research/brp/fsr/fsr220421.htm>, 검색일자: 2022. 4. 21.



독일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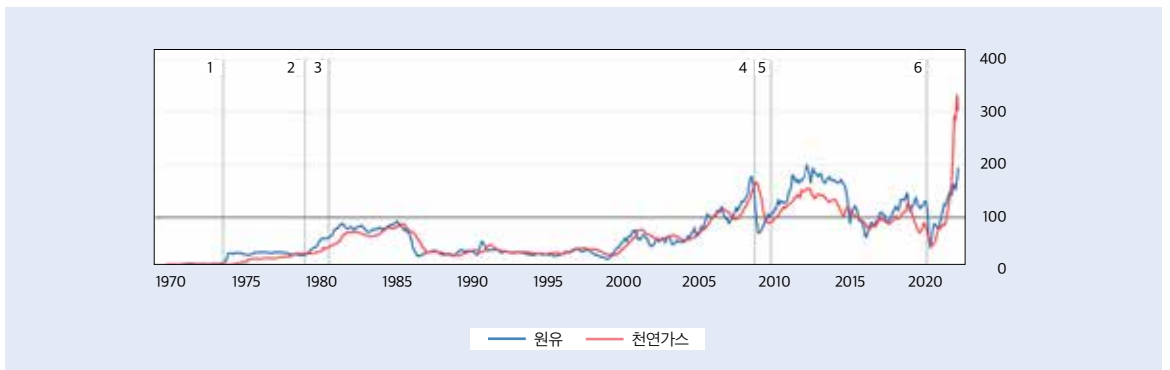
■ 연정위원회, 높은 에너지 요금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 발표(2022. 3. 24.)<sup>29)</sup>

- (개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에너지 시장의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국민 및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국가의 대책이 필요
- (에너지원의 다양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기후 친화적인 에너지원로의 전환을 앞당기며 에너지 공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

- (독점 금지 및 규제 프레임워크 강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원자재 가격 하락이 최종 소비자에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실행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
-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증가) 국민과 기업에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고, 효율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광범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
- (국민을 위한 구호 패키지) 2월 발표한 종합 구호 패키지 및 3월 난방 보조금 지원과 더불어 에너지 비용 급증으로 인한 어려움을 돕기 위한 추가 조치 시행
  - 에너지 보조금, 가족 수당, 일회성 생계 지원금, 에너지세 3개월 감면, 대중교통 정액 이용권 등을 지원

[그림 1]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 가격의 변화

(단위: 2015년 기준 수입물가지수)



주: 1. 옴 키푸르 전쟁, 2. 이슬람 혁명, 3. 제1차 걸프전, 4. 리먼 브라더스 사태, 5. 유럽 경제 위기, 6. 코로나19 팬데믹  
출처: 연방 통계청, 2022. 4. 20.,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2/04/PD22\\_171\\_61.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2/04/PD22_171_61.html), 검색일자: 2022. 4. 25.

29) 연방 재무부, 2022. 3. 2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Entlastungen/massnahmenpaket-bund-hohe-energiekosten.html>, 검색일자: 2022. 4. 12.



■ 연방 경제기후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한 부활절 패키지 발표(2022. 4. 6.)<sup>30), 31)</sup>

-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가속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에너지법을 종합적으로 개정할 계획
  - 에너지 주권 및 안보를 위함과 동시에 기후 중립적인 토대를 마련
  - 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화석 연료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데 도움
-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최우선적 공익이며, 공공에 안전을 제공
  - 2030년까지 독일의 총전력소비량의 약 80%가 재생에너지에서 공급되도록 할 계획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광범위한 조치) 태양광 발전 지역 확대, 해상 풍력 및 태양광 발전에 참여 강화, 바람이 약한 지역 개발, 태양광 지붕 시스템의 확장 등 기본 조건 개선 추진

■ 연방 재무부 및 경제기후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 패키지 발표(2022. 4. 8.)<sup>32), 33), 34)</sup>

- 연방 재무부 및 연방 경제기후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처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

- (단기 유동성 지원) 70억유로 규모의 독일개발은행(KfW)의 신용프로그램에 대하여 저금리 혹은 무보증으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미 도입되었던 연방 및 주 정부의 보증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장하여 계속
- (보증 프로그램) 운용자금 및 투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2022년 말까지 보증은행과 연방정부의 대규모 보증 프로그램을 확대
- (에너지요금 인상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재정적 부담이 큰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 이는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며 기업의 비용 부담이 고객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단일형(targeted) 혹은 복합형(hybrid) 자본 지원)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크로스 섹터 대 기업의 자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 (유동성 위기 상황의 에너지 기업 지원) 에너지 판매 기업의 마진 콜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 금융 프로그램 지원

30) 연방 경제기후부, 2022. 4. 6., <https://www.bmwi.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2/04/20220406-habeck-das-osterpaket-ist-der-beschleuniger-fur-die-erneuerbaren-energien.html>, 검색일자: 2022. 4. 12.

31) 연방 정부, 2022. 4. 6.,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novellierung-des-eeg-gesetzes-2023972>, 검색일자: 2022. 4. 12.

32) 연방 재무부, 2022. 4. 8.,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04/2022-04-08-schutzschild-fuer-vom-krieg-betroffene-unternehmen.html>, 검색일자: 2022. 4. 15.

33) 연방 재무부, 2022. 4. 8.,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Entlastungen/massnahmenpaket-fuer-vom-krieg-betroffene-unternehmen.html>, 검색일자: 2022. 4. 15.

34) 연방 경제기후부, 2022. 4. 8., <https://www.bmwi.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2/04/20220408-bundesregierung-beschliesst-schutzschild.html>, 검색일자: 2022. 4. 15.

- 연방 정부, 2022년 연금가치 조정 및 장애연금 혜택 개선 발표(2022. 4. 13.)<sup>35), 36), 37)</sup>
  - 연방 내각은 2022년 연금 조정<sup>38)</sup>에 대한 법률안을 승인
    -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서독의 연금은 5.35%, 동독의 연금은 6.12% 인상됨. 특히 서독의 인상률은 지난 40년간 가장 높은 수준
    - 연금실질가치액은 서독은 34.19유로에서 36.02유로로, 동독은 33.47유로에서 35.52유로로 증가
    - 동독의 연금가치는 서독의 연금가치의 98.6%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2024년 7월까지의 연금 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

■ 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2022년 봄 공동경제전망 (Gemeinschaftsdiagnose Frühjahr 2022) 발표 (2022. 4. 13.)<sup>39), 40), 41)</sup>

\* 독일의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연2회 공동 경제전망(Joint Economic Forecast)을 발표하며 연방 정부의 전망에 방향성을 제공. 2022년 봄 보고서는 DIW Berlin, ifo Munich, IfW Kiel, IWH Halle and RWI Essen이 참여

- (개요) 독일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부터 회복되는 듯 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회복세가 둔화되었고, 원자재 수급의 불확실성 등이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
- (소비자물가) 독일은 40년 만에 가장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경험하고 있으며 2022년 6.1%, 2023년 2.8%로 독일 통일 이후의 평균 수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
- (경제전망)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도 코로나19 팬데믹 회복세가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 GDP 증가율이 각각 2.7%와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고용) 취업자수는 최저임금이 12유로로 인상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실업률은 전년도 5.7%에서 5.0%로 감소 예측
- (재정수지) 재정수지는 520억유로 적자로 전년도 1,325억유로보다 크게 줄 전망

35) 연방 노동사회부, 2022. 4. 13., <https://www.bmas.de/D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22/renten-steigen-juli-2022-deutlich.html>, 검색일자: 2022. 4. 18.

36) 연방 노동사회부, 2022. 4. 13., <https://www.bmas.de/D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22/deutliche-rentenerhoehung-beschlossen.html>, 검색일자: 2022. 4. 18.

37) 연방 정부, 2022. 4. 13.,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rentenerhoehung-2022-2025436>, 검색일자: 2022. 4. 18.

38) 통일 후 독일 정부는 연금단일화법(Rentenüberleitungsgesetz)을 통하여 최소 보장에 중점을 두던 동독의 연금 시스템을 소득과 기여금을 기반으로 하는 서독의 연금 시스템에 편입시킴. 그러나 두 지역 간의 임금 수준의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료 부담과 급여는 서로 다르게 계산하도록 하는 특별 규정을 마련하여 연금가치액 균등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함. 2017년을 기준으로 동독의 연금가치액이 서독의 약 95%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며 이에 독일 정부는 2017년 최종연금단일화법(Rentenüberleitungs-Abschlussgesetz)을 제정하여 2024년 7월 1일까지 연금가치액 조정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동·서독 지역이 같은 기준을 가지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자 함(연방 노동사회부, 2017. 7. 7., “Soziale Einheit bis 2025 vollendet,”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soziale-einheit-bis-2025-vollendet-336842>, 검색일자: 2022. 4. 26.)

39) ifo INSTITUT, 2022. 4. 13., “Gemeinschaftsdiagnose Frühjahr 2022,” <https://www.ifo.de/node/69089>, 검색일자: 2022. 4. 20.

40) 공동경제전망(Gemeinschaftsdiagnose), 2022. 4. 13., [https://gemeinschaftsdiagnose.de/wp-content/uploads/2022/04/iwh-press-release\\_2022-08\\_Gemeinschaftsdiagnose\\_1-22\\_de.pdf](https://gemeinschaftsdiagnose.de/wp-content/uploads/2022/04/iwh-press-release_2022-08_Gemeinschaftsdiagnose_1-22_de.pdf), 검색일자: 2022. 4. 20.

41) 공동경제전망(Gemeinschaftsdiagnose), 2022. 4. 13., “Von der Pandemie zur Energiekrise – Wirtschaft und Politik im Dauerstress,” <https://gemeinschaftsdiagnose.de/2022/04/13/von-der-pandemie-zur-energiekrise-wirtschaft-und-politik-im-dauerstress/>, 검색일자: 2022. 4. 20.



<표 7> 독일의 2022년 봄 공동경제전망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실질GDP성장률	1.1	-4.6	2.9	2.7	3.1
취업자수(천명)	45,268	44,898	44,920	45,454	45,733
실업자수(천명)	2,267	2,695	2,613	2,293	2,293
실업률	5.0	5.9	5.7	5.0	5.0
소비자물가	1.4	0.5	3.1	6.1	2.8
일반정부 재정수지(10억 유로)	51.1	-145.2	-132.5	-52.2	-27.9
(GDP 대비 %)	1.5	-4.3	-3.7	-1.4	-0.7
경상수지(10억 유로)	262.9	238.7	265.3	214.2	245.8
(GDP 대비 %)	7.6	7.1	7.4	5.6	6.1

출처: ifo INSTITUT, Gemeinschaftsdiagnose Frühjahr 2022, 2022. 4. 13.

-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감에 따라 정부지출의 증가가 줄고, 경제가 회복하면서 정부수입이 증가하기 때문
- 2023년에는 임금이 오르고 노동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정부수입이 늘어나 GDP 대비 재정적자가 0.7%p(약 280억유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위험요소)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줄어들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다시 새로운 위험 상황에 처함
-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원료 공급의 병목 현상, 증가하는 난민 수 등이 현재 독일 경제가 당면한 과제임



프랑스

- 통계청(INSEE), 2021년 프랑스 일반정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발표(2022. 3. 29.)<sup>42)</sup>
  - 2021년 일반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0년 8.9%에서 2.4%p 감소한 6.5%(1,609억 유로)로 나타남
    - 2021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4.0% 증가하였지만 경제활동의 재개로 재정수입이 8.4% 증가하여 재정적자가 감소함
  - 2021년 일반정부의 GDP 대비 총채무비율은 2020년 114.6%에서 1.7%p 감소한 112.9%로 나타남

42) 프랑스 통계청, En 2021, le déficit public s'élève à 6,5 % du PIB, la dette notifiée à 112,9 % du PIB, 2022. 3. 29.,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6324844>, 검색일자: 2022. 4. 11.

<표 8> 프랑스 재정지표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재정수지	-2.3	-3.1	-8.9	-6.5
재정지출	55.6	55.4	61.4	59.2
재정수입	53.4	52.3	52.5	52.8
일반정부 총채무	97.8	97.4	114.6	112.9
일반정부 순채무 <sup>1)</sup>	89.2	88.9	102.1	101.2
조세부담률 <sup>2)</sup>	44.7	43.8	44.4	44.5

주: 1) 순채무는 총채무에서 유동자산을 제외한 금액

2) GDP 대비 국세, 지방세, 사회보장부담금을 포괄하는 과세 부담

출처: 프랑스 통계청(INSEE), INFORMATIONS RAPIDES No 81(2022. 3. 29.)

- 일반 정부의 적자 및 채무 감소는 프랑스 회복 계획에 따른 유럽연합의 기금조달뿐만 아니라 경제회복에 따른 세수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함

■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기업에 대한 정부보증대출 시행(2022. 4. 7.)<sup>43)</sup>

- 지난 3월 경제 및 사회적 회복계획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정부보증대출(Prêt garanti par l'État, PGE)을 4월 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 정부보증대출은 코로나19 위기와 관련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에 도입한 보증 시스템으로 대출상환기간에 따라 1%~2.5% 금리를 적용함

- 정부보증대출은 對러시아, 벨라루스 및 우크

라이나 수출중단에 따른 손실 발생, 에너지·원자재를 비롯한 생산요소의 가격 인상 등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평균 매출액의 15%까지 대출을 허용함

- 기업이 담당은행에 신청하면 재정상황, 자금조달 필요성 등에 대해 건별 검토를 거쳐 지원되며, 코로나19 위기 동안 이행된 방식과 동일한 조건 적용

- 정부보증대출은 6월 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필요시 EU 집행위원회의 특별사항조치<sup>44)</sup>에 따라 연말까지 지원이 연장될 수 있음

 영국

■ 영국 정부, 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통해 FY2020-21에 약 34억파운드의 정부 부처 비용 감축(2022. 3. 29.)<sup>45)</sup>

- (배경) 영국 정부는 2021년에 ‘정부 개혁 선언’에서 명확한 기준과 지출 통제를 통한 공공지출 효율화로 부처 활동 및 정책 전달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적 기능 개선을 약속함

\* 2021 지출검토 과정에서도 중앙부처 경상예산에 대한 5% 절감분을 확정된 바 있음. 다만 이번에 발표된 예산 절감 규모는 2021 지출검토 이전에 수행된 실적임

43) 프랑스 재무부, Ukraine: lancement du PGE résilience pour soutenir les entreprises, 2022. 4. 7., <https://www.economie.gouv.fr/ukraine-lancement-pge-resilience-entreprise#>, 검색일자: 2022. 4. 14.

44) EU회원국들은 안정성협약에 따라 재정적자는 GDP의 3%, 국가부채는 60%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왔으나 코로나19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EU 집행위는 회원국의 재정지원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국가지원임체제(State Aid Temporary Framework)를 마련하고 긴급 유동성을 제공함

45) HM Treasury, “Over £3.4bn saved as government ramps up cost-cutting programme,” Press release, 2022. 3. 29., <https://www.gov.uk/government/news/over-34bn-saved-as-government-ramps-up-cost-cutting-programme>; 검색일자: 2022. 4. 13., Cabinet Office, “Government efficiency savings, 2021,” 2022. 3. 2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overnment-efficiency-savings-2021/government-efficiency-savings-2021>, 검색일자: 2022. 4. 13.



- (절감 실적) FY2020-21에 정부는 운영 효율성 및 효과성 개선을 통해 약 34억파운드의 지출을 절감함
  - 부정 수급·계약 및 오류로 인한 손실 감축, 채무 관리 개선, 보조금 효과성 개선을 통해 19억 파운드, 상품 및 서비스 조달 개선을 통해 14억파운드, 디지털 서비스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1억 4,200만파운드 절감
  - 특히 데이터 사용 개선과 디지털 전문성 향상이 비용 절감에 기여함

<표 9> 예산 절감 규모

(단위: 파운드)

기능(팀)	절감 규모
부정 수급·계약 등 방지	13억 8,800만
정부 채무 관리	4억 4,100만
정부 보조금 관리	3,400만
디지털, 데이터, 기술	1억 4,200만
상업기능(복잡한 거래)	11억 9,100만
상업기능(시장 및 공급업체)	2억 1,200만
합계	34억 800만

출처: Cabinet Office, "Government efficiency savings, 2021," 2022. 3. 28.

■ 영국 정부, 취약가족을 위한 패키지 지원 계획 발표(2022. 4. 2.)<sup>46)</sup>

- (개요) 영국 정부는 취약가족<sup>47)</sup>을 위한 약 10억 파운드 이상 규모의 범정부 패키지 지원을 제공

할 계획임

- 이를 통해 출생 시점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취약 가정의 아기, 어린이, 부모들에게 필요한 지원, 자문, 서비스를 제공
- 패밀리 허브(Family Hubs)와 'Start for Life' 프로그램<sup>48)</sup>에 3억 2백만파운드 지원
  - (부모 지원) 신규 패밀리 허브 구축을 위해 75개 지방 당국을 지원
    - 패밀리 허브를 통해 부모에게 양육 방법, 건강 관리 등에 대한 상담과 양육 및 모유 수유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영유아 지원) 부모-영아 관계, 출산 전후 정신 건강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는 지역

<표 10> 패밀리 허브 및 Start for Life 프로그램 지원

(단위: 파운드)

지원 내용	금액
맞춤형 부모-영아 관계 및 출산 전후 정신 건강 지원	1억
패밀리 허브 네트워크 구축	8,200만
모유 수유 지원 서비스 구축	5,000만
근거 기반의 양육 지원 프로그램	5,000만
지방당국의 Start for Life를 명확히 공표하도록 지원	1,000만
혁신적인 Start for Life 인력 모델 시범 사업	1,000만
합계	3억 200만

출처: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Infants, children and families to benefit from boost in support," 2022. 4. 2.

46)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Infants, children and families to benefit from boost in support," 2022. 4. 2., <https://www.gov.uk/government/news/infants-children-and-families-to-benefit-from-boost-in-support>, 검색일자: 2022. 4. 13.

47) 실업, 가정 학대, 정신 건강 문제 등 여러 불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가정

48) 'Start for Life'는 임신, 출산, 영유아 보육 기간 동안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패밀리 허브는 0-19세 아동·청소년이 속한 가족이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조기에 지원하는 센터로 Start for Life 프로그램의 서비스도 제공함

당국에 1억파운드의 자금 지원

- 취약가족 지원 프로그램(Supporting Families Programme)<sup>49)</sup>을 통해 30만 취약가족에게 전담 인력의 실질적 지원(실습 포함)을 제공(약 7억파운드)
  -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
  - 보호 종료 청소년들을 위해 향후 3년간 집중적인 지원 프로그램<sup>50)</sup>과 독립 지원을 위한 주택, 금융, 고용 관련 상담도 제공(1억 7,200만 파운드)

49) 동 프로그램은 실업, 경제적 불안정, 학교 결석, 정신 및 신체적 건강 문제, 범죄 및 반사회적 행동, 가정 학대 등 복잡한 문제를 겪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조기 개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50) 18세 이후 21세 이전까지 위탁 가정과의 거주 지원(9,980만파운드), 보육원 인근에서의 거주 지원(3,600만파운드), 25세까지 주택, 건강, 복지급여 등 관련 서비스의 정보와 독립을 위한 실용적, 정서적 지원 제공(3,640만파운드) 등

# 재정포럼

2022년 5월호 통권 제311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동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장정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이현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 ■ 월간 재정포럼

2022년 5월 16일 발행 / 제26권 제5호(통권 제311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2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 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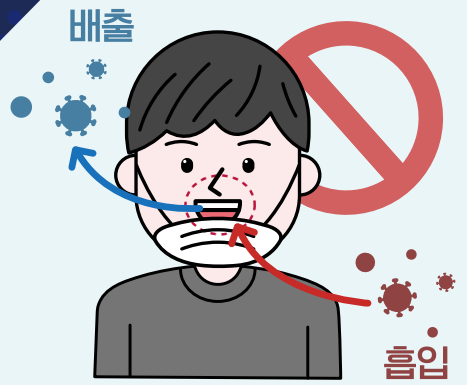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효과가 없어요!

#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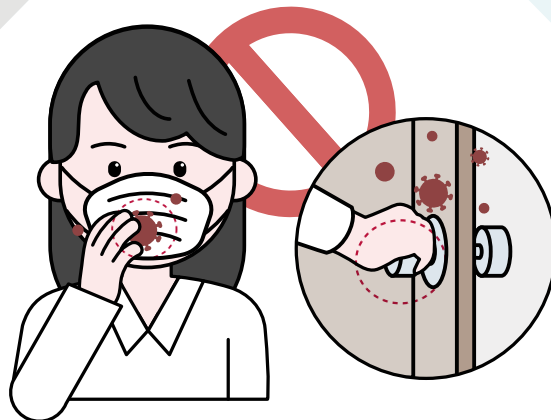


①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코와 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요!



②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③ 마스크 겉 면을 만지는 행위



2020. 05. 06.

- 01 아르면 3~4일 집에 머물기
- 02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03 30초 손씻기·기침은 옷소매
- 04 매일 2번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 0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